중국 환경 법령집 (III)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국 환경 법령집 (III)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안 내

중국 정부는 환경을 위해 기업들을 규제할 목적으로 법률 및 방지법을 발표해왔다. 본 법령집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초안)(2차심의안)> 등 총 5개 부문의 문건들을 번역하여 발간한다.

※아울러 한글 번역본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수록된 중국 원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환경관실 -

목 차

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1
2.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9
3. 중화인민공화국 물오염방지법 53
4.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83
5.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107

중문원본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135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149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175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197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215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2014.4.24. 개정 , 2015.1.1. 실시)

1989 년 12 월 26 일 제 7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 때 통과되었다 . 2014 년 4 월 24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때 개정되어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 보호 · 개선 , 오염과 기타 공해 방지 , 대중의 건강 보장 , 생태문명 건설과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제 2 조

본 법에서 칭하는 환경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자연적인 것들 , 그리고 인위적인 개조를 거친 자연요소의 전체를 일컫는 것으로 대기 , 물 , 해양 , 토지 , 지하자원 , 산림 , 초원 , 습지 , 야생생물 , 자연유적 , 인문유적 , 자연보호구역 , 풍경명승지 , 도시와 농촌 등을 포함한다 .

제 3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

제 4 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 국책이다 .
국가는 자원절약과 자원을 순환 이용하고 , 환경을 보호 및 개선 , 인류와 자연의 조화 등을 촉진하는 유익한 경제 ·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경제사회의 발전과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

제 5 조

환경보호는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예방 위주로 하며, 종합적으로 관리, 대중의 참여, 손해책임부담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6 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모두 환경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본 행정구역의 환경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응당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감소해야 하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은 응당 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고, 저(低)탄소적이며 절약적인 생활방식을 취하여 환경보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응용을 지지한다. 또한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환경보호의 정보화건설을 촉진하여, 환경보호의 과학기술수준을 향상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의 보호와 개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하고, 재정자금의 사용 효익(效益)을 높여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보호의 홍보와 보급 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기층(基层)대중적 자치조직, 사회조직, 환경보호 자원봉사자가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지식을 홍보하는 것을 장려하여 환경보호의 미풍을 조성해야 함.
교육행정부문과 학교는 응당 환경보호지식을 학교 교육내용에 포함시켜 학생의 환경보호의식을 키워야 한다.
언론매체는 응당 환경보호 법률·법규와 환경보호지식의 홍보를 전개하여, 환경법을 범법하는 행위에 대해 여론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제 10 조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전국의 환경보호작업에 대해 동일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작업에 대해 동일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과 군대환경보호부문은 관련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자원보호와 오염방지 등 환경보호작업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 11 조

환경 보호와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업체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에서 장려를 한다.

제 12 조

매년 6 월 5 일은 환경의 날로 지정한다.

제 2 장 감독과 관리

제 13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보호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规划)에 포함해야한다.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 부문을 회동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规划)에 근거한 국가 환경보호규획(规划)을 편성한다. 그리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 받고, 실시를 발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 부문을 회동하고, 국가 환경보호규획(规划) 요건에 근거하여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규획(规划)을 편성한다. 그리고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고, 실시를 발표한다.
환경보호규획(规划) 내용에는 응당 생태보호와 오염방지의 목표·임무·보장조치 등을 포함해야 하며, 아울러 주체기능구역규획(规划), 토지이용종합규획(规划)과 도농규획(规划)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제·기술정책을 제정할 때 응당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분야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제 15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 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환경품질표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 환경품질표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국가 환경품질표준 중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 환경품질표준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 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방 환경품질표준은 응당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해야한다.
국가는 환경기준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16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 환경품질표준과 국가의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 중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해 국가오염물질 배출기준 보다 더욱 엄격한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단, 지방오염물질 배출기준은 응당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한다.

제 17 조

국가는 환경검측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검측규범을 제정하고, 관련 부문을 회동하여 검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리고 국가 환경품질검측소(지점)의 설치를 동일하게 규획(規划)하고, 검측데이터 공유기구를 세워 환경검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와 전문분야 등의 각종 환경품질검측소(지점)를 설치할 경우, 응당 법률법규의 규정과 검측규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검측기구는 응당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검측설비를 사용해야 하고, 검측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검측기구 및 그에 관련된 책임자는 검측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제 18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관련부문을 조직하거나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환경상황에 대한 조사, 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환경자원의 적재능력을 검측·조기 경보하는 기구를 세워야 한다.

제 19 조

관련 개발이용규획(规划)을 편성하고,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건설에 대해서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개발이용규획(规划)은 실시해선 안 된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건설 프로젝트는 건설을 착공해선 안 된다.

제 20 조

국가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중점지역과 유역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연합방지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해 동일한 규획(规划), 동일한 기준, 동일한 검측, 동일한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상기 규정 이외에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방지 작업은 상급 인민정부나 관련 지방인민정부에서 조정하여 해결한다.

제 21 조

국가는 재정·세수(税收)·가격·정부 조달 등 방면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환경보호의 기술 장비, 자원의 종합적 이용과 환경 서비스 등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2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오염물질 배출이 법정요건에 부합한다는 토대 위에 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저감해야 하고, 인민정부는 응당 법에 의거하여 재정·세수(税收)·가격·정부 조달 등 방면의 정책과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 하고, 지지해야 한다.

제 23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래 제품의 생산을 정지하여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부지를 이전·폐쇄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응당 지지해야 한다.

제 24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환경보호주관부문 및 그에 대한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해 현장 검사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피(被)검사자는 응당 상황을 사실과 같게

반영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부문·기구와 관련 작업 인원은 피(被)검사자를 위해 상업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 25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심각한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시설과 설비를 차압·압류할 수 있다.

제 26 조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보호 목표완성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 및 그에 관련 책임자와 하급 인민정부 및 그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심사내용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심사평가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심사결과는 응당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매년 본 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달성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당 제때 본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환경 보호와 개선

제 28 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보호 목표와 관리 임무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환경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국가 환경품질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주요지역과 주요유역의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기간 내 표준도달 규획(规划)을 제정하고, 실행해야 하며, 아울러 기한 내에 표준에 도달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환경 민감 구역과 생태환경 취약구역 등의 구역에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구획해야 하고, 엄격한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각종 유형의 자연생태시스템구역, 진귀한 또는 멸종위기인 야생동식물의 자연분포구역, 주요 수원보존구역, 중대한 과학문화가치가 있는 지질구조·유명 종유동(溶洞)·화석분포구역·빙하·화산·온천 등의 자연유적 및 인문유적, 고수명목(古樹名木)에 대해 응당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고, 파괴를 엄금해야 한다.

제 30 조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이용할 경우, 응당 합리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며, 생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법에 근거해 관련 생태보호와 복원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외래생물종의 도입 및 생물기술을 연구·개발·이용함에 있어 응당 조치를 취해야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31 조

국가는 생태보호보상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국가는 생태보호지역의 재정이전지출의 역량을 확대한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생태보호 보상자금을 확정해야 하며, 생태보호 보상에 사용하도록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受益)지역과 생태보호지역의 인민정부가 협상 또는 시장규칙을 통해 생태보호 보상을 진행하는 것을 지도한다.

제 32 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와 상응하는 조사·검측·평가·복원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제 3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하며, 농업환경보호 신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농업오염원에 대한 검측·조기경보를 강화한다. 또한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조치를 취하고, 토양오염과 토지의 사막화·알칼리화·황폐화·석막화(石漠化)·지반 침하를 방지 및 식생파괴, 수토유실, 수질부영양화(水体富营养化·water eutrophication.), 수자원 고갈, 종의 절종 등 생태불균형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식물 병충해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를 확대해야 한다.
현·향급 인민정부는 응당 농촌 환경보호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게 시켜야 하고, 농촌의 환경종합정리를 추진해야한다.

제 34 조

국무원과 연해지방 (沿海地方)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 해안공정을 진행하거나 해양공정을 건설할 경우 , 응당 법률 · 법규 · 규정과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피해를 방지 및 저감해야 한다 .

제 35 조

도농 건설은 응당 해당지역의 자연환경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 식생 · 수역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 도시원림 , 녹지와 풍경명승지에 대한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

제 36 조

국가는 시민 , 법인과 기타 단체가 환경보호에 유익한 제품과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 유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
국가기관과 재정자금을 사용하는 기타 단체는 응당 에너지절약 , 절수 (节水), 자재 절약 등 환경보호에 유익한 제품 · 설비 ·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매 및 사용해야 한다 .

제 37 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상응한 조치를 취해 , 생활폐기물에 대해 분리수거 , 재활용을 구성해야 한다 .

제 38 조

시민은 응당 환경보호 법률 ·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 환경보호 조치를 잘 이행해야 하고 ,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수거를 진행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에 대한 손상을 줄여야 한다 .

제 39 조

국가는 환경과 건강의 검측 · 조사와 위험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 또한 , 환경품질의 대중 건강에 대한 영향 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전개한다 . 또한 , 상응한 조치를 취해 ,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한다 .

제 4 장 오염과 기타 공해의 방지

제 40 조

국가는 청정 생산과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국무원 관련부문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조치를 취해,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은 응당 청정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원이용률이 높고 오염배출량이 적은 기술과 설비 및 폐기물 종합 이용기술과 오염물질 무공해 처리기술을 채용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41 조

건설프로젝트 중 오염방지 시설은 응당 주체 공정과 동시에 설계·시공·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오염방지 시설은 응당 허가를 받은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임의로 제거 또는 방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42 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응당 조치를 취해, 생산건설 또는 기타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기가스, 폐수, 폐기물, 의료폐기물, 분진(粉尘), 악취가스, 방사성 물질 및 소음, 진동, 핵반응에 의한 광선 복사, 전자기 복사 등 환경에 대한 오염과 피해를 줄여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 책임 제도를 수립하여 업체 책임자와 관련 인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중점적으로 배출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규정과 검측규범에 따라 검측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검측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하고, 원래의 검측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지하도관, 배수·수챗구멍, 관주(灌注) 혹은 관측데이터를 왜곡·위조,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감시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위법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 43 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응당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응당 전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해야

하며 ,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횡령 · 점용 (挤占) 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보호세금을 징수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다시 징수하지 않는다 .

제 44 조

국가는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제도를 실시한다 . 중점오염원 배출총량 통제지표는 국무원에서 하달하고 ,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가 분리하여 할당량을 시행한다 . 기업 · 사업단위는 국가와 지방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집행함과 동시에 응당 본 기업 · 사업단위는 앞으로 할당받은 중점오염물질 배출통량 통제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
국가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가 지정한 환경품질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응당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새롭게 증가시키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대한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

제 45 조

국가는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
오염물질 배출허가관리를 실시한 기업 · 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응당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의 요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

제 46 조

국가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술 , 설비와 제품에 대해 도태제도 (淘汰制度) 를 실시한다 . 어떠한 업체와 개인도 환경오염이 심각한 기술 , 설비와 제품을 생산 · 판매 또는 이전 ,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중국의 환경보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 , 설비 , 자재 ,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47 조

각급 인민정부와 이에 관련된 부문 , 기업 · 사업단위는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고 대응법 (应对法) 의 규정에 의거하여 돌발 환경사건의 위험통제 , 긴급준비 , 긴급처리와 사후복구 등의 작업을 해내야 한다 .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환경오염 공공검측 조기 경보 기구를 수립하고 조기경보 방안을 제정해야한다 . 환경이 오염 받고 , 대중의 건강과 환경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제때 조기 경보 정보를 발표하고 , 긴급조치를 가동한다 .

기업·사업단위는 응당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돌발 환경사건의 긴급대응예안을 제정해야하고, 이를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돌발 환경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기업·사업단위는 응당 제때 조치를 취해 처리해야 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와 주민들에게 제때 통보해야한다. 아울러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에게 보고한다.
돌발 환경사고 긴급처리 작업이 끝난 뒤, 관련 인민정부는 응당 제때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영향과 손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제때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8 조

화학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저장·운반·판매·사용·처리할 경우, 응당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49 조

각급 인민정부 및 이에 관한 농업 관련 부문과 기구는 응당 농업생산 경영자에게 과학적인 재배와 양식방법을 지도해야 하며,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 자료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농업용 필름(农用薄膜), 농작물줄기 등 농업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농업의 비점오염(面源污染)을 방지해야 한다.
농업용 기준과 환경보호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고체폐기물, 폐수를 농경지에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 농약, 화학비료 등 농업에 투입되는 생산 자료를 뿌리거나 관개를 진행할 경우 응당 조치를 취해야 하고, 중금속과 기타 유독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养殖小区), 지정된 장소에서 도축 진행하는 기업(定点屠宰企业) 등의 부지 선정·건설·관리는 응당 관련 법률·법규·규정에 부합해야한다. 가축양식과 도축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은 응당 상응한 조치를 취해 가축의 분뇨, 사체, 오수 등 폐기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현(县)급 인민정부는 농촌의 생활폐기물 처리작업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제 5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재정예산 중에서 일정 자금을 안배해야 하고, 농촌의 식수원 보호, 생활오수와 기타 폐기물 처리, 가축양식과 도축오염방지·토양오염방지·농촌광공업 오염처리 등의 환경보호 작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 51 조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및 관망(管网) 조립, 고체폐기물의 수

집·운반·처리 등의 환경위생시설,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 및 기타 환경보호 공공시설을 총괄하여 건설해야 하고, 건설한 공공시설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2 조

국가는 환경오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와 대중의 참여

제 53 조

시민, 법인, 기타 단체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획득하고 환경보호에 참여·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응당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대중의 참여절차를 보완하여 시민, 법인과 기타 단체가 환경보호에 참여·감독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54 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국가 환경품질, 중점오염원 검측정보 및 기타 중대한 환경정보를 통일하여 발표한다.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상황공보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응당 법에 의거하여 환경품질·환경검측·돌발 환경사고 및 환경행정허가·행정처벌·오염물질 배출비용 징수와 사용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은 응당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의 환경법 위반정보를 사회신용파일(社会诚信档案)에 기록하고, 위법자 명단을 제때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5 조

중점오염물질 배출단위는 응당 자사에서 배출하는 주요한 오염물질의 명칭, 배출방식, 배출농도와 총량, 기준초과 배출상황 및 오염방지시설의 건설과 운영상황을 사회에 사실과 같게 공개해야 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56 조

법에 의거하여 응당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정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 건설단위는 응당 보고서를 제정할 때 대중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의견을 충분히 구해야한다.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의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부문은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후, 국가기밀·상업기밀과 관련 있는 사항 외에는 응당 전체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에서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지 않았음을 발견할 경우 응당 건설단위는 대중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제 57 조

시민, 법인, 기타 단체는 어떠한 업체와 개인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혹은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시민, 법인, 기타 단체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책을 이행한 것을 발견할 경우 이에 대한 상급기관 혹은 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응당 신고인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58 조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아래 열거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법에 의거 하여 시관할 구역이 있는 시급 이상의 인민정부 민정부문에 등록된 사회단체
(2) 환경보호 공익활동에 잇달아 5 년 이상 종사하고 범법 기록이 없는 사회단체
상기 규정에 부합하는 사회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고,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경제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법률 책임

제 59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처벌을 받고 기한

내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개정 명령을 내린 다음 날부터 원 벌금액에 따라 일일연속 누진제로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규정의 벌금처벌은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고, 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원가,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실 또는 불법소득 등의 요인을 확정하는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 법규는 환경보호의 실제수요에 따라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일일연속벌금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의 종류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제 60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생산 제한, 생산 중지·정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 휴업,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 61 조

건설단위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허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설을 시작했을 경우,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에서 건설 중지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 62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오염물질을 배출한 단위가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할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공개를 명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공고를 낸다.

제 63 조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으나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관련부문에서 안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형을 가한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류형을 가한다.
(1) 건설프로젝트가 법에 의거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여 건설 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2)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질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오염물질 배출 중지를 명받았으나 집행을 거부한 경우.
(3) 지하도관, 배수·수챗구멍, 관주(灌注) 혹은 검측데이터를 왜곡·위조, 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등의 감시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위법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국가가 생산·사용을 금지한 농약을 생산·사용하여 개정을 명받았으나 개정을 거부한 경우.

제 64 조

환경을 오염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침권(侵權) 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침해의 법적책임을 져야한다.

제 65 조

환경영향평가기구, 환경검측기구 및 환경검측설비와 오염방지설비의 유지보수·운영에 종사하는 기구가 환경서비스 활동 중에 허위로 날조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 응당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발생시킨 기타 책임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조

환경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유효기간은 3 년이며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된 시기 또는 응당 이에 대해 알아야 하는 시기부터 계산한다.

제 67 조

상급 인민정부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응당 하급 인민정부와 그에 관련된 부문의 환경보호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작업 종사자의 범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응당 처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임면(任免) 기관 혹은 감찰기관에게 처분 건의를 제시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응당 행정처벌을 내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관련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6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기타 환경보호 감독 관리직책이 있는 부문이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 대해 과실기록·중과실(重過失)기록 또는 직급강등 처분을 내린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면직 또는 해고 처분을 내리고, 이에 대한 주요책임자는 응당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1) 행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행정 허가를 내린 경우.
(2) 환경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은폐해준 경우.
(3) 법에 의거하여 응당 휴업, 폐쇄 명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을 내리지 않은 경우.
(4)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감시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환경사고를 초래하는 행위 및 생태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태를 파괴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때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5)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 경영자의 시설·설비를 차압·압류한 경우.
(6) 검측데이터를 왜곡·위조하거나 왜곡·위조하도록 사주한 경우.
(7) 응당 법에 의거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경우.
(8) 징수한 오염물질배출비용을 횡령·점용(挤占)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긴 경우.
(9)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

제 69 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 장 부칙

제 70 조

본 법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1987 년 9 월 5 일 제 6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1995 년 8 월 29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지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수정되었다 .
2000 년 4 월 29 일 제 9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5 차 회의에서 1 차 개정되었다 .
2015 년 8 월 29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2 차 개정되어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 보호와 개선 , 대기오염 방지 , 국민의 건강보장 , 생태문명 건설 추진 ,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

제 2 조

대기오염의 방지는 대기환경 질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오염원의 처리 , 규획 선행 , 경제발전방식의 전환 , 산업구조와 분포의 최적화 , 에너지 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해 석탄 , 공업 , 자동차 · 선박 , 분진 , 농업 등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방지를 강화해야 하고 , 대기오염 지역의 연합방지를 추진하며 , 입자상물질 , 이산화황 , 질소산화물 , 휘발성유기물 ,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

제 3 조

현급 이상의 민정부는 대기오염의 방지업무를 국민경제사회 발전규에 포함시키고 , 대기오염의 방지에 대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
지방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규획을 제정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대기오염물의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거나 규제하여 대기환경질량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대기환경질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

제 4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서와 함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등의 대기환경질량량 개선목표,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완성 상황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심사방법을 제정하여 해당 행정구역내 대기환경질량량 개선목표,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 완성상황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대기오염방지에 대해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문은 각 직책범위 내에서 대기오염방지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6 조

국가는 대기오염 방지 과학기술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대기오염원 및 그 변화추세에 대해 분석한다. 선진적인 대기오염 방지기술과 장비를 보급한다. 기술의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이 대기오염 방지를 뒷받침하도록 한다.

제 7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대기오염을 방지 또는 절감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신이 초래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대기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절약 생활방식으로 스스로 대기환경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 2 장 대기오염방지 기준과 기한 내 목표 달성계획

제 8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기환경질량량 기준을 제정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보장과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경제사회발전과 적합해야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 9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하며, 이는 대기환경질량 기준과 국가경제, 기술조건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제 10 조

대기환경질량 기준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경우 전문가의 심사와 논증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부서, 산업협회, 기업의 사업기관과 국민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 11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웹사이트에 대기환경질량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표해야 하며, 국민들이 무료로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대기환경질량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의 실시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기준을 적절한 때에 수정해야 한다.

제 13 조

석탄, 석유 코크스, 바이오매스(生物質) 연료, 도료 등 휘발성유기물을 포함하는 제품, 폭죽 및 보일러 등의 품질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대기환경보호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액체연료(燃油) 품질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규제 요건과 국가의 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
위 조항의 비도로이동기계란 발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동기계와 수송이 가능한 공업설비를 의미한다.

제 14 조

국가 대기환경질량 기준에 미달한 도시의 인민정부는 즉시 '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 규획'을 작성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무원 또는 성급 인민정부 규정에 따라 기한 내 대기환경질량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시의'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관련 산업협회, 기업·사업기관, 전문가와 국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 15 조

도시의 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계획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직할시와 구역이 정해진 시의 '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계획'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 인민정부는 매년 관할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달성상황을 보고할 때 '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계획' 실시상황을 보고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7 조

도시의 '대기환경질량 기한 내 기준달성계획'은 대기오염방지에 대한 요건과 경제 및 기술조건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평가와 수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3 장 대기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 18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 대기로 배출되는 오염물은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총량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 19 조

공업폐기가스 또는 이 법 제 78 조 규정에 의거한 유해유독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 중앙난방을 설치한 석탄열원생산운영업체, 오염물 배출을 법에 의거하여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 배출 허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20 조

대기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 기타 생산업자는 법률법규와 국무원 환경보호주

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불법 배출, 고의적인 개조, 검측자료 위조, 현장검사를 회피하기 위한 임시생산정지, 긴급 상황이 아닐 때 응급배출통로 가동하는 것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운행 등 감독 관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1 조

국가는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에 대해 총량규제를 실시한다.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의 총량규제목표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 경제종합주관부문과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치고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하달한 총량규제목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총량을 규제하거나 줄여야 한다.
총량규제목표 확정과 총량규제지표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과 함께 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오염방지 수요에 의거하여 국가 중점대기오염물 외의 기타 대기오염물 배출에 대해 총량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단계적으로 중점대기오염물 배출권 거래를 추진한다.

제 22 조

국가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총량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가 명령한 대기환경질량 개선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성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 부서와 함께 해당 지역 인민정부의 주요책임자를 면담한다. 해당지역의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총량을 신·증설하는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서류에 대한 심사비준을 잠시 중단한다. 면담상황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3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의 관측 및 평가에 관한 규범을 제정한다. 전국에 대기환경질량과 오염원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전국의 대기환경질량 상황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 모니터링망을 구축 관리하고 대기환경질량과 대기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량 상황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제 24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국가의 관련 규정과 모니터링규범에 따라 배출하는 공업 폐기가스와 이 법 제78조 규정에 열거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기록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 중 중점오염물배출업체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설비를 설치 사용하고, 환경보호주관부문의 모니터링장치에 연결하여 모니터링설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법에 따라 배출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구체적 방법과 중점오염물배출업체의 조건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정한다.
중점오염물배출업체의 명단은 구(區)가 설치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 적재능력(承載力), 중점대기오염물 배출총량규제지표, 오염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의 종류·수량·농도 등에 의거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확정하여 사회에 발표한다.

제 25 조

중점오염물배출업체는 자동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중점오염물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설비 데이터 오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6 조

대기환경질량 모니터링설비와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설비의 훼손, 무단이동, 개조를 금지한다.

제 27 조

국가는 대기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 설비, 제품에 대해 퇴출제도를 시행한다.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은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함께 대기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 설비, 제품의 퇴출기한을 정하고 국가의 종합산업정책목록에 포함시킨다.
생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전항(前項)의 규정목록에 기록된 설비 및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기술자는 규정된 기한 내 전항규정목록에 기록된 기술의 도입을 중지해야 한다.
퇴출된 설비와 제품은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28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관련부서와 함께 대기오염 손해평가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제 29 조

환경보호주관부문, 위탁을 받은 환경감찰기구, 기타 대기환경보호 감독 관리부서는 현장검사측정, 자동모니터링, 원격탐지 모니터링, 원적외선 촬영 등 방식을 통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다. 피검사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검사부서, 검사기구, 검사요원은 피검사자의 업무상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 30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물을 배출하여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증거를 멸실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의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대기환경보호 관리감독부문은 관련 시설, 설비, 물품에 대해 차압, 압수 등 행정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1 조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대기환경보호 관리감독부문은 전화, 이메일 등을 공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 및 기타 대기환경보호 관리감독부문은 접수된 신고를 즉시 처리하고 신고인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처리결과 등 상황에 대해 회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을 입증한다. 처리결과를 법에 의거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신고인을 장려해야 한다.
신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노동계약을 해제, 변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신고인에 대해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대기오염방지조치

제 1 절 석탄과 기타 에너지자원 오염방지

제 32 조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구조를 조정하고, 청정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확산해야 한다. 석탄 사용방식을 최적화하고, 석탄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제 1 차 에너지소비 중 석탄 비중을 줄이며 석탄의 생산, 사용, 전환 과정에서의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33 조

석탄의 세척 · 선별 · 가공을 추진하고 석탄의 유황분과 회분을 줄이고 , 고유황분 , 고회분 석탄의 채굴을 제한한다 . 석탄광산을 신설하는 경우 석탄 세척설비를 갖추어 석탄의 유황분과 회분함량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 이미 지어진 석탄광산에서 채굴한 석탄이 저유황분 · 저회분에 속하거나 이미 석탄발전소의 배출기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한 내에 일련의 석탄 세척설비를 갖춰야 한다 .
방사성물질과 비소 등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석탄의 개발과 채굴을 금지한다 .

제 34 조

국가는 석탄의 깨끗하고 고효율적인 이용에 유리한 경제 · 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석탄 청정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
국가는 석탄 광산기업 등의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술적 조치를 장려하고 석탄층 메탄에 대해 채취 이용을 추진한다 . 석탄맥석 (석탄에 함유된 연한 흑색의 암석) 의 종합이용을 추진한다 . 석탄층 메탄의 채굴과 사용에 있어서 석탄층 메탄의 배출은 관련 기준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

제 35 조

국가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석탄의 수입 , 판매 , 사용을 금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석탄 사용을 장려한다 .
업체는 석탄 , 석탄맥석 , 석탄재 , 석탄회분 등 물질을 보관할 때 연소방지조치를 취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제 36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민간에서 사용하는 석탄의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석탄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석탄의 판매를 금지한다 . 양질의 민간 연료용 석탄과 깨끗한 석탄의 사용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취사보일러 (爐灶) 를 보급하고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37 조

석유정제기업은 석유품질기준에 따라 연료를 생산해야 한다 .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코크스의 수입, 판매, 연료 사용을 금지한다.

제 38 조

도시 인민정부는 고오염연료 사용금지지역을 정하여 발표하고 대기환경질량 개선 요건에 의거하여 고오염연료의 사용금지지역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오염연료의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정한다.
사용금지지역 내에서 고오염연료의 판매 및 연료사용을 금지한다. 고오염연료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하고 이미 건설된 시설은 도시 인민정부 규정의 기한 내에 천연가스, 셰일가스, 액화석유, 천연오일가스, 전기 또는 기타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제 39 조

도시건설은 전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석탄난방지역에서 열·전기병합생산 및 집중난방을 추진한다. 중앙난방 공급망 설치지역에서는 분산형 석탄난방보일러의 신설, 확장을 금지한다. 배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석탄난방보일러는 도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철거해야 한다.

제 4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부문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함께 보일러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에 대해 환경보호기준 또는 요건의 진행상황을 조사 감독해야 한다. 환경보호기준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생산, 수입, 판매, 사용 할 수 없다.

제 41 조

석탄발전소 및 기타 석탄사용업체는 청정생산방식을 이용해야 하고 집진, 탈황, 탈질 등 설비를 갖추거나 기술개조 등 대기오염물 배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석탄사용업체가 선진적인 집진, 탈황, 탈질, 탈수은 등 대기오염물 통합방지기술 및 장치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제 42 조

전력배분은 청정에너지 전력망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

제 2 절 공업오염방지

제 43 조

강철,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유, 화학공업 등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황화물 및 질소산화물은 청정생산방식을 이용하고 집진, 탈류, 탈질 등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술개조 등 대기오염물 배출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4 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원자재 및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할 경우 휘발성유기물 함량은 품질기준 및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저독성, 저휘발성 유기용제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을 장려한다.

제 45 조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생산·서비스 활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 폐기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6 조

공업도장(塗裝)기업은 저휘발성 도료를 사용하고, 회계장부를 만들어 생산원료, 보조재 사용량, 폐기량, 경로, 휘발성유기물 함량을 기록해야 한다. 회계장부는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 47 조

석유, 화학공업 및 기타 유기용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은 수송관로, 설비에 대해 일상 유지관리 조치를 취하여 물질의 누출을 줄이고 누출된 물질은 즉시 수집하여 처리해야 한다. 석유·가스 저장소, 석유·가스 충전소, 원유 완제품의 유조선부두, 원유 완제품의 석유운수선박 및 유조차, 가스 탱크차 등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천연오일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 48 조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유, 화학공업, 제약, 광물 채굴 등 기업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집중수집처리 등 조치를 취하며 분진과 기체의 오염물 배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공업생산기업은 밀폐, 주위차단, 덮개, 청소, 살수 등 조치를 취하여 내부물질 저장, 수송, 조립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기체의 오염물 배출을 절감해야 한다.

제 49 조

공업 생산, 쓰레기 매립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는 회수·이용하고, 회수·이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오염방지처리를 실시해야 한다.
가연성가스의 회수·이용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을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회수·이용설비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기간에 가연성가스를 배출해야 하는 경우 배출하는 가연성가스를 충분히 연소시키거나 대기오염물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요건에 규정된 기한 내에 수리하고 개선해야 한다.

제 3 절 자동차, 선박 등으로 인한 오염방지

제 50 조

국가는 친환경 저탄소를 장려하고 도시규획에 의거하여 석유자동차 수량을 합리적으로 규제한다. 도시의 대중교통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중교통의 비중을 높인다.
국가는 재정, 세금, 정부조달 조치를 취하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신에너지 자동차·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 사용을 확대한다. 석유 소모량이 높고 오염배출이 높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 발전을 제한하여 화석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건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국가 자동차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에 상응하는 배출제한치을 미리 적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도시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한다. 도로건설을 최적화하고 보행자도로와 비자동차도로가 잘 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51 조

자동차, 선박, 비도로 이동기계는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자동차·선박, 비도로 이동기계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제 52 조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 생산기업은 새로 생산되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에 대하여 배

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판매허가증을 발급한다. 검사 정보는 사회에 공개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현장검사, 표본측정 등 방식을 통해 새로 생산되고 판매되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에 대해 조사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공업, 품질감독, 공상(工商) 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제 53 조

사용 중인 자동차는 국가 또는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배출검사 기구가 정기적으로 배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 합격한 경우 도로운행을 할 수 있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은 안전기술검사 합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자동차 집중주차구역, 유지관리구역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표본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정상적인 통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격측정 등 기타 기술수단을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에 대해 감독하고 표본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제 54 조

자동차 배출검사기구는 법에 의거한 측정증명을 통해 검사에 합격한 자동차 배출검사설비를 사용하여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이 제정한 규범에 의거해 자동차에 대한 배출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검사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자동차 배출검가기구와 책임자는 검사데이터의 진정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인증허가 감독 관리부문은 자동차 배출검사기구의 배출검사 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한다.

제 55 조

자동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수입 자동차의 차량모델별 배출검사정보, 오염방지 기술정보, 관련 유지보수 기술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
자동차 유지보수업체는 대기오염방지 요건 및 국가의 관련 기술규범에 따라 사용 중인 자동차의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자동차가 규정된 배출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운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해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오염방지장치 등을 임시로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등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배출검사를 통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동차 유지보수업체는 이러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한다. 자동차의 차량용 배출진단시스템 훼손을 금지한다.

제 56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교통운송, 도시농촌주택건설, 농업행정, 수질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비도로이동기계의 대기오염물 배출상황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배출이 불합격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국가는 친환경 운전을 장려하고 휘발유 자동차(燃油机动车) 운전자가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3 분 이상 정차할 필요가 있을 때, 엔진을 끄고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제 58 조

국가는 자동차와 비도로이동기계의 환경보호 리콜제도를 확립한다.
생산·수입기업은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가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고 있음을 알고, 설계와 생산에 결함이 있거나 규정된 환경보호 내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품질감독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함께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제 59 조

오염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오염방지장치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중형 디젤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이용하고 배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요건에 부합하는 오염방지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제 60 조

자동차가 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리를 해야 한다. 수리를 하거나 오염방지기술을 활용한 후에도 대기오염물 배출이 여전히 국가 자동차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자동차를 폐기 회수기업에게 인계하고 자동차 폐기 회수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기, 해체, 소각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가는 사전에 고오염배출 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의 폐기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 61 조

도시 인민정부는 대기 환경질량 상황에 따라 고오염배출 비도로 이동기계의 사용금지구역을

정하고 발표할 수 있다.

제 62 조

선박 검사기구는 선박 엔진 및 관련 설비에 대해 배출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하고 국가배출기준에 부합할 경우 선박을 운행할 수 있다.

제 63 조

내륙하천과 강·바다 직항 선박은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유를 사용해야 한다. 원양 선박은 정박 후 대기오염물 방지요건에 부합하는 선박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부두는 육상에 기지를 둔(岸基) 전기 공급시설을 계획ㆍ설계ㆍ건설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부두는 육상에 기지를 둔 전기 공급시설의 개조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선박은 정박 후 육상에 기지를 둔 전기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제 64 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연해지역에 선박 대기오염물 배출통제구역을 정하고, 배출통제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선박 관련 배출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65 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이동기계용 연료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해 일반 디젤유 및 기타 비자동차용 연료 판매를 금지한다. 비도로 이동기계, 내륙하천 및 강·바다 직항 선박에 아스팔트유와 중질유 판매를 금지한다.

제 66 조

엔진오일, 질소산화물 환원제, 연료와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제의 유해물질 함량과 기타 대기환경보호지표는 관련 기준의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자동차·선박 오염 방지장치의 기능과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 67 조

국가는 민간항공기의 대기오염 방지를 적극 추진하고 설계, 생산, 사용 과정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대기오염물 배출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제 4 절 비산먼지 오염방지

제 68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건설시공과 운송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의 청결을 유지한다. 원료더미와 잔토더미의 방치를 방지한다. 녹지·수면·습지와 지면포장면적을 확대한다.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도시농촌주택건설, 도시환경위생, 교통운수, 국토자원 등 관련부서는 본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제 69 조

건설업체는 비산먼지 오염방지비용을 공사비에 포함시키고 공사청부계약서에 시공업체의 비산먼지 오염방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비산먼지 오염방지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주택건축, 도시행정 기초시설 건설, 하천 도로정비 및 건축물 해체 시공업체는 비산먼지 오염방지를 담당하는 감독관리 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에 주위차단막을 설치하고 덮개, 단계별 작업, 선택시간제 시공, 살수를 통해 먼지 규제, 지면과 차량 세척 등 효과적인 먼지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축토목, 건축공정 폐기물, 건축 쓰레기는 즉시 운반해야 하고 현장에 쌓아놓은 것은 밀폐식 먼지방지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공정 폐기물, 건축 쓰레기는 자원화처리를 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시공현장의 비산먼지 오염방지 조치, 책임자, 비산먼지 감독관리 주관부서 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건설업체는 일시적으로 건설작업이 불가능한 건설부지의 노출지면에 덮개를 해야 한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녹화, 포장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제 70 조

포장되지 않은 석탄, 쓰레기, 잔토, 모래자갈, 토목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등이나 흐르는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은 밀폐 혹은 기타 조치를 취하여 재료 유실로 인해 비산먼지 오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정에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해야 한다.
물질을 하역하는 경우 밀폐 또는 분무 등 방식을 취하여 비산먼지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는 도로, 광장, 주차장 및 기타 공공장소의 청결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기계화 청소 등 먼지가 적은 작업방식을 실시하여 비산먼지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71 조

도시하천 (市政河道), 하천연안 , 공공부지의 노출지면 및 기타 도시의 노출지면에 대해 관련 부서는 규획에 의거하여 녹화 (綠化) 또는 투수 (透水) 형 포장을 실시해야 한다 .

제 72 조

석탄 , 맥간석 (저질탄), 석탄 잔재물 (煤渣), 석탄재 , 시멘트 , 석회 , 석고 , 모래흙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을 저장할 경우 밀폐시켜야 한다 . 밀폐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에 적재물보다 높은 방지막과 덮개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비산먼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두 , 광산 , 매립장 및 쓰레기 수집처리장은 구역을 나눠 작업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 5 절 농업과 기타 오염방지

제 7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생산 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 농업의 순환경제를 발전시킨다 . 폐기물의 종합처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농업생산 및 경영활동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

제 74 조

농업생산 및 경영자는 비료살포방식 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학비료 사용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 농약 사용을 통해 암모니아 , 휘발성유기물 등 대기오염물의 배출을 줄여야 한다 .
인구집중지역에서 수목 , 화초에 대해 맹독성 , 고독성 농약의 살포를 금지한다 .

제 75 조

가축장과 양식지역은 오수 , 가축분뇨와 사체 등에 대해 신속히 수집 , 저장 , 운반 및 무해화처리를 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

제 76 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행정 등 관련부서는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의 활용을 장려하고 지지한

다. 농작물줄기, 낙엽 등에 대한 비료화, 사료화, 에너지화, 공업원료화, 식용균 비천금속화 등 종합이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농작물줄기의 농경지로의 환원과 수집일체화 농업기계(수확과 동시에 농작물줄기를 같이 수집하는 것)에 대한 재정보조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작물줄기의 수집, 저장, 운반 및 종합이용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보조금 등 조치를 취하여 농촌단체 경제조직, 농민전문협력 경제조직, 기업 등을 지원하고 농작물줄기의 수집, 저장, 운반 및 종합이용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제 77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역을 정하여 야외에서 농작물줄기, 낙엽 등 연기와 먼지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태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 78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위생행정부문과 함께 대기오염물이 국민건강과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정도에 따라 유독유해 대기오염물목록을 발표하고 위험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항(前項) 목록에 열거된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위험 경보 체계를 수립한다. 배출구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위험을 평가한다. 환경안전의 잠재위험을 조사하고 환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9 조

대기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 및 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업체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 배출에 효과적인 기술방법과 작업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정화장치를 설치하여 배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제 80 조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업자는 생산경영과정에서 악취를 배출할 경우 과학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보호거리를 유지한다. 정화장치를 설치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악취 배출을 방지해야 한다.

제 81 조

기름연기를 배출하는 요식서비스업 경영자는 기름연기 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가동

을 유지하거나 기타 기름연기 정화 조치를 취하여 기름연기를 배출기준에 맞게 배출해야 하며 인근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환경에 오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주민거주주택에 연기전용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주상복합건물과 주상복합건물 내 거주 층과 서로 인접한 상업 층에는 기름연기, 특이한 냄새,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요식서비스업의 신설, 개조, 확장을 금지한다.
모든 업체와 개인은 현지 정부가 금지한 구역 내의 야외 음식조리 혹은 장소를 제공 할 수 없다.

제 82 조

인구집중구역과 기타 법에 의해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 아스팔트, 아스팔트 펠트(felt: 섬유제품에 아스팔트 가공을 한 방수지),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 및 기타 유독 유해 분진과 연기,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폭죽을 생산, 판매하고 터뜨리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업체와 개인은 도시 인민정부가 금지한 기간과 구역 내에서 폭죽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

제 83 조

국가는 문명적, 친환경적인 제사를 장려하고 유도한다.
화장장은 먼지를 제거하는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 가동을 유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84 조

의류 드라이클리닝과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는 경영자는 국가 기준 또는 요건에 따라 특이한 냄새와 폐기가스를 처리하는 장치 등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정상 운행을 유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제 85 조

국가는 오존층파괴물질 대체품의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점차 감소시킨다.
국가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대해 총량규제 및 배출권 할당 관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권이 규정한다.

제 5 장 중점구역 대기오염의 연합방지

제 86 조

국가는 중점구역 대기오염을 공동으로 예방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중점 구역 내의 대기오염 방지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주요 기능구획, 구역별 대기환경질량 상황, 대기오염의 이동확산 규율에 의거하여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을 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점구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선도적인 지방인민정부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통일된 계획·기준·관측·방지조치의 요건에 의거하여 대기오염 연합방지를 실시하여 대기오염방지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지도와 독려를 강화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제 1 항 규정을 참고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을 정할 수 있다.

제 87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 부서,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 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중점구역 경제사회발전과 대기환경 적재용량에 따라 중점구역의 대기오염 연합방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목표를 명확히 한다. 구역의 경제구조를 최적화하고 교통관리를 총괄한다. 청정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중점 방지임무와 조치를 제시하여 중점구역 대기환경질량 개선을 촉진한다.

제 88 조

국무원 경제종합 주관부문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함께 국가 대기 오염방지 중점구역의 산업발전 상황과 대기환경질량 상황을 적절히 결합하여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안전, 품질 등 요건을 한층 제고한다.
중점구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더욱 엄격한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 중인 자동차 검사시험방법과 배출한도를 통일시키고 합격한 차량용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 89 조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업단지, 개발구, 구역의 산업·발전 등 규획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규획 수립기관은 중점구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중점구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는 서로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기환경 질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즉시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협의 의견과 수용 상황은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 또는 승인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 90 조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 내 석탄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신축, 개조, 확장할 경우 석탄의 당량(當量) 혹은 감량(減量) 대체를 실시해야 한다.

제 91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의 대기환경질량 모니터링, 대기오염원 모니터링 등 관련 정보의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뮬레이션 및 위성, 항공측정, 원격탐지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중점구역 내 대기오염원 및 변화 추세를 분석하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92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구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련부서를 조직하여 협동적이고 번갈아가면서 다구역에서 법을 집행한다.

제 6 장 중대 대기오염 대응

제 93 조

국가는 중대대기오염의 관측 및 경보 체계를 수립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기상주관기관 등 관련부서, 국가 대기오염방지 중점지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합동으로 중점지역의 중대 대기오염 관측 및 경보 체계와 통일된 경보 등급기준을 수립한다. 중대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중점지역 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상주관기관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중대 대기오염의 관측 및 경보 체계를 수립한다.

제 94 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중대 대기오염을 돌발사건 비상관리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와 중대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급 인민정부는 중대 대기오염 비상대응매뉴얼을 제정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95 조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상주관기관과 합동으로 대기환경질량 예보를 시행해야 한다. 중대 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구가 설치된 시 인민정부는 중대 대기오염 예보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고 경보 등급을 정한 후 신속히 경보를 발령한다. 경보 등급은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한다. 모든 업체와 개인이 임의로 사회에 중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
경보 발령 후, 인민정부와 관련부서는 TV, 라디오, 인터넷, 메시지 등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공지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취하고 외출과 기타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 96 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중대 대기오염의 경보 등급에 의거하여 신속히 비상대응매뉴얼을 가동하고 비상대응 수요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중지 또는 생산제한, 자동차의 운행제한, 폭죽금지, 공사장의 토목·석재공사와 건축물 해체시공 중지, 노천소각 중지,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활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인공적으로 기상에 영향을 주는 작업 등 비상대응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비상대응 종료 후, 인민정부는 신속히 비상대응매뉴얼 실시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비상대응매뉴얼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

제 97 조

대기오염을 초래하는 돌발환경사건에 대해 인민정부, 관련부서, 관련 기업·사업기관은《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대응법》,《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비상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신속히 돌발환경사건으로 인해 초래된 대기오염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회에 모니터링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제 7 장 법률책임

제 98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현장 진입 거부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 위탁을 받은 환경감

찰기구 또는 기타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의 검사감독에 불응하거나 감독을 실시할 때 허위를 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 또는 기타 소관 대기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개선을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99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 명령 또는 생산 제한, 생산 중지, 복원을 명령하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중지, 폐업을 명한다.

(1)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 대기오염물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 감독관리를 회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제 100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1) 대기환경질량 측정관측설비 또는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측정설비를 불법으로 점유,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한 경우

(2) 배출하는 공업폐기가스 및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에 대한 측정관리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고 측정기록 원본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 대기오염물 배출 자동측정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관리감독설비를 규정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하지 않고 측정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

(4) 중점오염물배출업체가 자동측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5) 대기오염물 배출구를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 101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정책목록에서 금지한 설비와 제품을 생산, 수입, 판매, 사용하거나 국가의 종합적인 산업정책목록에서 금지한 가공작업을 도입하거나 도태된 설비와 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종합

주관부문과 입국 검사 검역 기구는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다.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 영업정지, 폐업을 명한다. 수입행위가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0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탄광에 석탄 세척시설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에너지자원 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영업 정지, 폐업을 명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방사성과 비소 등 유독유해물질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석탄을 채굴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폐업을 명한다.

제 103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 공상행정 관리부문은 직책에 의거하여 시정 명령을 내리고 원자재, 제품, 불법수입을 몰수하며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판매하는 경우
(2) 함량이 품질기준 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휘발성 유기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3)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 이동기계용 연료, 엔진오일, 질소산화물 환원제, 연료와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제를 생산 혹은 판매하는 경우
(4) 연소금지구역 내에서 고오염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제 104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기구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자재, 제품,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1)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석유 코크스를 수입하는 경우
(2) 품질기준 혹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휘발성유기물을 함유한 원자재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3)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자동차, 선박, 비도로 이동기계용 연료, 엔진오일, 질소산화물

환원제 , 연료와 윤활유 첨가제 및 기타 첨가제를 수입하는 경우

제 105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업체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탄 , 석유 코크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06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용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 , 어업주관부문이 직책에 따라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07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연소금지구역 내에서 고오염 연료시설을 신축 · 확장하거나 규정에 따라 고오염연료 사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중앙난방 공급망이 설치된 구역에서 분산형 석탄난방보일러 (分散燃煤供热锅炉) 를 신축 · 확장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석탄난방보일러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고오염연료시설을 몰수하고 , 석탄난방보일러를 철거한다 .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기준 또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보일러를 생산 , 수입 , 판매 ,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품질감독 ,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08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
(1) 휘발성유기물을 포함하고 폐기가스를 초래하는 생산 · 서비스 활동을 밀폐된 공간 또는 설비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오염방지설비를 규정에 따라 설치 ·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가스 절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공업도장기업이 휘발성유기물 함량이 적은 도료를 사용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3) 석유 , 화학공업 및 기타 유기용제를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이 수송관로와 설비에 대해 일상적인 유지보호 , 수리를 실시하지 않고 물질의 누출 절감하지 않았거나 누출된 물질에 대

해 신속하게 수집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4) 석유 및 가스 저장소, 석유·가스 충전소, 유조차, 가스탱크차 등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천연오일가스 회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은 경우
(5) 철강, 건축자재, 비철금속, 석유, 화학공업, 제약, 광물 채굴 기업이 집중수집처리, 밀폐, 주위차단, 덮개, 청소, 살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분진과 기체상 오염물의 배출을 규제하거나 절감하지 않은 경우
(6) 공업 생산, 쓰레기 매립 또는 기타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회수 처리하지 않고 회수 처리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오염방지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연성가스의 회수 처리설비를 정상 가동하지 않고 즉시 수리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 109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생산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하고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와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 국무원 자동차 생산주관부문은 해당 자동차 차종의 생산정지를 명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의 생산기업이 엔진과 오염방지장치를 허위로 조작하고 불량품을 허위로 배출검사 합격제품으로 사칭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생산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하고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 국무원 자동차 생산주관부문은 해당 자동차 차종의 생산정지를 명한다.

제 110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상행정관리부문, 출입국 검사검역기구는 직책에 따라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물품가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한다. 오염물 배출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를 몰수하고 폐기한다. 수입행위가 밀수에 해당하는 경우 해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판매한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가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수리수선, 교체, 반품을 실시해야 한다. 구매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는 손해을 보상해야 한다.

제 111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생산·수입업체가 규정에 따라 사회에 생산·수입 자동차 차종의 배출검사정보 또는 오염방지기술정보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생산·수입업체가 사회에 생산·수입자동차 차종과 관련된 유지보수기술정보를 규정에 따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교통운수 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2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비도로 이동기계의 배출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배출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불법수입을 몰수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자격인증 담당부서는 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의 배출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배출검사보고서를 발급한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시로 변경 교체하고 허위로 조작하여 자동차 배출검사를 통과시키거나 자동차의 차량용 배출진단시스템을 훼손시킨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대해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유지보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 한 대당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3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배출검사에 불합격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14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배출 기준을 불합격한 비도로 이동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 중인 중장비 디젤차량, 비도로이동기계를 규정에 따라 오염방지장치를 설치지 않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5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고(오염)배출 비도로이동기계의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고배출 비도로 이동기계를 이용한 경우 도시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15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시공업체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주관부서는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
(1) 시공업체가 주위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덮개 , 단계별 작업 , 시간선택제 시공 , 살수를 통한 먼지 규제 , 지면 및 차량 세척 등 효과적인 먼지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 건축토목 , 건축공정 폐기물 , 건축쓰레기를 즉시 운반하지 않았거나 밀폐식 먼지방지 덮개를 하지 않은 경우 ;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건설업체가 일시적으로 건설작업이 불가능한 건설부지의 노출지면에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3 개월을 초과하여 건설작업이 불가능한 건설부지의 노출지면에 대해 녹화 , 포장 ,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등 주관부서는 전항 (前項)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제 116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석탄 , 쓰레기 , 잔토 , 모래자갈 , 토목공사 , 시멘트 모르타르 (회반죽) 등 미포장의 흐르는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 밀폐 혹은 기타 물질의 유실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2 천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시정을 거부할 경우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

제 117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시정을 거부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 또는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
(1) 석탄 , 맥간석 (저질탄), 석탄 잔재물 (煤渣), 석탄재 , 시멘트 , 석회 , 석고 , 모래흙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물질을 밀폐하지 않은 경우
(2) 밀폐할 수 없고 비산먼지가 쉽게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 주변에 적재물 보다 높은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덮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물질을 하역할 때 밀폐 · 분무 등 방식을 취해 비산먼지 배출을 방지하지 않은 경우
(4) 석탄 , 맥간석 (저질탄), 석탄 잔재물 (煤渣), 석탄재 등 물질을 보관할 때 연소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부두 , 광산 , 매립장 , 쓰레기 수집처리장에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6) 유독유해 대기오염물목록에 열거된 유독유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이 규정에 따라 환경위험 경보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환경안전의 잠재위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7) 대기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 및 폐기물 소각 시설의 운영업체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 배출을 감소하는데 효율적인 기술방법과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정화장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8) 악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 118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름연기를 배출하는 요식서비스업 경영자가 기름연기 정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름연기 정화장치를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았거나 기타 기름연기 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천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주민거주주택에 연기전용 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은 주상복합건물과 주상복합건물 내 거주 층과 서로 인접한 상업 층에서 기름연기, 특이한 냄새, 폐기가스를 발생시키는 요식서비스업의 신설, 개조, 확장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폐업 처분과 함께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인민정부가 금지한 기간과 구역 내에서 식품을 야외에서 소각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각 도구와 불법수입을 몰수한다. 5 백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9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집중지역에서 수목, 화초에 대해 맹독성, 고독성 농약을 살포하거나 농작물줄기, 낙엽 등 연기와 먼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야외에서 소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5 백 위안 이상 2 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인구집중구역과 기타 법적으로 특별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 아스팔트, 아스팔트 펠트 (felt, 섬유제품에 아스팔트 가공을 한 방수지), 고무, 플라스틱, 피혁, 쓰레기 및 기타 유독유해 분진과 연기,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업체에 대해서는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5 백 위안 이상 2 천 위안 이하의 벌금

을 부과한다 .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인민정부가 금지한 기간과 구역 내에서 폭죽을 터뜨릴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제 120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의류 드라이클리닝과 자동차 수리 등 서비스 활동을 진행하면서 특이한 냄새와 폐기가스의 처리장치 등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2 천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시정을 거부할 경우 영업정지 및 원상복구를 명한다 .

제 121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사회에 중대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하여 치안관리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장의 토목 · 석재공사와 건축물 해체시공 중지 등 중대 대기오염 비상대응조치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정한 관리감독부문은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22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조항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에 처한다 .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전년도 기업 · 사업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입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일반적 또는 비교적 큰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기오염사고로 인해 초래된 직접 손실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기오염사고로 인해 초래된 직접 손실의 3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123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 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벌금에 처해지고 시정 명령을 받게 된다 . 시정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일의 다음 날부터 원래 벌금에 의거하여 연속으로 처벌 (일수별 벌금가중) 할 수 있다 .

(1)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2) 대기오염물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대기오염물의 배출총량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한 경우
(3) 감독 관리를 회피하여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4) 건축공사 또는 비산먼지가 쉽게 발생하는 물질을 저장하거나 보관할 시 효과적인 비산먼지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 124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신고인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변경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복을 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 조

대기오염물 배출로 인해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권리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6 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 기타 대기환경보호 관리감독 책무를 가진 부서과 해당 직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욕·불법수수, 허위·위조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 127 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 장 부칙

제 128 조

해양공정의 대기오염방지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29 조

본 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1984 년 5 월 11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기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6 년 5 월 15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9 차 회의에서 ≪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1 차 수정되었다. 2008 년 2 월 28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2 차 회의에서 수정되었다. 2017 년 6 월 27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에서 ≪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개정에 관한 결정≫으로 2 차 수정되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의 보호 및 개선, 물 오염 방지, 수생태계를 보호, 식수안전 보장, 국민의 건강 보호, 생태문명건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 등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적용된다.

제 3 조

물 오염방지는 예방을 중점으로 방지와 처리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식수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공업오염, 도시·읍 생활오염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경지 오염 방지, 생태관리사업 건설을 적극 추진한다. 물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예방·통제·저감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물환경보호 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의 각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환경질량에 책임을 갖고 즉시 물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조

성 · 시 · 현 · 향은 하천법을 제정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의 강 , 호수의 자원보호 , 해안선관리 , 물 오염방지 , 물환경처리 등 지도업무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제 6 조

국가는 물환경보호 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 . 물환경보호 목표 달성 상황을 지방인민정부와 책임자의 심사평가 내용으로 여긴다 .

제 7 조

국가는 물 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선진기술의 보급을 장려 지지하고 물환경 보호의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

제 8 조

국가는 재정이전지급 등의 방식을 통해 식수원보호구역과 하천 , 호수 ,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환경생태보호 보상제도를 수립한다 .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물 오염방지 실시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
교통주관부문의 해사 (海事) 관리기구는 수역의 선박오염방지 실시에 대해 관리 감독한다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 국토자원 , 위생 , 건설 , 농업 , 어업 등 부문과 중요 하천 , 호수 유역 수자원 보호기구는 각자의 직책 범위에서 물 오염 방지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

제 10 조

물 오염물을 배출할 시 ,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한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과 중점 물 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 11 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수질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수질환경을 오염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주관부문은 물 오염방지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업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 2 장 물 오염방지의 기준과 규획

제 12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 물환경질량 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수질환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지방기준을 제정하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제 13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수질 행정관리 주관부문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국가에서 정한 중요 하천, 호수유역의 물 사용기능과 관련지역의 경제·기술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중요하천, 호수유역의 물에 적합한 물환경 질량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제 14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가수질환경기준과 국가 경제·기술조건에 의거하여 국가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지방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가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에서 이미 규정한 항목 보다 엄격한 지방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 후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지방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기록된 물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지방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제 15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물 오염방지의 요건과 국가 또는 지방의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물환경기준과 물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개정한다.

제 16 조

물 오염방지는 유역 혹은 지역에 따라 통일적으로 규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에서 정한 중요 하천과 호수 유역의 물 오염 방지규획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 국무원 거시경제종합조정기구, 수질행정 등 부문과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규획 외에 기타 성·자치구·직할시의 하천과 호수 유역 물 오염방지규획은 국가에서 정한 중요하천과 호수의 유역 물 오염 방지규획과 해당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동급의 수질행정 부문, 관련 시·현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작성하며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쳐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내의 여러 현을 지나가는 하천과 호수의 유역 물 오염 방지규획은 국가에서 정한 중요하천과 호수 유역 물 오염 방지규획과 해당지역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동급 수질행정 부문과 협력하여 작성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비준을 받은 물 오염방지규획은 물 오염을 방지하는 기본근거이며 규획의 개정은 기존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비준을 받은 하천 / 호수의 유역 물 오염방지규획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물 오염방지규획을 제정한다.

제 17 조

해당 시·현급 인민정부는 물 오염방지규획에서 정한 물환경질량 개선목표에 따라 목표달성 기한을 정하고 조치를 취하여 목표를 달성한다.

해당 시·현급 인민정부는 기한 내 목표달성 규획을 1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며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18 조

시·현급 인민정부는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상무위원회에 환경상태와 환경보호 목표달성상황을 보고할 시, 물환경 질량의 기한 내 목표 달성 규획에 관한 실행 상황을 보고하며 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물 오염방지의 감독관리

제 19 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 및 기타 수상시설을 신축, 개축, 증축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건설업체에서 하천과 호수의 오염배출구를 신축, 개축, 증축할 때 수질행정 주관부문 혹은 유역관리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항, 어업수역과 관련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하는 동시에 교통, 어업 주관부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물 오염방지시설은 주체공정과 동시에 설계·시공·사용되어야 한다. 물 오염방지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문건 내 비준·등록의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

제 20 조

국가는 중점 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총량통제제도를 실시한다.
중점 물 오염배출 총량 규제 지표는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국무원의 해당 부문과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 거시경제 종합조정부문과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거치며 실시하도록 지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중점 물 오염배출 총량을 절감 혹은 규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환경질량 상황과 물 오염방지 업무의 요건에 따라 국가 중점 물 오염물 이외의 기타 물 오염 배출에 대해 오염물 총량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물 오염배출총량 규제 지표를 초과하거나 물환경질량 개선목표를 충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성급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부문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인민정부 주요 책임자와 회담을 해야 하며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중점 물 오염배출 총량 심사를 잠시 중지한다. 회담 상황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21 조

수역에 산업폐수와 의료오수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배출허가증을 소지해야 배출할 수 있고, 폐수와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업자는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영업체도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배출허가증에는 배출 물 오염물의 종류, 농도, 총량, 배출방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행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배출허가증 없이 또는 오염배출허가증 규정을 위반한 채 수역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폐수와 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2 조

수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업자는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하천과 호수에 배출구를 설치할 경우 국무원 수질행정주관부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3 조

배출허가증을 관리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국가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따라 물 오염물 배출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기존 검사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중점 오염물 배출 업체는 물 오염물질배출 자동측정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설비와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한다. 아울러 측정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규정한다.
물 오염물 배출 자동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해야 할 중점오염물배출 업체 목록은 해당 관할지역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용량, 중점물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지표의 요건과 오염물배출 기업에서 배출하는 물 오염물질의 종류, 수량 및 농도 등의 요인에 근거하여 동급의 관련 부문과 상의하여 확정한다.

제 24 조

배출허가를 관리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사실성과 정확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중점오염물을 배출하는 업체의 물 오염물 배출 모니터링설비의 데이터 전송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는 물환경질량 모니터링과 물 오염물질 배출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한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물환경 모니터링규범을 책임지고 제정하며, 국가 물환경 상황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아울러 국무원 수질행정 관련 부문과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일적으로 국가 물환경질량 검측소 설치를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물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제 26 조

국가가 정한 중요 하천과 호수유역의 수자원 보호기구는 유역이 있는 성의 물환경질량 상황

을 책임지고 모니터링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즉시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국무원 수질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유역수자원보호지도기구가 설립되었을 경우 측정결과를 즉시 유역수자원보호지도기구에 보고한다.

제 27 조

국무원의 해당 부문과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수자원을 개발·이용·조정·관리할 경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고려해야 한다. 하천의 적당한 유량과 호수·댐·지하수의 적당한 수위(水位)를 유지한다. 기본생태의 물 사용을 보장하고 수역의 생태기능을 유지한다.

제 28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수질행정 등 부문과 해당 성·자치구·지할시 인민정부와 함께 중요 하천과 호수의 물환경보호 연합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일적으로 규획, 기준, 모니터링, 방지조치를 실시한다.

제 29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동급의 해당 부문과 함께 유역의 생태기능의 요건에 근거하여 유역생태환경보호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역환경자원 적재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를 실시하고 유역환경자원 적재능력 경보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유역생태환경기능 요건에 근거하여 하천, 호수, 습지의 보호와 복원을 실시한다.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춰 인공습지, 수원함양림, 강과 호수 연안의 식생 완충대와 분리대 등 생태환경정리와 보호 공사를 실시한다. 악취오수를 처리하고 유역 혹은 환경자원적재능력을 제고시킨다.

개발건설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유역생태환경기능을 유지하고 생태보호 핫라인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30 조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부문은 관할 범위 내의 오염물 배출 업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받은 업체는 사실과 같이 상황을 반영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기구는 조사를 받은 업체가 검사 중 상업기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31 조

여러 행정구역의 물 오염 분쟁은 관련 지방인민정부에서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공통의 상급 인민정부에서 해결한다.

제 4 장 물 오염방지대책

제 1 절 일반규정

제 32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위생주관부문과 함께 국민건강과 생태환경의 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유해·유독 물 오염물 목록을 공개하고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배출조항 규정목록 중 유해·유독 물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는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경위험을 평가한다. 환경안전의 잠복위험을 조사하며 유해·유독 물 오염물정보를 공개하고 효율적인 환경위험 방범 조치를 세운다.

제 33 조

수역에 유류(油類), 산성액체, 염기성액체 혹은 극독폐액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유류(油類) 혹은 유독 오염물질을 저장했던 차량과 용기를 수역에서 세척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4 조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 혹은 고(高)방사성 및 중(中)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하거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수역에 저(低)방사선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배출할 경우 국가 방사성 오염방지의 규정과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35 조

수역에 열이 있는 폐수를 배출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취해 수역의 수온이 물환경질량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36 조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오수는 소독처리를 거쳐야 하며 , 국가의 해당기관 기준에 부합한 후 배출할 수 있다 .

제 37 조

수역에 산업폐기물 , 도시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수은 , 카드뮴 , 비소 , 크롬 , 납 , 시안화물 , 황인 등 용해성 극독폐액을 수역에 배출하거나 버리거나 직접 지하에 묻는 것을 금지한다 .
용해성 극독 고형 (固形) 폐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대해 방수 , 누수방지 , 유실방지 등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

제 38 조

하천 , 호수 , 운하 , 관개수로 , 저수지 등 최고수위선 이하의 모래사장이나 경사에 고체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질을 퇴적 ,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39 조

하수도 , 구멍 , 틈새 , 종유동 등을 이용하여 지하도관을 설치하고 점검 데이터를 위조하고 왜곡하거나 물 오염방지시설의 비정상적인 운행 등 모니터링을 피하는 방식으로 물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40 조

화학품 생산기업 , 공업밀집지역 , 광산채굴지역 , 미광 (尾鑛) 창고 , 위험폐기물 처리장 , 쓰레기 매립장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누수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하수 수질 검측소를 만들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주유소 등의 지하 오일탱크는 이중 관을 사용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동시에 누수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한다 .
누수방지 조치가 없는 하수도 , 저수지를 이용하여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 ,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오수 , 기타 폐기물의 수송 혹은 저장을 금지한다 .

제 41 조

다층 지하수의 대수층 수질차이가 클 경우 층을 나누어 채굴한다 . 이미 오염된 지하수와 피

압수 (承压水) 는 혼합해서 채굴하면 안 된다 .

제 42 조

지하에 공장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탐측 , 채굴 등을 진행할 때 보호조치를 취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폐 광갱 , 폐 갱정 , 폐 취수정 등을 보고하고 봉인하거나 다시 메워야 한다 .

제 43 조

인공관개를 통해 지하수를 보충하여 지하수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

제 2 절 공업수 오염방지

제 44 조

국무원 관련부문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공업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물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 기술개선을 요구한다 . 종합방지대책을 취해 물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폐수와 오염물 배출량을 절감한다 .

제 45 조

공업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폐수를 모아서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공업폐수의 물 오염물은 분류해서 모아서 처리하여 희석 배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공업집중 지역은 오수집중처리 시설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고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감독설비와 네트워크 연결을 해야 하고 모니터링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
오수집중처리시설에 공업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에 처리한다 . 집중처리시설의 처리기술요건에 부합해야 배출할 수 있다 .

제 46 조

국가는 심각한 물 오염을 초래하는 낙후기술과 설비에 대해 도태제도를 시행한다 .

국무원 거시경제종합조정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협력하여 기한 내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심각한 물 오염을 일으키는 기술목록과 기한 내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심각한 물 오염을 일으키는 설비 목록을 발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혹은 사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설비목록에 있는 설비의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기술 이용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기 조항에서 규정된 기술목록에 있는 기술의 사용을 중지한다.
본 조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태된 설비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한다.

제 47 조

국가는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소형 제지, 제혁, 염색, 염료, 코크스, 유황제련, 비소제련, 수은제련, 정유, 도금, 농약, 석면, 유리, 시멘트, 철강, 화력발전 및 기타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생산프로젝트를 금지한다.

제 48 조

기업은 원재료 이용효율이 높고 오염배출량이 적은 청정기술을 도입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물 오염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제 3 절 도시 물 오염방지

제 49 조

도시오수는 집중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재정예산과 기타 방법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및 부설 배관망을 건설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도시오수 수집효율과 처리효율을 제고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문은 국무원 거시경제종합조정,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협력하여 도시향진규획 및 물 오염방지규획에 근거하여 전국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규획을 작성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거시경제종합조정, 환경보호, 수질행정 등 부문과 협력하여 해당 행정지역의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규획을 수립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건설주관부문은 도시오수처리시설건설계획에 근거하여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 및 부설 배관망의 건설을 추진하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행단위는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오염물 배출자에게 오수처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오수처리비용을 징수하여 오수집중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한다. 징수한 오수처리비용은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건설과 운행에 사용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오수처리비용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 50 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에 물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규정한 물 오염물질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오수집중처리 시설의 운행단위는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배수수질에 책임이 있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배수수질과 수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51 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행단위 혹은 침적물 처리설치 단위는 침적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 후의 침적물은 국가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침척물의 행방을 기록해야 한다.

제 4 절 농업과 농촌의 물 오염방지

제 52 조

국가는 농촌오수,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을 지지하고 농촌오수, 쓰레기의 집중처리를 추진한다.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오수, 쓰레기처리시설의 건설규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53 조

화학비료, 농약등 상문의 질량기준과 사용기준을 제정하고 물환경보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54 조

농약의 사용은 국가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농약의 운송, 저장과 처분기간이 지난 효력을 상실한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물 오염발생을 방지한다.

제 55 조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농업주관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조치를 취해 농업생산자가 화학비료와 농약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토양측정 비료처방 기술과 고효율 저독소 저잔류 농약을 추진한다.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을 통제하고 물 오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56 조

국가는 축산양식장, 양식단지에 축산분뇨·폐수 종합이용시설이나 무공해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
축산양식장, 양식단지는 축산분뇨·폐수 종합이용시설 또는 무공해화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하며 오수의 목표기준 배출을 통해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축산양식장, 양식단지가 있는 현·향급 인민정부는 축산분뇨 오수에 대해 분배 수집하고 집중 처리한다.

제 57 조

수산양식업자는 수역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하며 먹이와 약제를 합리적으로 투여함으로써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58 조

농경지 관개용수는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토양, 지하수, 농산품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농경지 관개수로에 공업폐수와 도시생활오수를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농경지 관개수로에 도시오수와 축산양식장폐수, 농산품가공폐수를 배출시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하류와 가장 가까운 관개취수원의 수질이 농경지관개용수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절 선박 물 오염 방지

제 59 조

기름이 포함된 오수,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오염물질 배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양운수업 선박이 내륙 하천 또는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내륙하천 선박오염물 배출기

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잔유, 폐유는 회수해야 하며 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역에 선박쓰레기를 투기 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박에 유류(油類)나 독성 화물을 적재·운송하는 경우 유출 및 침투방지 조치를 취하여 화물의 추락으로 인한 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하천으로 입항하는 국제선박이 밸러스트 워터를 배출하는 경우 밸러스트워터 처리장치 혹은 기타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60 조

선박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오염방시설비와 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수역환경 오염방지 증서와 문서를 지참해야 한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선박은 조작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기록부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61 조

항구, 부두, 하역사업장 및 선박 정비·제작업체가 있는 시·현 인민정부는 선박오염물, 폐기물수거, 운행·처리장치 시설의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항구, 부두, 하역사업장 및 선박 정비·제작업체는 선박오염물,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선박오염물,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하고 유류(油類) 또는 오염위험성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청결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규모에 맞는 수거처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 62 조

오염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선박과 관련 업체는 관련 법률규정과 기준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고 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와 어업주관부문은 선박과 관련 업체의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오염위험성이 있는 화물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선박은 작업방법을 작성해야 하며 효율적인 안전조치와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작업을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벌크(散装)포장한 액체오염위해성 화물의 라이터링(Lightering·过驳) 작업을 금지한다.

제 5 장 식수원 및 기타 특수 수역 보호

제 63 조

국가는 식수원보호구역 제도를 구축한다. 식수원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와 2 급 보호구로 구분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식수원보호구역의 외곽지역을 필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원지보호구역의 확정(划定)은 관련된 시, 현인민정부가 획정(划定)방안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보고하여 허가 받는다. 여러 시, 현을 경유하는 식수원보호구역의 획정(划定)은 관련된 시, 현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획정(划定)방안을 제시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보고하여 허가받는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동급 수질행정, 국토자원, 보건, 건설 등 의 부문과 공동으로 획정(划定)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동급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여러 성·자치구·직할시를 경유하는 식수원보호구역은 관련된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유역관리기구와 협상하여 획정(划定)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분이 동급 수질행정, 국토자원, 보건, 건설 등의 부문과 공동으로 획정(划定)방안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관련된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원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의 실제수요(实际需要)에 따라, 식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식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식수원보호구역의 접경지역에 명확한 지리계표(界标)및 경고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제 64 조

식수원보호구역내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5 조

식수원 1 급 보호구역내에 급수시설과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축·재건·증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미 건설 완료한 급수시설과 수원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는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이를 철거 또는 폐쇄하도록 명한다.

식수원 1 급 보호구역내에서는 가두리 양식, 관광, 수영, 낚시나 기타 식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제 66 조

식수원 2 급 보호구역내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축·재건·증축하는 것을 금

지한다. 이미 건설 완료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건설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철거 또는 폐쇄하도록 명한다.
식수원 2 급 보호구역내에서 가두리 양식, 관광 등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응당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식수 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67 조

식수원 필수보호구역내에 물 오염이 심각한 건설프로젝트를 신축·증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건설 프로젝트를 재건 시 오염물 배출량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제 6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식수원 보호의 실제수요(实际需要)에 따라 필수 보호구역내에 공사 혹은 습지건설, 수원함양림 건설 등의 생태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물 오염물질이 식수 수역에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식수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69 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환경보호 등 부문을 조직해야하고, 식수원보호구역, 지하수 식수원의 집적지대 및 급수업체 주변구역의 환경상태와 오염위험에 대해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한다. 존재할 수 있는 오염위험요소를 샅샅이 검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위험예방조치를 취한다.
식수원이 오염되어 급수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경우,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응당 관련 사업체와 기타 생산영업자에게 물 오염물질 배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해야 하고, 이를 식수급수업체와 급수, 보건, 수질행정 등 부문에 통보한다. 행정구역을 경유할 경우에도 응당 관련된 지방인민정부에 통보해야한다.

제 70 조

단일수원급수도시의 인민정부는 응당 응급수원 혹은 대기수원을 건설해야 하고, 조건부 지역은 지역네트워크급수를 전개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합리적으로 농촌식수원을 안배·구성해야 한다. 조건부 지역은 도시와 읍의 급수 홈페이지를 확대 혹은 농촌과 향진(乡镇)을 경유하는 집중급수공정을 건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고, 집중급수 규모를 발전시킨다.

제 71 조

식수급수업체는 응당 취수구와 배출구의 수질검사 작업을 끝내야 한다. 취수구 수질이 식수원 수질 기준과 배출구 수질이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할 시, 응당 즉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소재지 시, 현급 인민정부급수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급수주관부문은 보고를 받은 후, 응당 환경보호, 보건, 수질행정 등의 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식수급수업체는 응당 급수수질에 대해 책임져야 하고, 급수시설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하며, 급수수질이 국가 관련기준과 부합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72 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관련 부문을 조직하고 본 행정구역내의 식수원, 급수업체의 급수와 사용자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의 수질 등 식수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평가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 관련된 부문은 응당 최소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사회에 일회용 식수안전상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73 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질환경보호의 실제수요(实际需要)에 따라 식수원보호구역내에서 인(磷)을 함유한 세척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재배와 양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광명소의 하천, 주요 어업수역과 기타 특수경제문화가치를 보유한 하천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보호구역의의 수질이 지정용도별 수질환경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제 75 조

관광명소의 하천, 주요 어업수역과 기타 특수경제문화가치를 보유한 하천의 보호구역내에 배출구를 신설하면 안 된다. 보호구역 부근에 배출구를 신설하는 경우, 응당 보호구역내의 수원을 오염시키지 않음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장 물 오염사고의 처리

제 76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 물 오염사고 발생이 가능한 업체는 응당《중화인민공화국 긴급사고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긴급 물 오염사고 대응준비, 대응처리 및 사후복원 등 작업을 끝내야 한다.

제 77 조

물 오염사고 발생이 가능한 산업체는 응당 관련된 물 오염사고 응급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응급준비를 끝내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성 화학제품을 생산·저장하는 산업체는 응당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생산사고 처리 중에 발생된 심각한 물 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소방폐수와 폐기 액체가 직접 수역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 78 조

기업·산업체에 사고 또는 기타 긴급사고가 발생하여 물 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이미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응당 즉시 본 산업체의 응급방안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조치를 취하고, 물 오염물질 수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발생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혹은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보고 받은 후, 응당 즉시 이를 본(本)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관련 부문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어업오염사고 혹은 어업선박으로 인해 물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 사고발생지의 어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기타 선박으로 인해 발생한 물 오염사고는 응당 사고발생지의 해사(海事)관리 기구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받아야 한다. 어업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해사(海事)관리 기구는 응당 어업주관부분에 통지하여 조사처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 79 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응당 식수안전 긴급사건에 대한 응급 예방책을 편성해야 한다.
식수공급업체는 응당 소재지의 식수 안전 긴급사건에 대한 응급 예방책에 따라 긴급사건과 상응하는 응급 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이를 소재지의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진행해야 한다.

식수원에 물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식수원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긴급사건, 식수공급업체는 응당 응급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재지 시,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아울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는 응당 그 상황에 따라 즉시 응급예방책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급수 안전을 보장한다.

제 7 장 법적책임

제 80 조

환경보호주관부문이나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법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허가를 하거나 허가서류를 처리하는 경우, 위법행위를 발견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후 조사·처리 받지 않은 경우, 혹은 기타 본 법에 의거하지 않고 직책을 이행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81 조

연기·봉쇄·체류 등 방식으로 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의 감사를 거절하고, 방해할 경우, 혹은 감사를 받을 때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기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리권을 행사하는 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2 조

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생산 중지를 명한다.

(1)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배출한 물 오염물질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측한 경우, 또는 원래 검측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물 오염물질 자동모니터링설비를 설치한 경우, 혹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연계한 감시제어설비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모니터링설비의 정상 운행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유해한 물 오염물질의 오염 배출구와 주변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았거나 유해한 물 오염물질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제 83 조

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을 제한하거나 정지를 명한다. 아울러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영업 정지·폐쇄를 명한다.
(1) 법에 의거하지 않고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여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2) 물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물 오염물질배출총량 규제지표를 초과하여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3) 간이 침투정 (滲井), 배수 구멍 (滲坑), 틈새 (裂隙) 및 종유동 (溶洞) 을 이용하여 사적으로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왜곡·위조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물 오염방지시설 등 감독 관리를 피하는 방식으로 물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4)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사전 처리를 진행하고, 오수집중처리시설에서 처리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공업폐수를 배출한 경우.

제 84 조

식수원 보호구역내에 오염물질 배출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생산 중지 후 정리를 명령할 수 있다.
상기 조항 외에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 배출구를 설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기한 내 철거하도록 명하고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하며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생산 중지 후 정리를 명령 할 수 있다.
수질행정 주관부문이나 유역관리기구의 허가 없이 하천, 호수에 배출구를 신설·재건·증축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수질행정 주관부문이나 유역관리기관은 직권과 상기조항에 의거하여 조취를 취하고 처벌한다.

제 85 조

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시키고, 기한 내 처리조치를 취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지정기한 만료 후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지정하고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

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1) 수역에 유류(油类), 산성 액체, 알칼리성 액체를 배출한 경우.
(2) 수역에 맹독성 폐기 액체나 수은, 카드뮴, 비소, 크롬, 납, 시안화물, 인 등을 함유한 수용성 유독 잔재를 배출, 투기 또는 직접 매립한 경우.
(3) 수역에서 유류(油类), 유독성 오염물질을 저장했던 차량이나 용기를 세척한 경우.
(4) 수역에 공업폐기물 잔재, 도시 쓰레기나 기타 폐기물을 배출, 투기하거나 하천, 호수, 운하, 수로, 저수지의 최고수위선보다 낮은 갯벌, 간석지 등에 고체폐기물 또는 기타 오염물질을 퇴적 또는 저장한 경우.
(5) 수역에 방사성 고체폐기물이나 고(高) 방사성, 중(中) 방사성 폐수를 배출 또는 투기한 경우.
(6) 국가의 관련 규정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수역에 저(低)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수, 온폐수 또는 병원체를 함유한 오수를 배출한 경우.
(7) 누출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정을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8) 주유소 등의 지하 오일 탱크에 이중 밀폐 탱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누출 방지등 기타 효율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혹은 누출 방지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9)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방호적인 조취를 취하거나 누출 방지 조치가 없는 수로, 저수지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거나 유독성 오염물질을 함유한 폐수 및 병원체를 함유한 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을 저장한 경우.
상기 조항 중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기 조항 중 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허가권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영업 정지·폐쇄를 명한다.

제 8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수입 혹은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한 심각한 수질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설비명부 중의 해당 설비를 끼워 넣어 사용한 경우, 혹은 차용 금지한 심각한 수질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기술명부의 해당 기술을 차용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5위안 이상 2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경제 종합 및 거시적 조정 주관부문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본(本)급 인민정부에 요청하여 영업 정지·폐쇄를 명한다.

제 87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산업정책에 어긋나는 소형제지 , 제혁 , 날염 , 염색 , 코크스 , 유황 정제 , 비소 정제 , 수은 정제 , 석유 정제 , 전기도장 , 농약 , 석면 , 시멘트 , 유리 , 강철 , 화력발전소 및 기타 수질환경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였을 경우 , 소재지의 시 , 현인민정부는 이를 폐쇄할 것을 명한다 .

제 88 조

도시오수집중처리시설의 운영업체 혹은 진창처리 · 처분업체 , 처리 · 처분 후의 진창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나 진창의 행방에 대하여 등 기록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 도시배수주관부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 경고를 준다 . 심각한 결과를 야기했을 경우 , 10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지정기한 만료 후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지정하고 대신 처리할 수 있으며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

제 89 조

선박이 상응하는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이고 , 유효한 수역환경 오염방지 증서 및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 해사관리기구 , 어업주관부문은 직책 업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 2,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지정기한 만료 후 시정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임시 운항정지를 명한다 .
선박이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 조작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경우 , 해사관리기구 , 어업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시정을 명하고 , 2,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90 조

본 법의 규정에서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 해사관리기구 , 어업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 1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물 오염을 발생시켰을 경우 , 기간 내에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하고 ,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지정기간 내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해사관리기구 , 어업주관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처리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할 수 있고 ,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법 선박이 부담한다 .
(1) 수역에 선박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선박의 잔유 (残油), 폐유를 배출한 경우 .
(2) 작업지의 해사관리기구 허가 없이 선박을 이용하여 벌크 (散装) 포장한 액체오염위해성

화물의 라이터링 (Lightering· 过驳) 작업을 진행한 경우
(3) 선박 및 관련 작업업체가 오염위험이 있는 작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 ,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 오염방지 조치를 취한 경우 .
(4) 충탄 (冲滩) 방식으로 선박 해체를 진행한 경우 .
(5) 중화인민공화국내 강에 진입한 국제선 선박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 (压载水 ·Ballast water) 를 배출한 경우 .

제 91 조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아울러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받고 , 철거 혹은 폐쇄를 명한다 .
(1) 식수원 1 급 보호구역내에 급수시설과 수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신설 · 재건 · 증축한 경우 .
(2) 식수원 2 급 보호구역내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설 · 재건 · 증축한 경우 .
(3) 식수원 필수 보호구역내에서 수역을 심각하게 오염하는 건설프로젝트를 신설 · 재건 · 증축하거나 건설 프로젝트 재건 시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 .
식수원 1 급 보호구역내에서 가두리 양식이나 관광 , 낚시 또는 기타 식수 수질을 오염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개인이 식수원 1 급 보호구내역에서 수영 , 낚시 또는 기타 식수 수질을 오염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종사한 경우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 5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92 조

식수급수업체의 식수 수질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소재지 시 , 현급 인민정부의 급수주관부문은 시정을 명하고 ,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고 , 영업 정지 · 정리를 명할 수 있다 . 직접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제 93 조

산업체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

부문은 시정을 명한다. 사건의 경위가 심각할 경우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해당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물 오염사고의 응급 방안을 제정한 경우.
(2) 물 오염사고 발생 후, 즉시 물 오염사고의 응급 방안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에 관련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 94 조

기업·사업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본 법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처리조치를 취하여 오염을 없애도록 명한다. 요건에 따라 처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처리능력을 갖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처리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처리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범법자가 부담한다. 중대한 물 오염사고는 허가권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폐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타 책임자는 지난해 해당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의 50%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제 63 조 규정의 위법 물 오염물배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집적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책임자에게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형을 명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일반적이거나 비교적 큰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물 오염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의 2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물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물 오염사고에 따른 직접 손실의 30% 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어업오염사고를 야기하였거나 어업선박으로 인한 물 오염사고는 어업주관부문이 처벌한다. 기타 선박으로 인한 물 오염사고는 해사관리기관에서 처벌한다.

제 95 조

기업·사업기관 기타생산업자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벌금형에 처해지고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처벌결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불법 물 오염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거나 재검사를 거절·방해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날짜에 맞춰 지속적으로 처벌한다.

제 96 조

물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오염물 배출 측에게 위험을 제거하고 손해배상을 요

구할 권리가 있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물 오염에 대해 오염물 배출측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가 고의로 야기한 물 오염의 피해손실에 관하여 오염물 배출측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물 오염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오염물 배출 측의 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3 자에 의해 물 오염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물배출 측이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 제 3 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97 조

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문이나 해사관리기관, 어업주관부문이 직책종류에 따라 중재하여 처리한다. 중재하지 못했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98 조

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오염물을 배출하는 측은 법률규정의 면책사유, 행위와 피해결과 사이의 존재하지 않는 인과관계에 대해 거증책임을 갖는다.

제 99 조

물 오염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들은 법에 의거하여 선발한 대표가 공동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해당 사회단체는 법에 의거하여 물 오염의 피해자들이 인민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서비스기관과 변호사가 물 오염피해소송의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 100 조

물 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배상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환경감독기관에 위탁하여 모니터링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위탁받은 환경감독기관은 사실과 부합하는 모니터링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1 조

본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다 .

제 8 장 부칙

제 102 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물 오염이란 특정 물질의 투입으로 인하여 수역에 화학적 , 물리적 , 생물학적 또는 방사성 등 변화가 발생해 물의 사용에 영향을 끼치고 인체건강을 해치거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수질악화를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2) 물 오염물질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역에 배출되어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가리킨다 .
(3) 독성오염물질이란 생물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해당 생물체 혹은 자손에게 발병 , 비상행위 , 유전자 변이 , 생리기능 상실 , 몸체변형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오염물질을 가리킨다 .
(4) 침적물이란 오수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반고체물질을 가리킨다 .
(5) 어업수역이란 지정 어패류의 산란장 , 먹이장 , 월동장 , 회유 통로 및 어패류 · 조류의 양식장을 가리킨다 .

제 103 조

본 법은 2008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2016 년 11 월 7 일 수정본

1995 년 10 월 30 일 제 8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 때 통과되었다. 2004 년 12 월 29 일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 때 수정되었다. 2013 년 6 월 29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 제 12 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1 차 수정되었다. 2015 년 4 월 24 일 제 12 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 14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港口) 법 > 제 7 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 차 수정되었다. 2016 년 11 월 7 일 주석회의 제 57 호《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 제 12 부 법률 수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되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인체의 건강 보장, 생태안전 유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적용한다.
고체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방지와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는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 고체폐기물의 합리적인 이용과 무공해 처리를 위한 원칙을 실시하여 생산과 순환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
국가는 고체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에 유익한 경제·기술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고체폐기물에 대해 충분한 회수와 합리적인 이용을 실시한다.
국가는 환경보호에 유익한 고체폐기물 집중 처리 조치를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해야 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익한 경제·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및 이에 관련 부문이 도농건설, 토지이용, 지역개발, 산업발전 등의 계획을 편성할 경우, 응당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 감소를 총괄적으로 감독하여 고려해야 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적인 이용과 무공해 처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 오염자(污染者)법적책임 원칙을 실시한다.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수입자·사용자는 제품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오염방지 책임을 진다.

제 6 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적인 방지기술의 확대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의 과학지식 보급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고체폐기물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한경보호에 유익한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끌어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업체와 개인이 재생품과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작업 및 이와 관련된 종합이용활동 중 뚜렷한 성과를 낸 업체와 개인에 대해 장려를 한다.

제 9 조

모든 업체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고체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 고발과 고소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전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작업에 대해 동일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감독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고체폐기물환경 오염방지 작업에 대해 동일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련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의 감독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은 생활 쓰레기 청소·수거·저장·운송과 처리 등의 감독 관리 작업을 책임진다.

제 2 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감독과 관리

제 11 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의 관련행정주관부문을 회동하여 국가 환경품질표준과 국가경제·기술 조건에 근거해서 국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 12 조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고체폐기물환경오염검측제도를 수립하고 동일한 감독관리 규범을 제정한다. 아울러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검측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대·중 도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정기적으로 고체폐기물의 종류·발생량·처리상황 등의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제 13 조

고체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프로젝트의 건설 및 고체폐기물의 저장·이용·처리 프로젝트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 관련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 건설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체공정과 동시에 설계·시공·생산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시설은 반드시 원래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 비준한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을 통해 검수받고 합격한 후에야 건설프로젝트가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검수는 응당 주체공정의 검수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작업 감독관리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의거하여 관할범위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피검사 업체는 응당 사실과 같게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응당 피검사 업체의 기술상의 기밀과 업무상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기관이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현장검측, 샘플 채집,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 혹은 복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인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할 경우, 응당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제 3 장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제 1 절 일반규정

제 16 조

고체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업체와 개인은 응당 조치를 취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고체폐기물을 방지 혹은 저감해야 한다.

제 17 조

고체폐기물을 수거·저장·운송·이용·처리하는 업체와 개인은 반드시 고체폐기물 분산·유실·누출 방지 혹은 기타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단적으로 고체폐기물을 무단투기, 노적(堆放), 방기(丢弃), 내버려서는 안 된다.
어떠한 업체나 개인도 고체폐기물을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저수지 및 기타 고(高)수위선 이하의 사주(滩地), 기슭 등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고체 폐기물을 버리거나 쌓아 두

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에 무단 투기 , 노적 (堆放) 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18 조

제품과 포장 재료의 설계 · 제조는 응당 국가 청정생산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국무원표준화행정주관부문은 응당 국가경제와 기술조건 , 고체 폐기물환경오염 방지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건에 근거하여 관련 표준을 제정하고 ,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
법에 의거한 강제회수 목록에 포함된 제품과 포장 재료를 생산 · 판매 · 수입한 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제품과 포장 재료를 회수해야 한다 .

제 19 조

국가는 과학 연구 · 생산 업체가 재활용과 처리가 편하거나 환경에 분해될 수 있는 비닐 커버와 상품 포장 재료를 연구 , 생산하는 것을 장려한다 .
농업용 비닐을 사용하는 업체와 개인은 응당 재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여 , 농업용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또는 감소해야한다 .

제 20 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경우 응당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양식과정 중에서 발생한 가축의 분뇨를 수거 · 저장 · 이용하거나 처리하여 ,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인구밀집지역 · 공항 주변 · 교통간선부근 및 현지 인민정부가 획정한 구역의 옥외에서 볏짚을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 21 조

고체폐기물을 수거 · 저장 · 운송 · 처리하는 시설 · 설비와 장소는 응당 관리와 유지를 강화하여 , 시설 · 설비와 장소의 정상적인 운행과 사용을 보증해야 한다 .

제 22 조

국무원과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 ,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획정한 자연보호구역 , 풍경명승지 , 식수원보호구역 , 기본농경지 보호구역과 기타 특별보호구역내에 공업 고체폐기물을 집중 저장 , 처리하는 시설 · 장소와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건설을 금지한다 .

제 23 조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 밖으로 옮겨서 저장·처리하는 경우 응당 고치폐기물을 반출하려는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고체폐기물을 반출하는 지역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반출한 것을 받아야 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지역에 반출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출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무단투기·노적(堆放)·처리 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25 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무공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폐기물에 대해 수입 제한과 비제한 수입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 관세청, 국무원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을 회동하여 제정·조정하고 아울러 수입·수입제한·비제한 수입을 금지한 고체폐기물 목록을 발표한다.

수입금지목록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입제한목록에 포함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경우, 응당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이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을 회동하여 허가를 심사 한다.

수입한 고체폐기물은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해야 하고, 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 검사에서 합격해야 한다.

수입한 고체폐기물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국무원대외무역주관부문,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 관세청, 국무원품질감독검험검역부문을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 26 조

수입자가 세관에서 본인이 수입한 화물을 고체폐기물관리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 절 공업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제 27 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과 기타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공업고체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범주를 결정하여,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그리고 선진적인 고체폐기물환경오염 방지 생산기술과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은 응당 국무원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을 줄이는 생산기술과 설비를 연구·개발·확대해야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낙후된 고체폐기물 생산기술과 설비의 명부를 발표하여 기간 내 도태해야 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규정한 전항 규정 명부에 포함된 설비를 기간 내에 분류하여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산 기술을 채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규정한 전항 규정 명부에 포함된 기술을 기간 내에 채용 중지해야한다.
기간 내 도태해야 하는 명부에 포함된 도태한 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부문은 응당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작업규획(规划)을 제정하여, 공업 고체 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적인 생산 기술과 설비를 확대 보급하고, 공업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 30 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업체는 응당 환경오염방지 책임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1 조

기업·사업업체는 응당 원자재, 에너지와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해야 하며,

선진적은 생산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공업 고체폐기물의 위해성을 감소해야 한다.

제 32 조

국가는 공업고체폐기물 신고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업체는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공업 고체폐기물의 종류·발생량·이동방향·저장·처리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응당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기업·사업업체는 응당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기업·사업업체에서 발생한 공업 고체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잠시 이용 하지 않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저장시설·장소를 건설해야 하고, 안전하게 분류하여 보관하거나 무공해 처리 조치를 채용해야한다.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장소를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34 조

공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쇄, 방치 또는 철거가 확실히 필요한 경우, 반드시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5 조

공업고체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업체가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응당 국가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공업 고체폐기물과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장소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를 진행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시설·장소의 안전 운행을 보증해야 한다. 변화 이전의 당사자가 공업 고체폐기물과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장소의 오염방지 책임에 대해 다른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단, 당사자의 오염방지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중지된 업체가 아직 처리하지 않은 공업 고체폐기물과

공업 고체폐기물 저장, 처리 시설·장소의 안전처리 진행비용에 대해 관련 인민정부에서 부담한다. 단, 업체가 가진 토지사용권을 법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응당 토지사용권을 받은 사람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약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단, 당사자의 오염방지 의무를 면제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광산기업은 응당 과학적인 채굴방법과 선광(選鑛)기술을 채용하여, 미광(尾鑛), 버력, 폐석 등 광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과 저장량을 줄여야 한다.
미광(尾鑛), 버력, 폐석 등 광업 고체폐기물의 저장시설 사용을 중지한 경우, 광산기업은 응당 국가 관련 환경보호 규정에 따라 저장 시설을 봉쇄 하고,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제 37 조

폐 가전제품, 폐 자동차 및 폐 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할 경우, 응당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3 절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제 38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응당 도농의 생활 쓰레기 수거·운송·처리 시설을 안배하여 건설해야 하고, 생활 쓰레기의 이용률과 무공해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의 산업화 발전을 촉진하여, 생활 쓰레기 환경오염 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제 39 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은 응당 도시생활쓰레기에 대해 청소, 수거, 운송과 처리를 진행해야 하고, 입찰 등의 방식을 통해 조건을 갖춘 업체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거, 운송과 처리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 40 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점에 방치해야 한다.

아무데나 무단투기를 하거나 뿌리고, 쌓아두어선 안 된다.

제 41 조

도시생활쓰레기를 청소, 수거, 운송, 처리할 경우, 국가 관련 환경보호와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42 조

도시생활쓰레기는 응당 제때 깨끗이 치우고 운반해야 하며, 분류 수거하고 운송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고, 무공해 처리를 실시해야한다.

제 43 조

도시인민정부는 응당 계획적으로 지역의 연료구조를 개선해야 하고, 도시가스·천연가스·액화가스와 기타 청정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부문은 응당 야채를 깨끗이 씻어 도시로 반입하게 하여, 도시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도시 인민정부 관련부문은 응당 구입 서비스망을 규획(规划)하고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생활 쓰레기의 재활용 작업을 촉진해야 한다.

제 44 조

생활쓰레기처리시설·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과 국무원건설행정 주관부문이 규정한 환경보호와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쇄, 방치 또는 철거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의 시, 현급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이 소재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상의하여 허락을 받은 후, 심사 비준하여 조치를 취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 45 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반드시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또는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건축시공업체는 응당 제때 건축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제때 깨끗이 씻어 운송해야 하고,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이용 혹은 처리해야 한다.

제 47 조

대중교통운송에 종사하는 운영업체는 응당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청소, 수거해야 한다.

제 48 조

도시의 새로운 구역 개발, 구(舊)도시의 개축과 주택단지 개발건설에 종사하는 기관 및 공항·부두·정거장·공원·상점 등의 공공시설·장소의 운영관리 업체는 응당 국가 관련 환경위생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수거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49 조

농촌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법규에서 규정한다.

제 4 장 위험폐기물환경오염방지의 특별 규정

제 50 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 51 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국무원 관련부문을 회동하여 국가 위험폐기물 명부를 제정하고, 동일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감별방법과 식별표지를 규정해야 한다.

제 52 조

위험폐기물의 용기와 포장재료 및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운송·처리하는 시설·장소에는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 53 조

위험폐기물이 발생한 업체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제정하고,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위험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이동방향·저장·처리 등 관련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전항에 명시된 이른바 위험폐기물관리 계획은 응당 위험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 저감 조치 및 위험폐기물 저장·이용·처리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위험폐기물관리계획은 응당 위험폐기물을 발생시킨 업체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한 보고사항 또는 위험 폐기물관리 계획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응당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54 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을 회동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의 건설규획(規划)을 편성하고 국무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응당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의 건설규획(規划)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를 건설해야 한다.

제 55 조

위험폐기물이 발생한 업체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무단투기하거나 쌓아서는 안 된다. 처리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기한 내 수정할 것을 명한다. 지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처리한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업체를 지정하여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대신 처리하게 하고, 처리비용은 위험폐기물이 발생한 업체에서 부담하게 한다.

제 56 조

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 처리한 것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응당 위험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비용의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위험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비용은 환경오염방지에 사용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57 조

위험폐기물 수거·저장·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한 업체는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이용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한 업체는 반드시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하여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 폐기물을 수거·저장·이용·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영허가증이 없는 업체가 위험 폐기물을 제공 또는 위탁하여 수거·저장·이용·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8 조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할 경우, 반드시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진행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수거·저장·운송하거나 상호간 부적합한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위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저장할 경우,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저장 기간은 1 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처음 경영허가증을 허가받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 허가받아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59 조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옮겨야 할 경우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절취전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아울러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어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경우, 응당 위험폐기물을 반출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한다. 위험 폐기물을 반출하는 성, 자치구, 지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위험 폐기물을 받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상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에야 위험 폐기물을 옮길 수 있다. 허가 없이 옮겨서는 안 된다.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경로가 반출 하고, 반출 받는 지역 이외의 행정구역일 경우, 위험 폐기물을 반출하는 시관할구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제때 경로를 끼고 있는 시관할구역의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 60 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경우 반드시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고, 아울러 국가의 위험화물운송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61 조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운송하는 장소·시설·설비와 용기, 포장 재료 및 기타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반드시 오염제거 처리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62 조

위험폐기물을 발생·수거·저장·운송·처리하는 업체는 응당 돌발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와 응급대비 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응당 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63 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위험폐기물이 생기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체는 반드시 제때 환경오염의 폐해를 제거 또는 감경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제때 오염의 폐해를 입을 수 있는 업체와 주민에게 통보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과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64 조

위험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폐기물이 주민의 생명재산안전에 위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 관리부문은 반드시 제때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를 감경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채용해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의 작업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65 조

중점 위험폐기물처리시설·장소의 폐쇄비용은 응당 사전에 제시하여 투자 개산(概算) 또는

경영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출,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과 가격주관부문이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을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 66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옮기는 것을 금지한다.

제 5 장 법률책임

제 6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 관리부문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행정주관부문에서 수정을 명한다.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받는다. 범죄가 성립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1) 법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 허가를 하거나 허가문서를 처리한 경우.
(2)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후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법에 의거하지 않고 감독 관리 직책을 이행한 기타 행위가 있을 경우.

제 6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서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기간 내 수정을 명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1)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공업 고체폐기물을 보고하여 등록하거나 보고하여 등록할 때 허위로 날조한 경우.
(2)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공업고체폐기물에 대해 안전하게 분류, 보관하는 보관시설·장소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무공해 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기간 내 도태해야하는 명부에 포함된 도태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4) 공업고체폐기물 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5) 자연보호구역, 풍경명승지, 식수원보호구역, 기본농경지보호구역과 기타 특별보호구역 내에 공업 고체폐기물 집중저장·처리 시설·장소와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6) 고체폐기물을 독단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밖으로 이동하여 저장, 처리한 경우.
(7) 상응하는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의 분산, 유실, 누출 방지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
(8)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 (丢弃), 흘려버린 경우 .
상기 조항의 (1), (8)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조항의 (2), (3), (4), (5), (6), (7)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6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 건설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체폐기물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건설하지 않거나 , 검수 받지 않고 , 혹은 검수에 합격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체공정이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문서를 심사 비준하는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고 ,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 70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혹은 기타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 감독 관리부문의 현장검사를 거절할 경우 , 현장검사 집행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한다 . 수정을 거부하거나 검사 허위로 날조한 경우 2,000 위안 이상 2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71 조

대규모 가축 양식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 가축의 분뇨를 수거 · 저장 ·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7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 도태한 설비를 생산 · 판매 · 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도태된 생산 기술을 채용한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서는 수정을 명한다 . 상황이 심각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경제종합거시조정부문에서 의견을 건의하고 ,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영업 정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

제 73 조

미광 (尾鑛), 버력 , 폐석 등 광업 고체폐기물저장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 국가관련 환경

보호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저장 시설의 폐쇄를 진행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 부문에서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5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74 조

본 법의 도시생활쓰레기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은 위법행위 중지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생활쓰레기를 아무데나 무단투기를 하고, 뿌리고, 쌓아둔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장소를 독단 적으로 폐쇄, 방치 또는 철거한 경우.
(3) 건설시공업체가 시공 과정 중 발생한 고체 폐기물을 제때 깨끗이 씻어 운송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4) 건설시공업체가 환경위생행정주관부문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한 고체 폐기물에 대해 이용 또는 처리를 진행한 경우.
(5)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丢弃), 흘려버린 경우.
업체가 상기 조항의 (1), (3),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5,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 조항의 (2), (4)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인이 상기 조항의 (1), (5)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2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5 조

본 법의 위험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 위험폐기물의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 폐기물을 보고하여 등록하거나, 보고하여 등록할 때 허위로 날조한 경우.
(3)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장소를 독단적으로 폐쇄, 방치, 철거한 경우.
(4)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비용을 납부한 경우.
(5) 위험폐기물을 경영 허가증이 없는 회사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영업활동에 종사한 경우.
(6) 국가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위험폐기물 이동절취전표에 기입하거나 허가 없이 독단적으로 위험 폐기물을 옮긴 경우.
(7) 위험폐기물을 비(非) 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한 경우
(8) 위험 폐기물을 안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상호간 부적합한 성질을 갖는 위험폐기물을 혼

합하여 수거 · 저장 · 운송 또는 처리한 경우 .
(9) 위험폐기물을 여객과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운반한 경우 .
(10) 오염제거 처리를 하지 않고 , 위험폐기물을 수거 · 저장 · 운송 · 처리하는 장소 , 시설 , 설비와 용기 , 포장재료 및 기타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11) 상응하는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업 고체폐기물의 분산 , 유실 , 누출 방지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경우 .
(12) 운송과정 중 길가에 공업고체폐기물을 방기 (丢弃), 흘려버린 경우 .
(13) 위험폐기물 돌발사고 방지조치나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조항의 (1), (2), (7), (8), (9), (10), (11), (12), (13)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 10,000 위안 이상 1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조항의 (3), (5), (6) 행위 중 하나를 행할 경우 2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기 조항의 (4) 행위를 행할 경우 기간 내 납부하고 , 지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응당 납부해야 할 위험폐기물 오염물질배출비용에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

제 7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 위험 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사람이 발생시킨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 법에 의거하여 응당 부담해야 하는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기간 내 수정을 명하고 , 대리처리비용의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제 77 조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 위험폐기물을 수거 · 저장 · 이용 · 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문에서 위법행위 중지를 명하고 , 법을 위반하여 얻은 모든 소득을 몰수한다 . 아울러 법을 위반하여 얻은 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경영허가증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상기 조항에 기재된 활동에 종사한 경우 , 증서발급기관에서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제 7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경내로 반입하여 무단 투기하거나 쌓아놓고 , 처리한 경우 , 수입이 금지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할 경우 , 세관에서 그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명하고, 100,000 위안 이상 1,0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수입자가 불분명 할 경우, 그 고체폐기물을 운송한 자가 고체폐기물의 반송을 책임지거나 고체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세관의 감독을 피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경내로 반입하고, 이에 대한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 7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거쳐 위험폐기물을 옮긴 경우 세관에서 그 위험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000 위안 이상 5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80 조 불법으로 국경 내에 반입한 고체폐기물에 대해,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처리의견을 건의하고, 세관은 응당 본 법 제 78 조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수입자에게 오염을 제거할 것을 명한다.

제 81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의거하여 기간내 처리를 명한다. 지정 기간 내에 처리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에서 영업 중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제 8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은 20,000 위안 이상 20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직접적으로 손실된 금액의 30% 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되 1,000,000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고체폐기물로 인해 중대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결정한다.

제 83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을 수거·저장·이용·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 84 조 고체폐기물 오염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업체와 개인은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환경보호행정주관부문 또는 기

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작업 감독 관리부문에서 처리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는 법률서비스기구가 고체 폐기물의 환경오염 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85 조

고체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응당 위해를 제거하고, 법에 의거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조치를 취해 환경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제 86 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인 경우, 가해자는 법률이 규정한 면책 사유 및 그에 관한 행위와 손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 87 조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환경검측 기구가 검측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그에 관해 환경검측 기구는 응당 위탁을 받아들여야 하며, 관련된 검측 데이터를 사실과 맞게 제공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88 조

본 법에 나오는 아래 용어의 개념을 열거한다.
(1) " 고체폐기물 " 은 생산이나 생활과 기타 활동 중에 발생한 원래의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방치되고, 버려진 고체상태 · 반고체상태와 용기 중에 포함된 기체상태의 물품 · 물질 및 법률 · 행정법규 · 규정에서 고체폐기물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물품 · 물질을 일컫는다.
(2) " 공업고체폐기물"은 공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한 고체폐기물을 일컫는다.
(3) " 생활쓰레기 " 는 일상생활 중에서나 혹은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 발생한 고체폐기물 및 법률 · 행정법규 · 규정에서 생활 쓰레기로 보는 고체폐기물을 일컫는다.

(4) " 위험폐기물 " 은 국가위험폐기물명부에 포함되거나 국가가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위험특성을 가진 고체폐기물을 일컫는다 .
(5) " 저장 " 은 고체폐기물을 임시로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놓는 활동을 일컫는다 .
(6) " 처리 " 는 고체폐기물의 소각과 고체폐기물의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특성을 다르게 바꾸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미 발생된 고체폐기물의 수량을 감소시키거나 고체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 그 위해성분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 , 또는 고체폐기물을 환경보호를 위한 규정 요건에 부합하는 매립장에 최종적으로 놓는 활동을 일컫는다 .
(7) " 이용 " 은 고체폐기물로부터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

제 89 조

액체상태의 폐기물의 오염방지에 본 법을 적용한다 . 단 , 물에 흘러들어간 폐수의 오염방지는 그에 관해 해당되는 법률을 적용하고 ,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 9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혹은 참가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관련된 국제조약과 본 법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단 ,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약을 보류하는 것을 상명하는 건 제외한다 .

제 91 조

본 법은 200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2018 년 8 월 31 일 제 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1 장 총칙

제 1 조

환경 보호와 개선 , 토양 오염 방지 , 농산물 품질안전과 대중의 건강 보장 , 토양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조장 , 생태문명의 건설 추진 ,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기타 관할해역 내 토양오염방지와 감독·관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
본 법에서 말하는 토양오염은 인위적인 요소 때문에 어떠한 물질이 토양에 침투되어 토양의 화학 , 물리 , 생물 등 방면에서 변화를 일으켜 토양기능과 효과적인 이용에 영향을 끼치고 대중건강과 생태안전을 위협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

제 3 조

토양오염의 방지는 예방을 위주로 하되 , 보호를 우선적으로 하고 분류 관리 , 위험 통제 , 오염에 대한 책임 , 대중의 참여를 견지해야 한다 .

제 4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토양을 보호와 토양오염 방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 .
토지 사용권자가 토지개발이용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생산경영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절감해야 한다 .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5 조

지방의 각 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토양오염방지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가는 토양오염방지목표책임제와 심사평가제도를 실시하고 토양오염방지 목표달성상황을 지방의 각 급 인민정부 및 책임자,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에서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의 책임이 있는 부문과 그 책임자의 심사평가 내용으로 삼는다.

제 6 조

각 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문의 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을 이행하도록 조직, 협조, 독촉한다.

제 7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전국토양오염방지업무에 대해 동일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농업, 국토자원, 주방도시농촌건설, 임업 등 기타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방지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토양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동일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농업, 국토자원, 주방도시농촌건설, 임업 등 기타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방지 업무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8 조

국가는 토양환경정보 공유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은 국무원농업농촌, 자연자원, 주택도시건설, 수리(水利), 건강위생, 임업초원 등 주관부문과 함께 토양환경 기초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하고 전국토양환경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동적데이터 업데이트와 정보공유를 실시한다.

제 9 조

국가는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모니터링 등 오염방지 과학기술 연구의 개발, 성과전환과 이용보급을 지지하고 토양오염방지의 산업발전을 장려하여 토양오염방지 과학기술의 진보를 촉진한다.
국가는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지지한다.

제 10 조

각 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문과 대중매체는 토양오염방지 홍보교육과 과학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며 대중의 토양오염방지에 대한 의식을 제고시킨다. 대중이 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방지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제 2 장 규획, 기준,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제 11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업무를 환경보호 규획, 대중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市)관할구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문은 발전개혁, 농업, 국토자원, 주방도시농촌건설, 임업 등 주관부문과 함께 환경보호규획요건, 토지용도,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와 모니터링결과에 근거하여 토양오염 방지규획을 작성하고 본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를 발표한다.

제 12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토양오염의 상황, 대중의 건강 위험, 생태계의 위험과 과학기술 수준, 토지용도에 근거하여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하고 토양오염방지기준체계를 수립한다.
성급 인민정부는 국가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의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 중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국가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보다 엄격한 지방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 토양오염 위험관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은 강제성 기준이다.
국가는 토양의 환경 바탕준위(环境背景值)와 환경기준에 대한 연구를 지지한다.

제 13 조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제정할 경우, 전문가를 구성하여 심사와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부문, 업계협회, 기업·사업기관과 일반 대중 등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의 집행상황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평가 결과에 근거

하여 기준을 즉시 수정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 사이트에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발표하고 대중에게 무료 열람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의 농업, 국토자원, 주방도시농촌건설, 임업 등 주관부문과 함께 10 년마다 최소 1 번씩 전국토양오염상황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
국무원 관련부문과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해당 업계, 해당 행정 구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날을 지정하여 일부 지역의 토양오염상황의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제 15 조

국가는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의 농업, 국토자원, 주방도시농촌건설, 임업, 수질행정, 위생 등 주관부문과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 토양오염상황 검측소(지점)의 설치를 통일적으로 규획한다.

제 16 조

지방 인민정부농업농촌, 임업초원부문은 생태환경, 자연자원주관부문과 함께 아래에 열거된 농경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오염물기준을 초과하는 농산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이전 혹은 현재 오수관개구역
(3) 큰 규모의 양식장, 고체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쌓아 놓는데 사용된 경우
(4) 공업광업용지 혹은 중대한 오염사고가 발생했던 곳
(5) 유독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생산, 저장, 이용, 처리시설주변
(6) 국무원 농업농촌, 임업초원, 생태환경, 자연자원주관부문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7 조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자연자원주관부문과 함께 아래 열거된 건설용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이전에 유독유해물질을 생산, 사용, 저장, 회수, 처리한 경우
(2) 고체폐기물을 쌓아 두거나 매립하는데 사용된 경우
(3) 이전에 중대한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국무원 생태환경, 자연자원주관부문이 함께 규정한 기타 상황

제 3 장 예방과 보호

제 18 조

각종 토지 이용 규획과 연관되고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설프로젝트는 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문건에 토양에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과 취해야 하는 예방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9 조

유독유해물질을 생산, 사용, 저장, 운송, 회수, 처리, 배출하는 업체와 개인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독유해물질의 누수, 유실, 확산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을 막아야 한다.

제 20 조

국무원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무원 위생건강 등 부문과 함께 대중의 건강과 생태환경의 위험과 영향 정도에 따라 토양에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세밀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토양유해물질목록을 사회에 발표하고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21 조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유독유해물질 배출 등 상황을 근거로 해당 행정구역 토양오염 중점 감독관리업체 목록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하고 즉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토양오염 중점관리 감독 업체는 아래 열거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유해물질의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매년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따라
(2) 토양오염 위험조짐 조사제도를 수립하고 유독유해물질의 누수, 유실, 확산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지를 보장한다.
(3) 자체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전항(前項) 규정의 의무는 배출허가증에 명기해야 한다.
토양오염을 중점적으로 감시·관리하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토양오염을 중점적으로 감시·관리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중점 관리·감독업체와 주변 토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 22 조

기업·사업기관은 철거된 시설 , 설비 혹은 건축물 , 구조물에 대해 토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토양오염 중점관리·감독 업체는 비상조치를 포함한 토양오염방지 업무방안을 제정해야 하고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실시한다 .

제 23 조

각 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 자연자원 주관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광산자원 개발구역에 대한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관련된 기준과 총량 규제요건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점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
폐석 (廢石) 저장탱크를 운영 , 관리하는 업체는 관련규정에 따라 폐석 (廢石) 저장탱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강화해야 하며 , 조치를 취해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위험 저장탱크 , 중점 감시 · 관리가 필요한 폐석 (廢石) 저장탱크를 운영 , 관리하는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

제 24 조

국가는 건축 , 통신 , 전력 , 교통 , 수리 등 영역의 정보 , 인터넷 , 피뢰 , 접지 등 건설공정 중 새로운 기술을 채용하여 ,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장려한다 .
토양에서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제 25 조

오수집중처리 시설 , 고체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운행은 법률법규와 해당 기준의 요건에 따라 토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오수집중처리시설 , 고체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토양 오염에 대해 모니터링 , 평가해야 한다 . 법률 · 법규와 관련된 기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 평가결과에 따라 오수집중처리시설과 고체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총괄적으로 도시농촌생활의 오수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규획하고 건설한다 . 아울러 도시농촌생활 오수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하고 ,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

제 26 조

국무원의 농업, 임업 주관부문은 규획을 제정해야 하며, 기준과 기타 관련된 조치를 보완하고, 농경지의 농약, 화학비료 사용 총량 규제와 농업용 필름 사용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문은 농약, 화학비료 등록과 사용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농약, 화학비료가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전개해야 한다.
농약, 가축의 질병 치료에 쓰는 약, 비료, 사료 농업용 필름 등 농업에 투입되는 각종 물질적 생산자료 및 그 생산자료의 포장재료 기준과 농경지 관개용 물의 수질기준을 제정할 경우, 토양오염방지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제 27 조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농촌, 임업초원주관부문은 농경지의 토양오염방지홍보와 기술을 양성하는 업무를 전개해야 하며, 농업 생산 전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고, 농업생산자가 농약, 가축의 질병 치료에 쓰는 약, 비료, 사료, 농업용 필름 등 농업에 투입되는 각종 생산자료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 가축의 질병 치료에 쓰는 약, 비료 등 사용량을 규제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의 농업농촌, 임업초원주관부문은 농업생산자가 토양오염에 유익한 식물을 기르거나 가축을 키우는 것을 결합하고, 윤작·휴경하는 등의 경작농업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한다. 토양 개량, 토양의 비옥도 진급 등 토양 양생과 재배에 유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원한다.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고 이용하는 시설의 건설을 지지한다.

제 28 조

농경지에 중금속 혹은 기타 유독유해물질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오수, 침전물, 토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토사 침전물(清淤底泥), 폐석(廢石), 광재 등을 배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부문은 축의 분뇨, 생물 가스의 침전물, 생물 가스 액체 등의 수거, 저장, 이용 혹은 처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토양오염을 방지한다.
농경지 관개용 물은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토양, 지하수, 농산물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농업농촌, 수리(水利)주관부문과 함께 농경지 관개용 물의 수질관리를 강화 해야 하고 농경지 관개용 물의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과 감독·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는 농업생산자가 아래 열거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1) 독성이 경미하고, 잔류 정도가 낮은 농약, 선진비료살포기술을 사용한다.

(2) 기준에 부합하는 유기비료와 고효율 비료를 사용한다.
(3) 측정한 땅에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비료를 주는 기술, 생물 방지 등 병충해 녹색 통제기술을 채용한다,
(4) 생물이 분해할 수 있는 농업용 필름을 사용한다.
(5) 짚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거나 오염물질이 매우 농축된 짚을 이출한다.
(6) 관련 규정에 따라 산성 토양 등에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제 30 조

국가가 금지를 명령한 농업 생산자료의 생산,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농업에 투입되는 각종 물질적 생산자료 생산자, 판매자와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등 농업에 투입되는 물질적 생산자료를 회수하는 폐기고의 포장재료와 농업용 필름을 즉시 회수해야 하고, 아울러 농약 폐기고의 포장재료를 전문적인 기구에 맡기거나 무공해처리를 진행한다. 자세한 방법은 국무원 농업농촌주관부문과 국무원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국가는 업체와 개인이 농업에 투입되는 각종 물질적 생산자료의 포장폐기물과 농업용 필름을 회수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한다.

제 31 조

국가는 오염되지 않은 토양의 보호를 강화한다.
지방 각 급 인민정보는 중점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작지, 임지, 초원과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
각 급 인민정부는 국가공원 등 토양오염방지 업무를 강화하여, 생태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보호해야 하고, 오염시키거나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에 관련된 부문은 토지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규획과 도시농촌 규획에 의거하여 관련업계·기업이 안배한 부지 선정 요건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주택단지와 학교, 병원, 요양원, 양로원 등 업체 주변에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건축 프로젝트를 신축·개축·증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3 조

국가는 토양자원에 대해 보호와 합리적인 이용을 강화해야 한다. 건설 개발 과정 중 분리된

표토는 단독으로 수거하고 보관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토지 재개간, 토양개량, 매립지와 녹화 등에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
중금속 혹은 기타 유해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들어있는 공업 고체폐기물, 생활쓰레기 혹은 오염된 토양을 간척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4 조

과학연구 등 특수원인으로 인해 토양을 수출입 해야 하는 경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장 위험관제와 복구

제 1 절 일반 규정

제 35 조

토양오염 위험관제와 복구는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 복구, 복구 효과에 대한 평가, 후기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제 36 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보고서는 토지의 기본정보, 오염물질 함유량이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에 초과하는지에 대한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오염물질 함유량이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보고서는 오염 유형과 오염의 출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 37 조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토양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서는 아래 열거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주요 오염물질 상황
(2)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범위
(3) 농산물 품질안전, 대중의 건강에 대한 영향 및 잠재적 위험
(4) 위험 관제, 복구의 목표와 기본요건 등

제 38 조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알맞게 제정해야 하며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위험관제와 복구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토양과 주변 환경에 새로운 오염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제 39 조

위험관제, 복구업무를 실시하기 전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토양오염책임자, 토지사용권자에게 오염원의 제거, 오염확산방지 등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0 조

위험관제, 복구업무 실시 중 발생하는 폐수, 배기가스, 고체폐기물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고 관련 환경보호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험관제, 복구업무 실시 중 발생하는 고체폐기물과 시설, 설비, 건축물, 구조물 철거에 속하는 위험폐기물은 법률법규와 관련기준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다.
복구시공기간은 게시판에 공지하여 관련상황과 환경보호 조치를 공개한다.

제 41 조

복구시공 업체는 오염토양을 운송할 경우 운송계획을 제정해야 하고 운송기간, 방식, 노선, 오염토양의 양, 행방, 최종처리조치 등을 소재지와 인계지역의 생태환경주관부문에 사전에 보고한다.
운송한 오염토양이 위험폐기물에 속하는 경우 복구시공업체는 법률법규와 관련기준의 요건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 42 조

위험관제 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업무를 실시하는 경우 효과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효과평가보고서는 주로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에서 정한 위험관제, 복구목표를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위험관제, 복구업무완료 후 후기관리를 실시할 경우 토양오염책임자는 요건데 따라 후기관리를 실시한다.

제 43 조

토지오염상황조사와 토지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 복구, 복구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위탁을 받아 상기 조항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조사보고서, 위험평가 보고서, 위험관제 효과평가보고서, 복구 효과평가 보고서에 대해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고 아울러 약정에 의거하여 위험관제, 복구, 후기관리 등의 업무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제 44 조

돌발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양오염의 경우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 관련 기업·사업기관, 기타 생산업자는 즉시 비상조치를 취해 토양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해당 법규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모니터링, 조사,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와 복구 등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 45 조

토양오염책임자는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에 대한 책임을 가질 의무가 있다. 토양오염책임자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토지사용권자는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한다.
국가는 관련당사자가 스스로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46 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 복구, 위험관제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 후기관리 등 업무 실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토양오염책임자가 부담한다.

제 47 조

토양오염책임자가 바뀐 경우 바뀐 후 채권, 채무를 받은 업체 혹은 개인이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한 의무가 있고 관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 48 조

토양오염책임자는 불확실하거나 혹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 농경지는 지방인민정부농업농촌, 임업초원주관분과 생태환경, 자연자원주관부문이 함께 정한다. 건설용지는 지방인민

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과 자연자원주관부문이 함께 정한다. 확정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과 관련부문이 함께 제정한다.

제 2 절 농경지

제 49 조

국가는 농경지분류관리제도를 수립한다. 오염 정도와 관련된 기준에 의거하여 농경지를 우선보호 유형, 안전이용 유형과 엄격하게 관제하는 유형으로 나눈다.

제 50 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유형의 경작지를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실시하는 기본농경지로 구획하여, 엄격하게 보호를 실시한다.
영구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실시하는 기본농경지 집중구역에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 이미 건설이 완료된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 기간 내 폐쇄, 철거해야 한다.

제 51 조

이용하지 않은 땅, 재간척한 토지를 경작지로 개간할 예정인 경우,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국토자원주관부문은 환경보호주관부문과 함께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 52 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상세조사와 모니터링, 현장검수에 나타난 토양오염위험농경지에 대해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임업초원 주관부문은 생태환경, 자연자원 주관부문과 함께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에 나타난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을 함유한 농경지에 대해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임업초원 주관부문은 생태환경, 자연자원 주관부문과 함께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농경지 분류관리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제 53 조

안전이용으로 분류된 농경지에 대해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임업초원 주관부문은 농작물품

종과 재배상황을 결합시켜 안전이용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안전이용방안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농기술 조정, 대체재배
(2) 정기적인 토양, 농산품 협동 모니터링과 평가 실시
(3) 농민, 농민전문협동조합, 기타농업생산업자주체에 대해 기술지도와 훈련 실시
(4) 기타 위험관제조치

제 54 조

엄격하게 관제하는 농경지에 대해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임업초원 주관부문은 아래 열거한 위험관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특정농산물 생산을 금지하는 구역을 획정하는 의견을 건의하고, 본 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한다.
(2) 규정에 따라 토양과 농산품의 협동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3) 농민, 농민전문협동조합, 기타농업생산업자주체에 대해 기술지도와 훈련 실시
(4) 기타위험관제조치
각 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엄격하게 관제하는 농경지에 대해 재배구조 조정, 경작지를 삼림으로 환원, 삼림 반환, 경작지 윤작 등 위험관제조치를 취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이끌어야 한다.

제 55 조

안전이용 유형과 엄격하게 관제하는 유형의 농경지가 토양오염영향 혹은 지하수, 식수원안전에 영향을 끼칠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농업농촌, 임업초원 등 주관부문과 함께 오염방지 방안을 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제 56 조

안전이용 유형과 엄격하게 관제하는 유형인 농경지에 대해 토지오염책임자는 국가 관련규정 및 위험평가 보고서에 있는 요구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위험관제조치를 취하여 정기적으로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초원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 57 조

생산해낸 농산물에 오염물질 함유량이 초과되어, 농경지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토양오염책임자는 복구방안을 작성하여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초원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고

실시해야 한다.
복구업무는 농업 생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토양의 생산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생물 복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하며, 오염물질이 식용 농작물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저감해야 하고 농산물의 품질 안전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위험관제, 복구업무 완료 후 토양책임자는 관련 업체의 위험관제효과, 복구효과에 대한 평가를 따로 이행해야 한다. 효과평가보고서를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 임업초원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농촌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농민전문협동조합, 기타농업생산업자주체 등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 3 절 건설용지

제 58 조

국가는 건설용지 토양오염 위험관제와 복구 목록 제도를 실시한다.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은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과 자연자원 등 주관부문이 함께 제정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사회에 공개하고 위험관제, 복구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업데이트 한다.

제 59 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상세조사, 모니터링,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토양오염위험 건설용지에 대해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토지사용권자에게 규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상황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앞의 두 조항 규정의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보고는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고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자연자원주관부문과 함께 평가한다.

제 60 조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보고평가에 나타난 오염물 함유량이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책임자, 토지사용권자는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토양오염위험평가 보고서를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한다.

제 61 조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자연자원 등 주관부문과 함께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

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서 평가에 대해 즉시 위험관제 복구의 실시가 필요한 토지를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에 추가시키고 정기적으로 국무원 생태환경 준관부문에 보고한다 .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에 있는 토지를 주택 , 공공관리와 공공서비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62 조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의 위험관제를 실시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책임자가 국가 관련규정과 위험평가 보고의 요건에 따라 위험관제 조치를 취하고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위험관제조치에는 지하수오염방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제 63 조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의 위험관제를 실시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현지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실제상황에 의거하여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구역의 거리를 규정하는 건의를 제시하고 해당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맡는 경우
(2) 토양오염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3)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제 64 조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 중 복구를 실시해야 하는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책임자는 전체 규획과 도시규획을 결합시켜 복구방안을 작성하여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등록하고 실시한다 . 복구방안에는 지하수 오염방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제 65 조

위험관제 , 복구업무 완료 후 토양오염책임자는 관련 업체에 위험관제효과 , 복구효과에 대해 따라 실시할 것을 위탁해야 한다 . 효과결과보고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

제 66 조

위험평가보고에서 정한 위험관제와 복구 목표를 충족시킨 건설용지의 토양오염 책임자는 성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에서 제거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국토자원 등 주관부문과 함께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가 필요한 토지를 건설용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목록에 추가시키고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에서 정한 위험관제와 복구목표에 달성하지 않은 건설용지에서 위험관제와 복구와 관련 없는 프로젝트를 실시할 수 없다.

제 67 조

토양오염중점 감독관리 업체의 생산경영용지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토지사용권을 회수, 양도하기 전에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보고는 부동산등기자료로서 지방 인민정부 부동산등기기구에 보내고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68 조 토지 사용권이 지방정부에 의해 회수되고 토양오염책임자가 원래 토지 사용권자인 경우 지방인민정부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를 실시한다.

제 5 장 보장과 감독

제 69 조

국가는 토양오염방지의 재정, 세금, 가격, 금융 등 경제에 유리한 정책과 조치를 취한다.

제 70 조

각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한 자금을 아래 열거된 사항에 사용해야 한다.
(1) 토양오염방지의 과학기술 연구, 시범공정과 프로젝트
(2) 각급인민정부가 실시하는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 모니터링과 토양오염책임자의 확정, 위험평가, 위험관제, 복구
(3) 각급인민정부의 토양오염 돌발사고에 대한 긴급처리
(4) 각급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사항
자금은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하고, 자금사용에 대한 효과와 이익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제 71 조

국가는 토양오염방지자금의 투입을 확대하고 토양오염방지기금제도를 수립한다. 국가는 토양오염방지 기금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중앙·성급 토양오염방지 기금의 설립은 주로 농경지 토양오염처리, 토양오염 책임자 혹은 토지 사용권자가 확정할 수 없는 토양오염처리, 정부가 규정한 사항에 사용된다.
본 법의 실시 이전에 발생한 상황과 토양오염책임자가 확정할 수 없는 오염토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자가 실제 위험관제와 복구를 부담하는 경우 토양오염방지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토양오염방지기금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주관부문과 국무원 환경보호, 농업, 국토자원, 주택도시건설, 임업 등 주관부문과 함께 제정한다.

제 72 조

국가는 금융기구가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프로젝트의 신용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관련금융기구가 토지담보업무를 시행할 때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한다.

제 73 조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의거하여 세금혜택을 받는다.

제 74 조

국가는 사회각계에 토양오염을 방지를 위한 기부재산을 장려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는다.

제 75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상황을 환경상황과 매년도 환경보호 목표달성 보고에 추가시키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76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은 해당부문과 함께 토양오염문제의 발생, 방지업무

의 허점, 대중의 반응이 격렬한 지역에 대해시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와 해당부문의 주요책임자와 회담을 진행한다. 회담상황은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77 조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환경집행기구, 토양오염방지감독관리직책에 책임이 있는 부문은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샘플채취를 실시할 권한이 있고 피검사자 혹은 업체에게 관련문건, 관련자료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피검사자는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부문, 기관, 인원은 피검사자의 상업적 기밀을 유지해준다.

제 78 조

기업·사업기관과 기타 생산업자가 법률법규규정을 위반하고 유독유해 물질을 배출하여 토양오염을 발생시키거나 토양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혹은 관련 증거를 소멸시키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토양오염 방지감독관리직책에 책임이 있는 부문은 해당 시설, 장비, 물품을 봉쇄시키고 압수할 수 있다.

제 79 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 부문은 폐석(廢石)저장탱크의 운영 및 관리업체가 법적 의무를 행하는지 감독하여 발생 토양오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은 폐석(廢石)오염방지상황조사와 정기적인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위험소지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해당 기업이 조치를 취하도록 재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사막, 간석지, 알칼리성 토지, 습지 등 미사용 토지에 불법으로 오염물과 유독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80 조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토양오염 방지감독관리직책에 책임이 있는 부문은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와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 복구, 복구효과평가 등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의 업무수행 상황을 신용기록을 작성하는 신용시스템에 추가시킨다. 또한 불법 사회신용정보문서를 전국신용정보 공유플랫폼과 국가기업신용정보게시 시스템에 추가시키고 사회에 공개한다.

제 81 조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토양오염 방지감독관리직책에 책임이 있는 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 관련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은 전국토양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다. 성급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토양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발표할 책임이 있다.
생태환경주관부문은 관련된 주요 식용농산물 생산구역의 중대한 토양환경 정보를 즉시 동급 농업농촌, 위생건강과 식품안전 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대중, 법인, 기타 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토양오염방지 정보를 얻고 토양오염방지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82 조

토양오염상황 조사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조사보고와 토양오염위험평가보고, 위험관제 효과평가보고, 복구효과평가보고 등 즉시 전국 토양환경정보 플랫폼에 업로드 해야 한다.

제 83 조

신문매체는 토양오염방지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여론조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감독을 받는 업체와 개인은 보복을 행할 수 없다.

제 84 조

모든 업체 혹은 개인은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에 보고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과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은 토양오염방지신고 방식을 사회에 공개해야 하고 대중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부문은 즉시 처리하고 신고자의 관련 정보를 비밀에 부쳐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하고 조사결과가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표창을 한다.
신고자가 신고한 업체는 계약서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없고 기타 방식으로 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법률책임

제 85 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이행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처분을 가한다.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내리지 않은 경우 상급 주관부문이 직접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 86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책임지고 시정을 명하고 벌금형에 처한다. 시정 명령을 거절한 경우 생산정지 명령을 내리고 처벌한다.
(1) 토양오염 중점관리 업체가 자동 모니터링 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혹은 모니터링 데이터를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토양오염중점 감독관리 업체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허위로 위조한 경우
(3) 토양오염중점 감독관리 업체가 매년 유독유해물질 배출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토양오염 위험조짐 조사제도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장비 또는 구조물, 건축물을 철거할 때 기업이 토양오염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토양오염중점관리 기업이 토양오염방지 업무방안을 제정하고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폐석(廢石) 저장탱크의 운영 및 관리 업체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6) 폐석(廢石) 저장탱크의 운영 및 관리 업체가 관련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7) 오수집중처리시설, 고체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운행에 있어 법률규정과 해당기준의 요건에 의거하지 않고 토양오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전항(前項) 규정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만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前項) 규정의 제 2 항, 제 4 항, 제 5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2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7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경지에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오수, 침전물,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토사 침전물(清淤底泥), 폐석(廢石) 등을 배출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200 만 위안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안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이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할 수 있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제 8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농업생산재료 생산업자, 판매자,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생산재료의 포장폐기물 혹은 농업용 필름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규정에 따라 농약포장폐기물을 즉시 회수하여 전문기구 혹은 조직에 맡겨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농업농촌주관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200 위안 이상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89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금속 혹은 기준을 초과하는 유독유해 물질을 함유한 공업고체폐기물과 생활쓰레기 혹은 오염토양을 간척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제 90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상황 전수조사와 토양오염위험평가, 위험관제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 등 업무를 진행하는 업체의 위탁을 받고 허위로 조사보고, 위험평가보고, 위험관제효과평가, 복구효과평가보고를 작성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이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위에 기록한 업무의 진행을 금지하고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업체가 허위로 보고를 작성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 년 내 전항 규정의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기구가 죄를 범한 경우 평생전항 규정의 업무를 실시 할 수 없다.

본 조항 제 1 조규정의 업체와 위탁인이 악의로 결탁하고 허위로 보고를 작성하여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위타인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다.

제 91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보호주관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1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으로 얻은 것은 모두 몰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1) 개발건설 중 깎인 표토를 단독으로 수집하고 저장하지 않은 경우
(2) 토양, 주변환경에 발생한 새로운 오염에 대해 위험관제, 복구업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오염토양 운송 시, 운송시간, 방식, 노선, 오염토양의 수, 행방, 최종처리조치 등을 사전에 소재지와 인계지역의 환경보호주관부문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위험평가보고에서 정한 토양오염위험관제, 복구 목표에 달성하지 않은 건설용지는 건설·위험관제, 복구와 관련이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 92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후기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5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3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피검사자가 검사를 거부할 경우 혹은 검사를 받는 동안 허위 행위를 행할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제 94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아래 열거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보호주관부문 혹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2 만 위안 이상 2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정을 거부할 경우 20 만 위안 이상 100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위탁을 받아 대신 이행할 경우 필요한 모든 비용은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부담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위안 이상 2 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1)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위험관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복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 위험관제, 복구업무 완료 후 관련업체에 따로 위탁하여 위험관제효과, 복구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전항(前項)의 제 3 항, 4 항의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 혹은 기타 토양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의 책임이 있는 부문은 안건을 공안기관에 송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제 95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관련부문이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1 만 위안 이상 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토양오염중점관리업체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 업무방안을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않은 경우
(2) 토양오염책임자 혹은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복구방안, 효과평가보고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농업, 임업초원 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토지사용권자가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상황조사보고를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에 보고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제 96 조

오염토양으로 인해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토양오염책임자를 정할 수 없고 토지사용권자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위험관제와 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입는 경우 법에 따라 권리침해에 대한책임을 묻는다.
토양오염으로 인해 권리침해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지방인민정부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7 조

오염토양으로 인해 사회공공이익에 피해를 입은 행위에 대해 관련 기관과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98 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치안관리 행위를 행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7 장 부칙

제 99 조

본 법은 201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自 2015 年 1 月 1 日起施行）

1989 年 12 月 26 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通过 2014 年 4 月 24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八次会议修订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保护和改善环境，防治污染和其他公害，保障公众健康，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环境，是指影响人类生存和发展的各种天然的和经过人工改造的自然因素的总体，包括大气、水、海洋、土地、矿藏、森林、草原、湿地、野生生物、自然遗迹、人文遗迹、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城市和乡村等。

第三条 本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

第四条 保护环境是国家的基本国策。

国家采取有利于节约和循环利用资源、保护和改善环境、促进人与自然和谐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使经济社会发展与环境保护相协调。

第五条 环境保护坚持保护优先、预防为主、综合治理、公众参与、损害担责的原则。

第六条 一切单位和个人都有保护环境的义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区域的环境质量负责。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防止、减少环境污染和生态破坏，对所造成的损害依法承担责任。

公民应当增强环境保护意识，采取低碳、节俭的生活方式，自觉履行环境保护义务。

第七条 国家支持环境保护科学技术研究、开发和应用，鼓励环境保护产业发展，促进环

境保护信息化建设，提高环境保护科学技术水平。

第八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大保护和改善环境、防治污染和其他公害的财政投入，提高财政资金的使用效益。

第九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环境保护宣传和普及工作，鼓励基层群众性自治组织、社会组织、环境保护志愿者开展环境保护法律法规和环境保护知识的宣传，营造保护环境的良好风气。

教育行政部门、学校应当将环境保护知识纳入学校教育内容，培养学生的环境保护意识。

新闻媒体应当开展环境保护法律法规和环境保护知识的宣传,对环境违法行为进行舆论监督。

第十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对全国环境保护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环境保护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和军队环境保护部门，依照有关法律的规定对资源保护和污染防治等环境保护工作实施监督管理。

第十一条 对保护和改善环境有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第十二条 每年 6 月 5 日为环境日。

第二章 监督管理

第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环境保护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编制国家环境保护规划，报国务院批准并公布实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根据国家环境保护规划的要求，编制本行政区域的环境保护规划，报同级人民政府批准并公布实施。

环境保护规划的内容应当包括生态保护和污染防治的目标、任务、保障措施等，并与主体功能区规划、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等相衔接。

第十四条 国务院有关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制定经济、技术政策，应

当充分考虑对环境的影响，听取有关方面和专家的意见。

第十五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国家环境质量标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国家环境质量标准中未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地方环境质量标准；对国家环境质量标准中已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严于国家环境质量标准的地方环境质量标准。地方环境质量标准应当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国家鼓励开展环境基准研究。

第十六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国家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制定国家污染物排放标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国家污染物排放标准中未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地方污染物排放标准；对国家污染物排放标准中已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严于国家污染物排放标准的地方污染物排放标准。地方污染物排放标准应当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七条 国家建立、健全环境监测制度。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监测规范，会同有关部门组织监测网络，统一规划国家环境质量监测站（点）的设置，建立监测数据共享机制，加强对环境监测的管理。

有关行业、专业等各类环境质量监测站（点）的设置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和监测规范的要求。

监测机构应当使用符合国家标准的监测设备，遵守监测规范。监测机构及其负责人对监测数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

第十八条 省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或者委托专业机构，对环境状况进行调查、评价，建立环境资源承载能力监测预警机制。

第十九条 编制有关开发利用规划，建设对环境有影响的项目，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

未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的开发利用规划，不得组织实施；未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的建设项目，不得开工建设。

第二十条 国家建立跨行政区域的重点区域、流域环境污染和生态破坏联合防治协调机制，实行统一规划、统一标准、统一监测、统一的防治措施。

前款规定以外的跨行政区域的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防治，由上级人民政府协调解决，或

者由有关地方人民政府协商解决。

第二十一条 国家采取财政、税收、价格、政府采购等方面的政策和措施，鼓励和支持环境保护技术装备、资源综合利用和环境服务等环境保护产业的发展。

第二十二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在污染物排放符合法定要求的基础上，进一步减少污染物排放的，人民政府应当依法采取财政、税收、价格、政府采购等方面的政策和措施予以鼓励和支持。

第二十三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为改善环境，依照有关规定转产、搬迁、关闭的，人民政府应当予以支持。

第二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及其委托的环境监察机构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权对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现场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实施现场检查的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为被检查者保守商业秘密。

第二十五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污染物，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污染的，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查封、扣押造成污染物排放的设施、设备。

第二十六条 国家实行环境保护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纳入对本级人民政府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负责人和下级人民政府及其负责人的考核内容，作为对其考核评价的重要依据。考核结果应当向社会公开。

第二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每年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对发生的重大环境事件应当及时向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依法接受监督。

第三章 保护和改善环境

第二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环境保护目标和治理任务，采取有效措施，改善环境质量。

未达到国家环境质量标准的重点区域、流域的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限期达标规划，并采取措施按期达标。

第二十九条 国家在重点生态功能区、生态环境敏感区和脆弱区等区域划定生态保护红线，实行严格保护。

各级人民政府对具有代表性的各种类型的自然生态系统区域，珍稀、濒危的野生动植物自然分布区域，重要的水源涵养区域，具有重大科学文化价值的地质构造、著名溶洞和化石分布区、冰川、火山、温泉等自然遗迹，以及人文遗迹、古树名木，应当采取措施予以保护，严禁破坏。

第三十条 开发利用自然资源，应当合理开发，保护生物多样性，保障生态安全，依法制定有关生态保护和恢复治理方案并予以实施。

引进外来物种以及研究、开发和利用生物技术，应当采取措施，防止对生物多样性的破坏。

第三十一条 国家建立、健全生态保护补偿制度。

国家加大对生态保护地区的财政转移支付力度。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落实生态保护补偿资金，确保其用于生态保护补偿。

国家指导受益地区和生态保护地区人民政府通过协商或者按照市场规则进行生态保护补偿。

第三十二条 国家加强对大气、水、土壤等的保护，建立和完善相应的调查、监测、评估和修复制度。

第三十三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业环境的保护，促进农业环境保护新技术的使用，加强对农业污染源的监测预警，统筹有关部门采取措施，防治土壤污染和土地沙化、盐渍化、贫瘠化、石漠化、地面沉降以及防治植被破坏、水土流失、水体富营养化、水源枯竭、种源灭绝等生态失调现象，推广植物病虫害的综合防治。

县级、乡级人民政府应当提高农村环境保护公共服务水平，推动农村环境综合整治。

第三十四条 国务院和沿海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海洋环境的保护。向海洋排放污染物、倾倒废弃物，进行海岸工程和海洋工程建设，应当符合法律法规规定和有关标准，防止和减少对海洋环境的污染损害。

第三十五条 城乡建设应当结合当地自然环境的特点，保护植被、水域和自然景观，加强城市园林、绿地和风景名胜区的建设与管理。

第三十六条 国家鼓励和引导公民、法人和其他组织使用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和再生产品，减少废弃物的产生。

国家机关和使用财政资金的其他组织应当优先采购和使用节能、节水、节材等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设备和设施。

第三十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组织对生活废弃物的分类处置、回收利用。

第三十八条 公民应当遵守环境保护法律法规，配合实施环境保护措施，按照规定对生活废弃物进行分类放置，减少日常生活对环境造成的损害。

第三十九条 国家建立、健全环境与健康监测、调查和风险评估制度；鼓励和组织开展环境质量对公众健康影响的研究，采取措施预防和控制与环境污染有关的疾病。

第四章 防治污染和其他公害

第四十条 国家促进清洁生产和资源循环利用。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推广清洁能源的生产和使用。

企业应当优先使用清洁能源，采用资源利用率高、污染物排放量少的工艺、设备以及废弃物综合利用技术和污染物无害化处理技术，减少污染物的产生。

第四十一条 建设项目中防治污染的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防治污染的设施应当符合经批准的环境影响评价文件的要求，不得擅自拆除或者闲置。

第四十二条 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措施，防治在生产建设或者其他活动中产生的废气、废水、废渣、医疗废物、粉尘、恶臭气体、放射性物质以及噪声、振动、光辐射、电磁辐射等对环境的污染和危害。

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应当建立环境保护责任制度，明确单位负责人和相关人员的责任。

重点排污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范安装使用监测设备，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保存原始监测记录。

严禁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

第四十三条 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缴纳

排污费。排污费应当全部专项用于环境污染防治，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挤占或者挪作他用。

依照法律规定征收环境保护税的，不再征收排污费。

第四十四条 国家实行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制度。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由国务院下达，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分解落实。企业事业单位在执行国家和地方污染物排放标准的同时，应当遵守分解落实到本单位的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

对超过国家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或者未完成国家确定的环境质量目标的地区，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暂停审批其新增重点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

第四十五条 国家依照法律规定实行排污许可管理制度。

实行排污许可管理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按照排污许可证的要求排放污染物；未取得排污许可证的，不得排放污染物。

第四十六条 国家对严重污染环境的工艺、设备和产品实行淘汰制度。任何单位和个人不得生产、销售或者转移、使用严重污染环境的工艺、设备和产品。

禁止引进不符合我国环境保护规定的技术、设备、材料和产品。

第四十七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企业事业单位，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的规定，做好突发环境事件的风险控制、应急准备、应急处置和事后恢复等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环境污染公共监测预警机制，组织制定预警方案；环境受到污染，可能影响公众健康和环境安全时，依法及时公布预警信息，启动应急措施。

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突发环境事件应急预案，报环境保护主管部门和有关部门备案。在发生或者可能发生突发环境事件时，企业事业单位应当立即采取措施处理，及时通报可能受到危害的单位和居民，并向环境保护主管部门和有关部门报告。

突发环境事件应急处置工作结束后，有关人民政府应当立即组织评估事件造成的环境影响和损失，并及时将评估结果向社会公布。

第四十八条 生产、储存、运输、销售、使用、处置化学物品和含有放射性物质的物品，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防止污染环境。

第四十九条 各级人民政府及其农业等有关部门和机构应当指导农业生产经营者科学种植

和养殖，科学合理施用农药、化肥等农业投入品，科学处置农用薄膜、农作物秸秆等农业废弃物，防止农业面源污染。

禁止将不符合农用标准和环境保护标准的固体废物、废水施入农田。施用农药、化肥等农业投入品及进行灌溉，应当采取措施，防止重金属和其他有毒有害物质污染环境。

畜禽养殖场、养殖小区、定点屠宰企业等的选址、建设和管理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规定。从事畜禽养殖和屠宰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措施，对畜禽粪便、尸体和污水等废弃物进行科学处置，防止污染环境。

县级人民政府负责组织农村生活废弃物的处置工作。

第五十条 各级人民政府应当在财政预算中安排资金，支持农村饮用水水源地保护、生活污水和其他废弃物处理、畜禽养殖和屠宰污染防治、土壤污染防治和农村工矿污染治理等环境保护工作。

第五十一条 各级人民政府应当统筹城乡建设污水处理设施及配套管网，固体废物的收集、运输和处置等环境卫生设施，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以及其他环境保护公共设施，并保障其正常运行。

第五十二条 国家鼓励投保环境污染责任保险。

第五章 信息公开和公众参与

第五十三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依法享有获取环境信息、参与和监督环境保护的权利。

各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依法公开环境信息、完善公众参与程序，为公民、法人和其他组织参与和监督环境保护提供便利。

第五十四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统一发布国家环境质量、重点污染源监测信息及其他重大环境信息。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定期发布环境状况公报。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依法公开环境质量、环境监测、突发环境事件以及环境行政许可、行政处罚、排污费的征收和使用情况等信息。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

将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的环境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及时向社会公布违法者名单。

第五十五条 重点排污单位应当如实向社会公开其主要污染物的名称、排放方式、排放浓度和总量、超标排放情况，以及防治污染设施的建设和运行情况，接受社会监督。

第五十六条 对依法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编制时向可能受影响的公众说明情况，充分征求意见。

负责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部门在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后，除涉及国家秘密和商业秘密的事项外，应当全文公开；发现建设项目未充分征求公众意见的，应当责成建设单位征求公众意见。

第五十七条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任何单位和个人有污染环境和破坏生态行为的，有权向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举报。

公民、法人和其他组织发现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不依法履行职责的，有权向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举报。

接受举报的机关应当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保护举报人的合法权益。

第五十八条 对污染环境、破坏生态，损害社会公共利益的行为，符合下列条件的社会组织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一）依法在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民政部门登记；

（二）专门从事环境保护公益活动连续五年以上且无违法记录。

符合前款规定的社会组织向人民法院提起诉讼，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提起诉讼的社会组织不得通过诉讼牟取经济利益。

第六章 法律责任

第五十九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法排放污染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拒不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可以自责令改正之日的次日起，按照原处罚数额按日连续处罚。

前款规定的罚款处罚，依照有关法律法规按照防治污染设施的运行成本、违法行为造成的直接损失或者违法所得等因素确定的规定执行。

地方性法规可以根据环境保护的实际需要，增加第一款规定的按日连续处罚的违法行为的种类。

第六十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污染物的，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责令其采取限制生产、停产整治等措施；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第六十一条 建设单位未依法提交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或者环境影响评价文件未经批准，擅自开工建设的，由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停止建设，处以罚款，并可以责令恢复原状。

第六十二条 违反本法规定，重点排污单位不公开或者不如实公开环境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公开，处以罚款，并予以公告。

第六十三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除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予以处罚外，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将案件移送公安机关，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情节较轻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一）建设项目未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被责令停止建设，拒不执行的；

（二）违反法律规定，未取得排污许可证排放污染物，被责令停止排污，拒不执行的；

（三）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违法排放污染物的；

（四）生产、使用国家明令禁止生产、使用的农药，被责令改正，拒不改正的。

第六十四条 因污染环境和破坏生态造成损害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的有关规定承担侵权责任。

第六十五条 环境影响评价机构、环境监测机构以及从事环境监测设备和防治污染设施维护、运营的机构，在有关环境服务活动中弄虚作假，对造成的环境污染和生态破坏负有责任的，除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予以处罚外，还应当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其他责任者承担连带责任。

第六十六条 提起环境损害赔偿诉讼的时效期间为三年，从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受到损害时起计算。

第六十七条 上级人民政府及其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环境保护工作的监督。发现有关工作人员有违法行为，依法应当给予处分的，应当向其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提出处分建议。

依法应当给予行政处罚，而有关环境保护主管部门不给予行政处罚的，上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直接作出行政处罚的决定。

第六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过、记大过或者降级处分；造成严重后果的，给予撤职或者开除处分，其主要负责人应当引咎辞职：

（一）不符合行政许可条件准予行政许可的；

（二）对环境违法行为进行包庇的；

（三）依法应当作出责令停业、关闭的决定而未作出的；

（四）对超标排放污染物、采用逃避监管的方式排放污染物、造成环境事故以及不落实生态保护措施造成生态破坏等行为，发现或者接到举报未及时查处的；

（五）违反本法规定，查封、扣押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的设施、设备的；

（六）篡改、伪造或者指使篡改、伪造监测数据的；

（七）应当依法公开环境信息而未公开的；

（八）将征收的排污费截留、挤占或者挪作他用的；

（九）法律法规规定的其他违法行为。

第六十九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则

第七十条 本法自 2015 年 1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

987 年 9 月 5 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通过
根据 1995 年 8 月 29 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
《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大气污染防治法〉的决定》修正
2000 年 4 月 29 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第一次修订
2015 年 8 月 29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第二次修订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保护和改善环境，防治大气污染，保障公众健康，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防治大气污染，应当以改善大气环境质量为目标，坚持源头治理，规划先行，转变经济发展方式，优化产业结构和布局，调整能源结构。

防治大气污染，应当加强对燃煤、工业、机动车船、扬尘、农业等大气污染的综合防治，推行区域大气污染联合防治，对颗粒物、二氧化硫、氮氧化物、挥发性有机物、氨等大气污染物和温室气体实施协同控制。

第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大气污染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大对大气污染防治的财政投入。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区域的大气环境质量负责，制定规划，采取措施，控制或者逐步削减大气污染物的排放量，使大气环境质量达到规定标准并逐步改善。

第四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按照国务院的规定，对省、自治区、直辖市大气环境质量改善目标、大气污染防治重点任务完成情况进行考核。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考核办法，对本行政区域内地方大气环境质量改善目标、大气污染防治重点任务完成情况实施考核。考核结果应当向社会公开。

第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对大气污染防治实施统一监督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大气污染防治实施监督管理。

第六条 国家鼓励和支持大气污染防治科学技术研究，开展对大气污染来源及其变化趋势的分析，推广先进适用的大气污染防治技术和装备，促进科技成果转化，发挥科学技术在大气污染防治中的支撑作用。

第七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减少大气污染，对所造成的损害依法承担责任。

公民应当增强大气环境保护意识，采取低碳、节俭的生活方式，自觉履行大气环境保护义务。

第二章 大气污染防治标准和限期达标规划

第八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大气环境质量标准，应当以保障公众健康和保护生态环境为宗旨，与经济社会发展相适应，做到科学合理。

第九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大气污染物排放标准，应当以大气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为依据。

第十条 制定大气环境质量标准、大气污染物排放标准，应当组织专家进行审查和论证，并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公众等方面的意见。

第十一条 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大气环境质量标准、大气污染物排放标准，供公众免费查阅、下载。

第十二条 大气环境质量标准、大气污染物排放标准的执行情况应当定期进行评估，根据评估结果对标准适时进行修订。

第十三条 制定燃煤、石油焦、生物质燃料、涂料等含挥发性有机物的产品、烟花爆竹以及锅炉等产品的质量标准，应当明确大气环境保护要求。

制定燃油质量标准，应当符合国家大气污染物控制要求，并与国家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大气污染物排放标准相互衔接，同步实施。

前款所称非道路移动机械，是指装配有发动机的移动机械和可运输工业设备。

第十四条 未达到国家大气环境质量标准城市的人民政府应当及时编制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采取措施，按照国务院或者省级人民政府规定的期限达到大气环境质量标准。

编制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应当征求有关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专家和公众等方面的意见。

第十五条 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应当向社会公开。直辖市和设区的市的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应当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六条 城市人民政府每年在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报告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时，应当报告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执行情况，并向社会公开。

第十七条 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应当根据大气污染防治的要求和经济、技术条件适时进行评估、修订。

第三章 大气污染防治的监督管理

第十八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建设对大气环境有影响的项目，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公开环境影响评价文件；向大气排放污染物的，应当符合大气污染物排放标准，遵守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要求。

第十九条 排放工业废气或者本法第七十八条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害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集中供热设施的燃煤热源生产运营单位以及其他依法实行排污许可管理的单位，应当取得排污许可证。排污许可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由国务院规定。

第二十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向大气排放污染物的，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设置大气污染物排放口。

禁止通过偷排、篡改或者伪造监测数据、以逃避现场检查为目的的临时停产、非紧急情况下开启应急排放通道、不正常运行大气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大气污染物。

第二十一条 国家对重点大气污染物排放实行总量控制。

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目标，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在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意见后，会同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报国务院批准并下达实施。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下达的总量控制目标，控制或者削减本行政区域的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

确定总量控制目标和分解总量控制指标的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大气污染防治的需要，对国家重点大气污染物之外的其他大气污染物排放实行总量控制。

国家逐步推行重点大气污染物排污权交易。

第二十二条 对超过国家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或者未完成国家下达的大气环境质量改善目标的地区，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约谈该地区人民政府的主要负责人，并暂停审批该地区新增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约谈情况应当向社会公开。

第二十三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制定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的监测和评价规范，组织建设与管理全国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监测网，组织开展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监测，统一发布全国大气环境质量状况信息。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组织建设与管理本行政区域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监测网，开展大气环境质量和大气污染源监测，统一发布本行政区域大气环境质量状况信息。

第二十四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范，对其排放的工业废气和本法第七十八条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害大气污染物进行监测，并保存原始监测记录。其中，重点排污单位应当安装、使用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并依法公开排放信息。监测的具体办法和重点排污单位的条件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

重点排污单位名录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根据本行政区域的大气环境承载力、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要求以及排污单位排放大气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等因素，商有关部门确定，并向社会公布。

第二十五条 重点排污单位应当对自动监测数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重点排污单位的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应当及时进行调查。

第二十六条 禁止侵占、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大气环境质量监测设施和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

第二十七条 国家对严重污染大气环境的工艺、设备和产品实行淘汰制度。

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确定严重污染大气环境的工艺、设备和产品淘汰期限，并纳入国家综合性产业政策目录。

生产者、进口者、销售者或者使用者应当在规定期限内停止生产、进口、销售或者使用列入前款规定目录中的设备和产品。工艺的采用者应当在规定期限内停止采用列入前款规定目录中的工艺。

被淘汰的设备和产品，不得转让给他人使用。

第二十八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建立和完善大气污染损害评估制度。

第二十九条 环境保护主管部门及其委托的环境监察机构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权通过现场检查监测、自动监测、遥感监测、远红外摄像等方式，对排放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监督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实施检查的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为被检查者保守商业秘密。

第三十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大气污染物，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大气污染，或者有关证据可能灭失或者被隐匿的，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对有关设施、设备、物品采取查封、扣押等行政强制措施。

第三十一条 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公布举报电话、电子邮箱等，方便公众举报。

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接到举报的，应当及时处理并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对实名举报的，应当反馈处理结果等情况，查证属实的，处理结果依法向社会公开，并对举报人给予奖励。

举报人举报所在单位的，该单位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第四章 大气污染防治措施

第一节 燃煤和其他能源污染防治

第三十二条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调整能源结构，推广清洁能源的生产和使用；优化煤炭使用方式，推广煤炭清洁高效利用，逐步降低煤炭在一次能源消费中的比重，减少煤炭生产、使用、转化过程中的大气污染物排放。

第三十三条 国家推行煤炭洗选加工，降低煤炭的硫分和灰分，限制高硫分、高灰分煤

炭的开采。新建煤矿应当同步建设配套的煤炭洗选设施，使煤炭的硫分、灰分含量达到规定标准；已建成的煤矿除所采煤炭属于低硫分、低灰分或者根据已达标排放的燃煤电厂要求不需要洗选的以外，应当限期建成配套的煤炭洗选设施。

禁止开采含放射性和砷等有毒有害物质超过规定标准的煤炭。

第三十四条 国家采取有利于煤炭清洁高效利用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鼓励和支持洁净煤技术的开发和推广。

国家鼓励煤矿企业等采用合理、可行的技术措施，对煤层气进行开采利用，对煤矸石进行综合利用。从事煤层气开采利用的，煤层气排放应当符合有关标准规范。

第三十五条 国家禁止进口、销售和燃用不符合质量标准的煤炭，鼓励燃用优质煤炭。

单位存放煤炭、煤矸石、煤渣、煤灰等物料，应当采取防燃措施，防止大气污染。

第三十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加强民用散煤的管理，禁止销售不符合民用散煤质量标准的煤炭，鼓励居民燃用优质煤炭和洁净型煤，推广节能环保型炉灶。

第三十七条 石油炼制企业应当按照燃油质量标准生产燃油。

禁止进口、销售和燃用不符合质量标准的石油焦。

第三十八条 城市人民政府可以划定并公布高污染燃料禁燃区，并根据大气环境质量改善要求，逐步扩大高污染燃料禁燃区范围。高污染燃料的目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确定。

在禁燃区内，禁止销售、燃用高污染燃料；禁止新建、扩建燃用高污染燃料的设施，已建成的，应当在城市人民政府规定的期限内改用天然气、页岩气、液化石、油气、电或者其他清洁能源。

第三十九条 城市建设应当统筹规划，在燃煤供热地区，推进热电联产和集中供热。在集中供热管网覆盖地区，禁止新建、扩建分散燃煤供热锅炉；已建成的不能达标排放的燃煤供热锅炉，应当在城市人民政府规定的期限内拆除。

第四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质量监督部门应当会同环境保护主管部门对锅炉生产、进口、销售和使用环节执行环境保护标准或者要求的情况进行监督检查；不符合环境保护标准或者要求的，不得生产、进口、销售和使用。

第四十一条 燃煤电厂和其他燃煤单位应当采用清洁生产工艺，配套建设除尘、脱硫、脱硝等装置，或者采取技术改造等其他控制大气污染物排放的措施。

国家鼓励燃煤单位采用先进的除尘、脱硫、脱硝、脱汞等大气污染物协同控制的技术和装置，减少大气污染物的排放。

第四十二条 电力调度应当优先安排清洁能源发电上网。

第二节 工业污染防治

第四十三条 钢铁、建材、有色金属、石油、化工等企业生产过程中排放粉尘、硫化物和氮氧化物的，应当采用清洁生产工艺，配套建设除尘、脱硫、脱硝等装置，或者采取技术改造等其他控制大气污染物排放的措施。

第四十四条 生产、进口、销售和使用含挥发性有机物的原材料和产品的，其挥发性有机物含量应当符合质量标准或者要求。

国家鼓励生产、进口、销售和使用低毒、低挥发性有机溶剂。

第四十五条 产生含挥发性有机物废气的生产和服务活动，应当在密闭空间或者设备中进行，并按照规定安装、使用污染防治设施；无法密闭的，应当采取措施减少废气排放。

第四十六条 工业涂装企业应当使用低挥发性有机物含量的涂料，并建立台账，记录生产原料、辅料的使用量、废弃量、去向以及挥发性有机物含量。台账保存期限不得少于三年。

第四十七条 石油、化工以及其他生产和使用有机溶剂的企业，应当采取措施对管道、设备进行日常维护、维修，减少物料泄漏，对泄漏的物料应当及时收集处理。

储油储气库、加油加气站、原油成品油码头、原油成品油运输船舶和油罐车、气罐车等，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油气回收装置并保持正常使用。

第四十八条 钢铁、建材、有色金属、石油、化工、制药、矿产开采等企业，应当加强精细化管理，采取集中收集处理等措施，严格控制粉尘和气态污染物的排放。

工业生产企业应当采取密闭、围挡、遮盖、清扫、洒水等措施，减少内部物料的堆存、传输、装卸等环节产生的粉尘和气态污染物的排放。

第四十九条 工业生产、垃圾填埋或者其他活动产生的可燃性气体应当回收利用，不具备回收利用条件的，应当进行污染防治处理。

可燃性气体回收利用装置不能正常作业的，应当及时修复或者更新。在回收利用装置不能正常作业期间确需排放可燃性气体的，应当将排放的可燃性气体充分燃烧或者采取其他控制大

气污染物排放的措施，并向当地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按照要求限期修复或者更新。

第三节　机动车船等污染防治

第五十条　国家倡导低碳、环保出行，根据城市规划合理控制燃油机动车保有量，大力发展城市公共交通，提高公共交通出行比例。

国家采取财政、税收、政府采购等措施推广应用节能环保型和新能源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限制高油耗、高排放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的发展，减少化石能源的消耗。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在条件具备的地区，提前执行国家机动车大气污染物排放标准中相应阶段排放限值，并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并改善城市交通管理，优化道路设置，保障人行道和非机动车道的连续、畅通。

第五十一条　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不得超过标准排放大气污染物。

禁止生产、进口或者销售大气污染物排放超过标准的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

第五十二条　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生产企业应当对新生产的机动车和非道路移动机械进行排放检验。经检验合格的，方可出厂销售。检验信息应当向社会公开。

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通过现场检查、抽样检测等方式，加强对新生产、销售机动车和非道路移动机械大气污染物排放状况的监督检查。工业、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予以配合。

第五十三条　在用机动车应当按照国家或者地方的有关规定，由机动车排放检验机构定期对其进行排放检验。经检验合格的，方可上道路行驶。未经检验合格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不得核发安全技术检验合格标志。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在机动车集中停放地、维修地对在用机动车的大气污染物排放状况进行监督抽测；在不影响正常通行的情况下，可以通过遥感监测等技术手段对在道路上行驶的机动车的大气污染物排放状况进行监督抽测，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予以配合。

第五十四条　机动车排放检验机构应当依法通过计量认证，使用经依法检定合格的机动车排放检验设备，按照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的规范，对机动车进行排放检验，并与环境保护主管部门联网，实现检验数据实时共享。机动车排放检验机构及其负责人对检验数据的

真实性和准确性负责。

环境保护主管部门和认证认可监督管理部门应当对机动车排放检验机构的排放检验情况进行监督检查。

第五十五条 机动车生产、进口企业应当向社会公布其生产、进口机动车车型的排放检验信息、污染控制技术信息和有关维修技术信息。

机动车维修单位应当按照防治大气污染的要求和国家有关技术规范对在用机动车进行维修，使其达到规定的排放标准。交通运输、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依法加强监督管理。

禁止机动车所有人以临时更换机动车污染控制装置等弄虚作假的方式通过机动车排放检验。禁止机动车维修单位提供该类维修服务。禁止破坏机动车车载排放诊断系统。

第五十六条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交通运输、住房城乡建设、农业行政、水行政等有关部门对非道路移动机械的大气污染物排放状况进行监督检查，排放不合格的，不得使用。

第五十七条 国家倡导环保驾驶，鼓励燃油机动车驾驶人在不影响道路通行且需停车三分钟以上的情况下熄灭发动机，减少大气污染物的排放。

第五十八条 国家建立机动车和非道路移动机械环境保护召回制度。

生产、进口企业获知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排放大气污染物超过标准，属于设计、生产缺陷或者不符合规定的环境保护耐久性要求的，应当召回；未召回的，由国务院质量监督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其召回。

第五十九条 在用重型柴油车、非道路移动机械未安装污染控制装置或者污染控制装置不符合要求，不能达标排放的，应当加装或者更换符合要求的污染控制装置。

第六十条 在用机动车排放大气污染物超过标准的，应当进行维修；经维修或者采用污染控制技术后，大气污染物排放仍不符合国家在用机动车排放标准的，应当强制报废。其所有人应当将机动车交售给报废机动车回收拆解企业，由报废机动车回收拆解企业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登记、拆解、销毁等处理。

国家鼓励和支持高排放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提前报废。

第六十一条 城市人民政府可以根据大气环境质量状况，划定并公布禁止使用高排放非道路移动机械的区域。

第六十二条 船舶检验机构对船舶发动机及有关设备进行排放检验。经检验符合国家排放标准的，船舶方可运营。

第六十三条 内河和江海直达船舶应当使用符合标准的普通柴油。远洋船舶靠港后应当使用符合大气污染物控制要求的船舶用燃油。

新建码头应当规划、设计和建设岸基供电设施；已建成的码头应当逐步实施岸基供电设施改造。船舶靠港后应当优先使用岸电。

第六十四条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可以在沿海海域划定船舶大气污染物排放控制区，进入排放控制区的船舶应当符合船舶相关排放要求。

第六十五条 禁止生产、进口、销售不符合标准的机动车船、非道路移动机械用燃料；禁止向汽车和摩托车销售普通柴油以及其他非机动车用燃料；禁止向非道路移动机械、内河和江海直达船舶销售渣油和重油。

第六十六条 发动机油、氮氧化物还原剂、燃料和润滑油添加剂以及其他添加剂的有害物质含量和其他大气环境保护指标，应当符合有关标准的要求，不得损害机动车船污染控制装置效果和耐久性，不得增加新的大气污染物排放。

第六十七条 国家积极推进民用航空器的大气污染防治，鼓励在设计、生产、使用过程中采取有效措施减少大气污染物排放。

民用航空器应当符合国家规定的适航标准中的有关发动机排出物要求。

第四节 扬尘污染防治

第六十八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建设施工和运输的管理，保持道路清洁，控制料堆和渣土堆放，扩大绿地、水面、湿地和地面铺装面积，防治扬尘污染。

住房城乡建设、市容环境卫生、交通运输、国土资源等有关部门，应当根据本级人民政府确定的职责，做好扬尘污染防治工作。

第六十九条 建设单位应当将防治扬尘污染的费用列入工程造价，并在施工承包合同中明确施工单位扬尘污染防治责任。施工单位应当制定具体的施工扬尘污染防治实施方案。

从事房屋建筑、市政基础设施建设、河道整治以及建筑物拆除等施工单位，应当向负责监督管理扬尘污染防治的主管部门备案。

施工单位应当在施工工地设置硬质围挡，并采取覆盖、分段作业、择时施工、洒水抑尘、冲洗地面和车辆等有效防尘降尘措施。建筑土方、工程渣土、建筑垃圾应当及时清运；在场地内堆存的，应当采用密闭式防尘网遮盖。工程渣土、建筑垃圾应当进行资源化处理。

施工单位应当在施工工地公示扬尘污染防治措施、负责人、扬尘监督管理主管部门等信息。

暂时不能开工的建设用地，建设单位应当对裸露地面进行覆盖；超过三个月的，应当进行绿化、铺装或者遮盖。

第七十条 运输煤炭、垃圾、渣土、砂石、土方、灰浆等散装、流体物料的车辆应当采取密闭或者其他措施防止物料遗撒造成扬尘污染，并按照规定路线行驶。

装卸物料应当采取密闭或者喷淋等方式防治扬尘污染。

城市人民政府应当加强道路、广场、停车场和其他公共场所的清扫保洁管理，推行清洁动力机械化清扫等低尘作业方式，防治扬尘污染。

第七十一条 市政河道以及河道沿线、公共用地的裸露地面以及其他城镇裸露地面，有关部门应当按照规划组织实施绿化或者透水铺装。

第七十二条 贮存煤炭、煤矸石、煤渣、煤灰、水泥、石灰、石膏、砂土等易产生扬尘的物料应当密闭；不能密闭的，应当设置不低于堆放物高度的严密围挡，并采取有效覆盖措施防治扬尘污染。

码头、矿山、填埋场和消纳场应当实施分区作业，并采取有效措施防治扬尘污染。

第五节 农业和其他污染防治

第七十三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推动转变农业生产方式，发展农业循环经济，加大对废弃物综合处理的支持力度，加强对农业生产经营活动排放大气污染物的控制。

第七十四条 农业生产经营者应当改进施肥方式，科学合理施用化肥并按照国家有关规定使用农药，减少氨、挥发性有机物等大气污染物的排放。

禁止在人口集中地区对树木、花草喷洒剧毒、高毒农药。

第七十五条 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及时对污水、畜禽粪便和尸体等进行收集、贮存、清运和无害化处理，防止排放恶臭气体。

第七十六条 各级人民政府及其农业行政等有关部门应当鼓励和支持采用先进适用技术，对秸秆、落叶等进行肥料化、饲料化、能源化、工业原料化、食用菌基料化等综合利用，加大对秸秆还田、收集一体化农业机械的财政补贴力度。

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建立秸秆收集、贮存、运输和综合利用服务体系，采用财政补贴等措施支持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专业合作经济组织、企业等开展秸秆收集、贮存、运输和综合利用服务。

第七十七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划定区域，禁止露天焚烧秸秆、落叶等产生烟尘污染的物质。

第七十八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根据大气污染物对公众健康和生态环境的危害和影响程度，公布有毒有害大气污染物名录，实行风险管理。

排放前款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害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设环境风险预警体系，对排放口和周边环境进行定期监测，评估环境风险，排查环境安全隐患，并采取有效措施防范环境风险。

第七十九条 向大气排放持久性有机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及废弃物焚烧设施的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有利于减少持久性有机污染物排放的技术方法和工艺，配备有效的净化装置，实现达标排放。

第八十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在生产经营活动中产生恶臭气体的，应当科学选址，设置合理的防护距离，并安装净化装置或者采取其他措施，防止排放恶臭气体。

第八十一条 排放油烟的餐饮服务业经营者应当安装油烟净化设施并保持正常使用，或者采取其他油烟净化措施，使油烟达标排放，并防止对附近居民的正常生活环境造成污染。

禁止在居民住宅楼、未配套设立专用烟道的商住综合楼以及商住综合楼内与居住层相邻的商业楼层内新建、改建、扩建产生油烟、异味、废气的餐饮服务项目。

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当地人民政府禁止的区域内露天烧烤食品或者为露天烧烤食品提供场地。

第八十二条 禁止在人口集中地区和其他依法需要特殊保护的区域内焚烧沥青、油毡、橡胶、塑料、皮革、垃圾以及其他产生有毒有害烟尘和恶臭气体的物质。

禁止生产、销售和燃放不符合质量标准的烟花爆竹。任何单位和个人不得在城市人民政府禁止的时段和区域内燃放烟花爆竹。

第八十三条 国家鼓励和倡导文明、绿色祭祀。

火葬场应当设置除尘等污染防治设施并保持正常使用，防止影响周边环境。

第八十四条 从事服装干洗和机动车维修等服务活动的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标准或者要求设置异味和废气处理装置等污染防治设施并保持正常使用，防止影响周边环境。

第八十五条 国家鼓励、支持消耗臭氧层物质替代品的生产和使用，逐步减少直至停止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和使用。

国家对消耗臭氧层物质的生产、使用、进出口实行总量控制和配额管理。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五章 重点区域大气污染联合防治

第八十六条 国家建立重点区域大气污染联防联控机制，统筹协调重点区域内大气污染防治工作。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主体功能区划、区域大气环境质量状况和大气污染传输扩散规律，划定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报国务院批准。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确定牵头的地方人民政府，定期召开联席会议，按照统一规划、统一标准、统一监测、统一的防治措施的要求，开展大气污染联合防治，落实大气污染防治目标责任。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加强指导、督促。

省、自治区、直辖市可以参照第一款规定划定本行政区域的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

第八十七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重点区域经济社会发展和大气环境承载力，制定重点区域大气污染联合防治行动计划，明确控制目标，优化区域经济布局，统筹交通管理，发展清洁能源，提出重点防治任务和措施，促进重点区域大气环境质量改善。

第八十八条 国务院经济综合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结合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产业发展实际和大气环境质量状况，进一步提高环境保护、能耗、安全、质量等要求。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实施更严格的机动车大气污染物排放标准，统一在用机动车检验方法和排放限值，并配套供应合格的车用燃油。

第八十九条 编制可能对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的大气环境造成严重污染的有关工

业园区、开发区、区域产业和发展等规划，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规划编制机关应当与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会商。

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建设可能对相邻省、自治区、直辖市大气环境质量产生重大影响的项目，应当及时通报有关信息，进行会商。

会商意见及其采纳情况作为环境影响评价文件审查或者审批的重要依据。

第九十条 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新建、改建、扩建用煤项目的，应当实行煤炭的等量或者减量替代。

第九十一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组织建立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的大气环境质量监测、大气污染源监测等相关信息共享机制，利用监测、模拟以及卫星、航测、遥感等新技术分析重点区域内大气污染来源及其变化趋势，并向社会公开。

第九十二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组织有关部门开展联合执法、跨区域执法、交叉执法。

第六章 重污染天气应对

第九十三条 国家建立重污染天气监测预警体系。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气象主管机构等有关部门、国家大气污染防治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立重点区域重污染天气监测预警机制，统一预警分级标准。可能发生区域重污染天气的，应当及时向重点区域内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通报。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气象主管机构等有关部门建立本行政区域重污染天气监测预警机制。

第九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重污染天气应对纳入突发事件应急管理体系。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以及可能发生重污染天气的县级人民政府，应当制定重污染天气应急预案，向上一级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并向社会公布。

第九十五条 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气象主管机构建立会商机制，进行大气环境质量预报。可能发生重污染天气的，应当及时向本级人民政府报告。省、自治区、直辖市、设区的市人民政府依据重污染天气预报信息，进行综合研判，

确定预警等级并及时发出预警。预警等级根据情况变化及时调整。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向社会发布重污染天气预报预警信息。

预警信息发布后，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通过电视、广播、网络、短信等途径告知公众采取健康防护措施，指导公众出行和调整其他相关社会活动。

第九十六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据重污染天气的预警等级，及时启动应急预案，根据应急需要可以采取责令有关企业停产或者限产、限制部分机动车行驶、禁止燃放烟花爆竹、停止工地土石方作业和建筑物拆除施工、停止露天烧烤、停止幼儿园和学校组织的户外活动、组织开展人工影响天气作业等应急措施。

应急响应结束后，人民政府应当及时开展应急预案实施情况的评估，适时修改完善应急预案。

第九十七条 发生造成大气污染的突发环境事件，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相关企业事业单位，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做好应急处置工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及时对突发环境事件产生的大气污染物进行监测，并向社会公布监测信息。

第七章 法律责任

第九十八条 违反本法规定，以拒绝进入现场等方式拒不接受环境保护主管部门及其委托的环境监察机构或者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

第九十九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未依法取得排污许可证排放大气污染物的；

（二）超过大气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大气污染物的；

（三）通过逃避监管的方式排放大气污染物的。

第一百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

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一）侵占、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大气环境质量监测设施或者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的；

（二）未按照规定对所排放的工业废气和有毒有害大气污染物进行监测并保存原始监测记录的；

（三）未按照规定安装、使用大气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或者未按照规定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并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的；

（四）重点排污单位不公开或者不如实公开自动监测数据的；

（五）未按照规定设置大气污染物排放口的。

第一百零一条 违反本法规定，生产、进口、销售或者使用国家综合性产业政策目录中禁止的设备和产品，采用国家综合性产业政策目录中禁止的工艺，或者将淘汰的设备和产品转让给他人使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综合主管部门、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职责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进口行为构成走私的，由海关依法予以处罚。

第一百零二条 违反本法规定，煤矿未按照规定建设配套煤炭洗选设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能源主管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违反本法规定，开采含放射性和砷等有毒有害物质超过规定标准的煤炭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停业、关闭。

第一百零三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质量监督、工商行政管理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没收原材料、产品和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一）销售不符合质量标准的煤炭、石油焦的；

（二）生产、销售挥发性有机物含量不符合质量标准或者要求的原材料和产品的；

（三）生产、销售不符合标准的机动车船和非道路移动机械用燃料、发动机油、氮氧化物还原剂、燃料和润滑油添加剂以及其他添加剂的；

（四）在禁燃区内销售高污染燃料的。

第一百零四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出入境检验检疫机构责令改正，没收原材料、产品和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走私的，由海关依法予以处罚：

（一）进口不符合质量标准的煤炭、石油焦的；

（二）进口挥发性有机物含量不符合质量标准或者要求的原材料和产品的；

（三）进口不符合标准的机动车船和非道路移动机械用燃料、发动机油、氮氧化物还原剂、燃料和润滑油添加剂以及其他添加剂的。

第一百零五条 违反本法规定，单位燃用不符合质量标准的煤炭、石油焦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六条 违反本法规定，使用不符合标准或者要求的船舶用燃油的，由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七条 违反本法规定，在禁燃区内新建、扩建燃用高污染燃料的设施，或者未按照规定停止燃用高污染燃料，或者在城市集中供热管网覆盖地区新建、扩建分散燃煤供热锅炉，或者未按照规定拆除已建成的不能达标排放的燃煤供热锅炉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没收燃用高污染燃料的设施，组织拆除燃煤供热锅炉，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生产、进口、销售或者使用不符合规定标准或者要求的锅炉，由县级以上人民政府质量监督、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八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一）产生含挥发性有机物废气的生产和服务活动，未在密闭空间或者设备中进行，未按照规定安装、使用污染防治设施，或者未采取减少废气排放措施的；

（二）工业涂装企业未使用低挥发性有机物含量涂料或者未建立、保存台账的；

（三）石油、化工以及其他生产和使用有机溶剂的企业，未采取措施对管道、设备进行日常维护、维修，减少物料泄漏或者对泄漏的物料未及时收集处理的；

（四）储油储气库、加油加气站和油罐车、气罐车等，未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并正常使用油气回收装置的；

（五）钢铁、建材、有色金属、石油、化工、制药、矿产开采等企业，未采取集中收集处理、密闭、围挡、遮盖、清扫、洒水等措施，控制、减少粉尘和气态污染物排放的；

（六）工业生产、垃圾填埋或者其他活动中产生的可燃性气体未回收利用，不具备回收利用条件未进行防治污染处理，或者可燃性气体回收利用装置不能正常作业，未及时修复或者更新的。

第一百零九条 违反本法规定，生产超过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没收销毁无法达到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并由国务院机动车生产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该车型。

违反本法规定，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生产企业对发动机、污染控制装置弄虚作假、以次充好，冒充排放检验合格产品出厂销售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产整治，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没收销毁无法达到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并由国务院机动车生产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该车型。

第一百一十条 违反本法规定，进口、销售超过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工商行政管理部门、出入境检验检疫机构按照职责没收违法所得，并处货值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没收销毁无法达到污染物排放标准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进口行为构成走私的，由海关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销售的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不符合污染物排放标准的，销售者应当负责修理、更换、退货；给购买者造成损失的，销售者应当赔偿损失。

第一百一十一条 违反本法规定，机动车生产、进口企业未按照规定向社会公布其生产、进口机动车车型的排放检验信息或者污染控制技术信息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机动车生产、进口企业未按照规定向社会公布其生产、进口机动车车型的有关维修技术信息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二条 违反本法规定，伪造机动车、非道路移动机械排放检验结果或者出具虚假排放检验报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负责资质认定的部门取消其检验资格。

违反本法规定，伪造船舶排放检验结果或者出具虚假排放检验报告的，由海事管理机构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以临时更换机动车污染控制装置等弄虚作假的方式通过机动车排放检验或者破坏机动车车载排放诊断系统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对机动车所有人处五千元的罚款；对机动车维修单位处每辆机动车五千元的罚款。

第一百一十三条 违反本法规定，机动车驾驶人驾驶排放检验不合格的机动车上道路行驶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法予以处罚。

第一百一十四条 违反本法规定，使用排放不合格的非道路移动机械，或者在用重型柴油车、非道路移动机械未按照规定加装、更换污染控制装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等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处五千元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禁止使用高排放非道路移动机械的区域使用高排放非道路移动机械的，由城市人民政府环境保护等主管部门依法予以处罚。

第一百一十五条 违反本法规定，施工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等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工整治：

（一）施工工地未设置硬质密闭围挡，或者未采取覆盖、分段作业、择时施工、洒水抑尘、冲洗地面和车辆等有效防尘降尘措施的；

（二）建筑土方、工程渣土、建筑垃圾未及时清运，或者未采用密闭式防尘网遮盖的。

违反本法规定，建设单位未对暂时不能开工的建设用地的裸露地面进行覆盖，或者未对超过三个月不能开工的建设用地的裸露地面进行绿化、铺装或者遮盖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住房城乡建设等主管部门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第一百一十六条 违反本法规定，运输煤炭、垃圾、渣土、砂石、土方、灰浆等散装、流体物料的车辆，未采取密闭或者其他措施防止物料遗撒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车辆不得上道路行驶。

第一百一十七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等主管部门按照职责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工整治或者停业整治：

（一）未密闭煤炭、煤矸石、煤渣、煤灰、水泥、石灰、石膏、砂土等易产生扬尘的物料的；

（二）对不能密闭的易产生扬尘的物料，未设置不低于堆放物高度的严密围挡，或者未采取有效覆盖措施防治扬尘污染的；

（三）装卸物料未采取密闭或者喷淋等方式控制扬尘排放的；

（四）存放煤炭、煤矸石、煤渣、煤灰等物料，未采取防燃措施的；

（五）码头、矿山、填埋场和消纳场未采取有效措施防治扬尘污染的；

（六）排放有毒有害大气污染物名录中所列有毒有害大气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未按照规定建设环境风险预警体系或者对排放口和周边环境进行定期监测、排查环境安全隐患并采取有效措施防范环境风险的；

（七）向大气排放持久性有机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以及废弃物焚烧设施的运营单位，未按照国家有关规定采取有利于减少持久性有机污染物排放的技术方法和工艺，配备净化装置的；

（八）未采取措施防止排放恶臭气体的。

第一百一十八条 违反本法规定，排放油烟的餐饮服务业经营者未安装油烟净化设施、不正常使用油烟净化设施或者未采取其他油烟净化措施，超过排放标准排放油烟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治。

违反本法规定，在居民住宅楼、未配套设立专用烟道的商住综合楼、商住综合楼内与居住层相邻的商业楼层内新建、改建、扩建产生油烟、异味、废气的餐饮服务项目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予以关闭，并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当地人民政府禁止的时段和区域内露天烧烤食品或者为露天烧烤食品提供场地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没收烧烤工具和违法所得，并处五百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九条 违反本法规定，在人口集中地区对树木、花草喷洒剧毒、高毒农药，或者露天焚烧秸秆、落叶等产生烟尘污染的物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并可以处五百元以上二千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人口集中地区和其他依法需要特殊保护的区域内，焚烧沥青、油毡、橡胶、塑料、皮革、垃圾以及其他产生有毒有害烟尘和恶臭气体的物质的，由县级人民政府确定的监

督管理部门责令改正，对单位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五百元以上二千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在城市人民政府禁止的时段和区域内燃放烟花爆竹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依法予以处罚。

第一百二十条 违反本法规定，从事服装干洗和机动车维修等服务活动，未设置异味和废气处理装置等污染防治设施并保持正常使用，影响周边环境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治。

第一百二十一条 违反本法规定，擅自向社会发布重污染天气预报预警信息，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拒不执行停止工地土石方作业或者建筑物拆除施工等重污染天气应急措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确定的监督管理部门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二十二条 违反本法规定，造成大气污染事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以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上一年度从本企业事业单位取得收入百分之五十以下的罚款。

对造成一般或者较大大气污染事故的，按照污染事故造成直接损失的一倍以上三倍以下计算罚款；对造成重大或者特大大气污染事故的，按照污染事故造成的直接损失的三倍以上五倍以下计算罚款。

第一百二十三条 违反本法规定，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有下列行为之一，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拒不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可以自责令改正之日的次日起，按照原处罚数额按日连续处罚：

（一）未依法取得排污许可证排放大气污染物的；

（二）超过大气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大气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大气污染物的；

（三）通过逃避监管的方式排放大气污染物的；

（四）建筑施工或者贮存易产生扬尘的物料未采取有效措施防治扬尘污染的。

第一百二十四条 违反本法规定，对举报人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打击报复的，应当依照有关法律的规定承担责任。

第一百二十五条 排放大气污染物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侵权责任。

第一百二十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负有大气环境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弄虚作假的，依法给予处分。

第一百二十七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一百二十八条 海洋工程的大气污染防治，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的有关规定执行。

第一百二十九条 本法自 2016 年 1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2017 年 6 月 27 日第二次修正)

1984 年 5 月 11 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 根据 1996 年 5 月 15 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九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决定》第一次修正 2008 年 2 月 28 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二次会议修订 根据2017年6月2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八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的决定》第二次修正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护和改善环境，防治水污染，保护水生态，保障饮用水安全，维护公众健康，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的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等地表水体以及地下水体的污染防治。

海洋污染防治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

第三条　水污染防治应当坚持预防为主、防治结合、综合治理的原则，优先保护饮用水水源，严格控制工业污染、城镇生活污染，防治农业面源污染，积极推进生态治理工程建设，预防、控制和减少水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水环境保护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地方各级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的水环境质量负责，应当及时采取措施防治水污染。

第五条　省、市、县、乡建立河长制，分级分段组织领导本行政区域内江河、湖泊的水资源保护、水域岸线管理、水污染防治、水环境治理等工作。

第六条　国家实行水环境保护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将水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作为对地方人民政府及其负责人考核评价的内容。

第七条　国家鼓励、支持水污染防治的科学技术研究和先进适用技术的推广应用，加强水

环境保护的宣传教育。

第八条 国家通过财政转移支付等方式，建立健全对位于饮用水水源保护区区域和江河、湖泊、水库上游地区的水环境生态保护补偿机制。

第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对水污染防治实施统一监督管理。

交通主管部门的海事管理机构对船舶污染水域的防治实施监督管理。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国土资源、卫生、建设、农业、渔业等部门以及重要江河、湖泊的流域水资源保护机构，在各自的职责范围内，对有关水污染防治实施监督管理。

第十条 排放水污染物，不得超过国家或者地方规定的水污染物排放标准和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义务保护水环境，并有权对污染损害水环境的行为进行检举。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对在水污染防治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第二章 水污染防治的标准和规划

第十二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国家水环境质量标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对国家水环境质量标准中未作规定的项目，制定地方标准，并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第十三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流域水体的使用功能以及有关地区的经济、技术条件，确定该重要江河、湖泊流域的省界水体适用的水环境质量标准，报国务院批准后施行。

第十四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国家水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制定国家水污染物排放标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对国家水污染物排放标准中未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地方

水污染物排放标准；对国家水污染物排放标准中已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严于国家水污染物排放标准的地方水污染物排放标准。地方水污染物排放标准须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备案。

向已有地方水污染物排放标准的水体排放污染物的，应当执行地方水污染物排放标准。

第十五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根据水污染防治的要求和国家或者地方的经济、技术条件，适时修订水环境质量标准和水污染物排放标准。

第十六条 防治水污染应当按流域或者按区域进行统一规划。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水行政等部门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编制，报国务院批准。

前款规定外的其他跨省、自治区、直辖市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根据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和本地实际情况，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水行政等部门和有关市、县人民政府编制，经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审核，报国务院批准。

省、自治区、直辖市内跨县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根据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和本地实际情况，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水行政等部门编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报国务院备案。

经批准的水污染防治规划是防治水污染的基本依据，规划的修订须经原批准机关批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依法批准的江河、湖泊的流域水污染防治规划，组织制定本行政区域的水污染防治规划。

第十七条 有关市、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水污染防治规划确定的水环境质量改善目标的要求，制定限期达标规划，采取措施按期达标。

有关市、县级人民政府应当将限期达标规划报上一级人民政府备案，并向社会公开。

第十八条 市、县级人民政府每年在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其常务委员会报告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时，应当报告水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执行情况，并向社会公开。

第三章 水污染防治的监督管理

第十九条 新建、改建、扩建直接或者间接向水体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和其他水上设施，

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

建设单位在江河、湖泊新建、改建、扩建排污口的，应当取得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同意；涉及通航、渔业水域的，环境保护主管部门在审批环境影响评价文件时，应当征求交通、渔业主管部门的意见。

建设项目的水污染防治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水污染防治设施应当符合经批准或者备案的环境影响评价文件的要求。

第二十条 国家对重点水污染物排放实施总量控制制度。

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在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意见后，会同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报国务院批准并下达实施。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国务院的规定削减和控制本行政区域的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水环境质量状况和水污染防治工作的需要，对国家重点水污染物之外的其他水污染物排放实行总量控制。

对超过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或者未完成水环境质量改善目标的地区，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约谈该地区人民政府的主要负责人，并暂停审批新增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的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约谈情况应当向社会公开。

第二十一条 直接或者间接向水体排放工业废水和医疗污水以及其他按照规定应当取得排污许可证方可排放的废水、污水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取得排污许可证；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运营单位，也应当取得排污许可证。排污许可证应当明确排放水污染物的种类、浓度、总量和排放去向等要求。排污许可的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禁止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无排污许可证或者违反排污许可证的规定向水体排放前款规定的废水、污水。

第二十二条 向水体排放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设置排污口；在江河、湖泊设置排污口的，还应当遵守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的规定。

第二十三条 实行排污许可管理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范，对所排放的水污染物自行监测，并保存原始监测记录。重点排污单位还应当安

装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并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

应当安装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的重点排污单位名录，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本行政区域的环境容量、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要求以及排污单位排放水污染物的种类、数量和浓度等因素，商同级有关部门确定。

第二十四条 实行排污许可管理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对监测数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

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重点排污单位的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传输数据异常，应当及时进行调查。

第二十五条 国家建立水环境质量监测和水污染物排放监测制度。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负责制定水环境监测规范，统一发布国家水环境状况信息，会同国务院水行政等部门组织监测网络，统一规划国家水环境质量监测站（点）的设置，建立监测数据共享机制，加强对水环境监测的管理。

第二十六条 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流域的水资源保护工作机构负责监测其所在流域的省界水体的水环境质量状况，并将监测结果及时报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有经国务院批准成立的流域水资源保护领导机构的，应当将监测结果及时报告流域水资源保护领导机构。

第二十七条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开发、利用和调节、调度水资源时，应当统筹兼顾，维持江河的合理流量和湖泊、水库以及地下水体的合理水位，保障基本生态用水，维护水体的生态功能。

第二十八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水行政等部门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建立重要江河、湖泊的流域水环境保护联合协调机制，实行统一规划、统一标准、统一监测、统一的防治措施。

第二十九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同级有关部门根据流域生态环境功能需要，明确流域生态环境保护要求，组织开展流域环境资源承载能力监测、评价，实施流域环境资源承载能力预警。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流域生态环境功能需要，组织开展江河、湖泊、湿地保护与修复，因地制宜建设人工湿地、水源涵养林、沿河沿湖植被缓冲带和隔离带等生态环境治理与保护工程，整治黑臭水体，提高流域环境资源承载能力。

从事开发建设活动，应当采取有效措施，维护流域生态环境功能，严守生态保护红线。

第三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和其他依照本法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有权对管辖范围内的排污单位进行现场检查，被检查的单位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检查机关有义务为被检查的单位保守在检查中获取的商业秘密。

第三十一条 跨行政区域的水污染纠纷，由有关地方人民政府协商解决，或者由其共同的上级人民政府协调解决。

第四章 水污染防治措施

第一节 一般规定

第三十二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卫生主管部门，根据对公众健康和生态环境的危害和影响程度，公布有毒有害水污染物名录，实行风险管理。

排放前款规定名录中所列有毒有害水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对排污口和周边环境进行监测，评估环境风险，排查环境安全隐患，并公开有毒有害水污染物信息，采取有效措施防范环境风险。

第三十三条 禁止向水体排放油类、酸液、碱液或者剧毒废液。

禁止在水体清洗装贮过油类或者有毒污染物的车辆和容器。

第三十四条 禁止向水体排放、倾倒放射性固体废物或者含有高放射性和中放射性物质的废水。

向水体排放含低放射性物质的废水，应当符合国家有关放射性污染防治的规定和标准。

第三十五条 向水体排放含热废水，应当采取措施，保证水体的水温符合水环境质量标准。

第三十六条 含病原体的污水应当经过消毒处理；符合国家有关标准后，方可排放。

第三十七条 禁止向水体排放、倾倒工业废渣、城镇垃圾和其他废弃物。

禁止将含有汞、镉、砷、铬、铅、氰化物、黄磷等的可溶性剧毒废渣向水体排放、倾倒或者直接埋入地下。

存放可溶性剧毒废渣的场所，应当采取防水、防渗漏、防流失的措施。

第三十八条 禁止在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和岸坡堆放、存贮固体废弃物和其他污染物。

第三十九条 禁止利用渗井、渗坑、裂隙、溶洞，私设暗管，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水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

第四十条 化学品生产企业以及工业集聚区、矿山开采区、尾矿库、危险废物处置场、垃圾填埋场等的运营、管理单位，应当采取防渗漏等措施，并建设地下水水质监测井进行监测，防止地下水污染。

加油站等的地下油罐应当使用双层罐或者采取建造防渗池等其他有效措施，并进行防渗漏监测，防止地下水污染。

禁止利用无防渗漏措施的沟渠、坑塘等输送或者存贮含有毒污染物的废水、含病原体的污水和其他废弃物。

第四十一条 多层地下水的含水层水质差异大的，应当分层开采；对已受污染的潜水和承压水，不得混合开采。

第四十二条 兴建地下工程设施或者进行地下勘探、采矿等活动，应当采取防护性措施，防止地下水污染。

报废矿井、钻井或者取水井等，应当实施封井或者回填。

第四十三条 人工回灌补给地下水，不得恶化地下水质。

第二节 工业水污染防治

第四十四条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规划工业布局，要求造成水污染的企业进行技术改造，采取综合防治措施，提高水的重复利用率，减少废水和污染物排放量。

第四十五条 排放工业废水的企业应当采取有效措施，收集和处理产生的全部废水，防止污染环境。含有毒有害水污染物的工业废水应当分类收集和处理，不得稀释排放。

工业集聚区应当配套建设相应的污水集中处理设施，安装自动监测设备，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并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

向污水集中处理设施排放工业废水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预处理，达到集中处理设施处理工艺要求后方可排放。

第四十六条 国家对严重污染水环境的落后工艺和设备实行淘汰制度。

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公布限期禁止采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工艺名录和限期禁止生产、销售、进口、使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设备名录。

生产者、销售者、进口者或者使用者应当在规定的期限内停止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列入前款规定的设备名录中的设备。工艺的采用者应当在规定的期限内停止采用列入前款规定的工艺名录中的工艺。

依照本条第二款、第三款规定被淘汰的设备，不得转让给他人使用。

第四十七条 国家禁止新建不符合国家产业政策的小型造纸、制革、印染、染料、炼焦、炼硫、炼砷、炼汞、炼油、电镀、农药、石棉、水泥、玻璃、钢铁、火电以及其他严重污染水环境的生产项目。

第四十八条 企业应当采用原材料利用效率高、污染物排放量少的清洁工艺，并加强管理，减少水污染物的产生。

第三节 城镇水污染防治

第四十九条 城镇污水应当集中处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通过财政预算和其他渠道筹集资金，统筹安排建设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及配套管网，提高本行政区域城镇污水的收集率和处理率。

国务院建设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环境保护主管部门，根据城乡规划和水污染防治规划，组织编制全国城镇污水处理设施建设规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建设、经济综合宏观调控、环境保护、水行政等部门编制本行政区域的城镇污水处理设施建设规划。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主管部门应当按照城镇污水处理设施建设规划，组织建设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及配套管网，并加强对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运营的监督管理。

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运营单位按照国家规定向排污者提供污水处理的有偿服务，收取污水处理费用，保证污水集中处理设施的正常运行。收取的污水处理费用应当用于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建设运行和污泥处理处置，不得挪作他用。

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污水处理收费、管理以及使用的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第五十条 向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排放水污染物，应当符合国家或者地方规定的水污染物排放标准。

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运营单位，应当对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出水水质负责。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对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出水水质和水量进行监督检查。

第五十一条 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处置单位应当安全处理处置污泥，保证处理处置后的污泥符合国家标准，并对污泥的去向等进行记录。

第四节 农业和农村水污染防治

第五十二条 国家支持农村污水、垃圾处理设施的建设，推进农村污水、垃圾集中处理。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建设农村污水、垃圾处理设施，并保障其正常运行。

第五十三条 制定化肥、农药等产品的质量标准和使用标准，应当适应水环境保护要求。

第五十四条 使用农药，应当符合国家有关农药安全使用的规定和标准。

运输、存贮农药和处置过期失效农药，应当加强管理，防止造成水污染。

第五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指导农业生产者科学、合理地施用化肥和农药，推广测土配方施肥技术和高效低毒低残留农药，控制化肥和农药的过量使用，防止造成水污染。

第五十六条 国家支持畜禽养殖场、养殖小区建设畜禽粪便、废水的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理设施。

畜禽养殖场、养殖小区应当保证其畜禽粪便、废水的综合利用或者无害化处理设施正常运转，保证污水达标排放，防止污染水环境。

畜禽散养密集区所在地县、乡级人民政府应当组织对畜禽粪便污水进行分户收集、集中处理利用。

第五十七条 从事水产养殖应当保护水域生态环境，科学确定养殖密度，合理投饵和使用药物，防止污染水环境。

第五十八条 农田灌溉用水应当符合相应的水质标准，防止污染土壤、地下水和农产品。

禁止向农田灌溉渠道排放工业废水或者医疗污水。向农田灌溉渠道排放城镇污水以及未综合利用的畜禽养殖废水、农产品加工废水的，应当保证其下游最近的灌溉取水点的水质符合农田灌溉水质标准。

第五节 船舶水污染防治

第五十九条 船舶排放含油污水、生活污水，应当符合船舶污染物排放标准。从事海洋航运的船舶进入内河和港口的，应当遵守内河的船舶污染物排放标准。

船舶的残油、废油应当回收，禁止排入水体。

禁止向水体倾倒船舶垃圾。

船舶装载运输油类或者有毒货物，应当采取防止溢流和渗漏的措施，防止货物落水造成水污染。

进入中华人民共和国内河的国际航线船舶排放压载水的，应当采用压载水处理装置或者采取其他等效措施，对压载水进行灭活等处理。禁止排放不符合规定的船舶压载水。

第六十条 船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配置相应的防污设备和器材，并持有合法有效的防止水域环境污染的证书与文书。

船舶进行涉及污染物排放的作业，应当严格遵守操作规程，并在相应的记录簿上如实记载。

第六十一条 港口、码头、装卸站和船舶修造厂所在地市、县级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建设船舶污染物、废弃物的接收、转运及处理处置设施。

港口、码头、装卸站和船舶修造厂应当备有足够的船舶污染物、废弃物的接收设施。从事船舶污染物、废弃物接收作业，或者从事装载油类、污染危害性货物船舱清洗作业的单位，应当具备与其运营规模相适应的接收处理能力。

第六十二条 船舶及有关作业单位从事有污染风险的作业活动，应当按照有关法律法规和标准，采取有效措施，防止造成水污染。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应当加强对船舶及有关作业活动的监督管理。

船舶进行散装液体污染危害性货物的过驳作业，应当编制作业方案，采取有效的安全和污染防治措施，并报作业地海事管理机构批准。

禁止采取冲滩方式进行船舶拆解作业。

第五章　饮用水水源和其他特殊水体保护

第六十三条 国家建立饮用水水源保护区制度。饮用水水源保护区分为一级保护区和二级保护区；必要时，可以在饮用水水源保护区外围划定一定的区域作为准保护区。

饮用水水源保护区的划定，由有关市、县人民政府提出划定方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跨市、县饮用水水源保护区的划定，由有关市、县人民政府协商提出划定方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协商不成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水行政、国土资源、卫生、建设等部门提出划定方案，征求同级有关部门的意见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跨省、自治区、直辖市的饮用水水源保护区，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有关流域管理机构划定；协商不成的，由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同级水行政、国土资源、卫生、建设等部门提出划定方案，征求国务院有关部门的意见后，报国务院批准。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保护饮用水水源的实际需要，调整饮用水水源保护区的范围，确保饮用水安全。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在饮用水水源保护区的边界设立明确的地理界标和明显的警示标志。

第六十四条 在饮用水水源保护区内，禁止设置排污口。

第六十五条 禁止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内新建、改建、扩建与供水设施和保护水源无关的建设项目；已建成的与供水设施和保护水源无关的建设项目，由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拆除或者关闭。

禁止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内从事网箱养殖、旅游、游泳、垂钓或者其他可能污染饮用水水体的活动。

第六十六条 禁止在饮用水水源二级保护区内新建、改建、扩建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已建成的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由县级以上人民政府责令拆除或者关闭。

在饮用水水源二级保护区内从事网箱养殖、旅游等活动的，应当按照规定采取措施，防止污染饮用水水体。

第六十七条 禁止在饮用水水源准保护区内新建、扩建对水体污染严重的建设项目；改建建设项目，不得增加排污量。

第六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保护饮用水水源的实际需要，在准保护区内采取工程措施或者建造湿地、水源涵养林等生态保护措施，防止水污染物直接排入饮用水水体，

确保饮用水安全。

第六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环境保护等部门，对饮用水水源保护区、地下水型饮用水源的补给区及供水单位周边区域的环境状况和污染风险进行调查评估，筛查可能存在的污染风险因素，并采取相应的风险防范措施。

饮用水水源受到污染可能威胁供水安全的，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责令有关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采取停止排放水污染物等措施，并通报饮用水供水单位和供水、卫生、水行政等部门；跨行政区域的，还应当通报相关地方人民政府。

第七十条 单一水源供水城市的人民政府应当建设应急水源或者备用水源，有条件的地区可以开展区域联网供水。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安排、布局农村饮用水水源，有条件的地区可以采取城镇供水管网延伸或者建设跨村、跨乡镇联片集中供水工程等方式，发展规模集中供水。

第七十一条 饮用水供水单位应当做好取水口和出水口的水质检测工作。发现取水口水质不符合饮用水水源水质标准或者出水口水质不符合饮用水卫生标准的，应当及时采取相应措施，并向所在地市、县级人民政府供水主管部门报告。供水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通报环境保护、卫生、水行政等部门。

饮用水供水单位应当对供水水质负责，确保供水设施安全可靠运行，保证供水水质符合国家有关标准。

第七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监测、评估本行政区域内饮用水水源、供水单位供水和用户水龙头出水的水质等饮用水安全状况。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至少每季度向社会公开一次饮用水安全状况信息。

第七十三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水环境保护的需要，可以规定在饮用水水源保护区内，采取禁止或者限制使用含磷洗涤剂、化肥、农药以及限制种植养殖等措施。

第七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可以对风景名胜区水体、重要渔业水体和其他具有特殊经济文化价值的水体划定保护区，并采取措施，保证保护区的水质符合规定用途的水环境质量标准。

第七十五条 在风景名胜区水体、重要渔业水体和其他具有特殊经济文化价值的水体的保护区内，不得新建排污口。在保护区附近新建排污口，应当保证保护区水体不受污染。

第六章　水污染事故处置

第七十六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可能发生水污染事故的企业事业单位，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的规定，做好突发水污染事故的应急准备、应急处置和事后恢复等工作。

第七十七条 可能发生水污染事故的企业事业单位，应当制定有关水污染事故的应急方案，做好应急准备，并定期进行演练。

生产、储存危险化学品的企业事业单位，应当采取措施，防止在处理安全生产事故过程中产生的可能严重污染水体的消防废水、废液直接排入水体。

第七十八条 企业事业单位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性事件，造成或者可能造成水污染事故的，应当立即启动本单位的应急方案，采取隔离等应急措施，防止水污染物进入水体，并向事故发生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环境保护主管部门报告。环境保护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及时向本级人民政府报告，并抄送有关部门。

造成渔业污染事故或者渔业船舶造成水污染事故的，应当向事故发生地的渔业主管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其他船舶造成水污染事故的，应当向事故发生地的海事管理机构报告，接受调查处理；给渔业造成损害的，海事管理机构应当通知渔业主管部门参与调查处理。

第七十九条 市、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编制饮用水安全突发事件应急预案。

饮用水供水单位应当根据所在地饮用水安全突发事件应急预案，制定相应的突发事件应急方案，报所在地市、县级人民政府备案，并定期进行演练。

饮用水水源发生水污染事故，或者发生其他可能影响饮用水安全的突发性事件，饮用水供水单位应当采取应急处理措施，向所在地市、县级人民政府报告，并向社会公开。有关人民政府应当根据情况及时启动应急预案，采取有效措施，保障供水安全。

第七章　法律责任

第八十条 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依照本法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不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不予查处的，或者有其他未依照本法规定履行职责的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八十一条 以拖延、围堵、滞留执法人员等方式拒绝、阻挠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

依照本法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的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其他依照本法规定行使监督管理权的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二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一）未按照规定对所排放的水污染物自行监测，或者未保存原始监测记录的；

（二）未按照规定安装水污染物排放自动监测设备，未按照规定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或者未保证监测设备正常运行的；

（三）未按照规定对有毒有害水污染物的排污口和周边环境进行监测，或者未公开有毒有害水污染物信息的。

第八十三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责令限制生产、停产整治，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一）未依法取得排污许可证排放水污染物的；

（二）超过水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水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排放水污染物的；

（三）利用渗井、渗坑、裂隙、溶洞，私设暗管，篡改、伪造监测数据，或者不正常运行水污染防治设施等逃避监管的方式排放水污染物的；

（四）未按照规定进行预处理，向污水集中处理设施排放不符合处理工艺要求的工业废水的。

第八十四条 在饮用水水源保护区内设置排污口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限期拆除，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拆除的，强制拆除，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责令停产整治。

除前款规定外，违反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的规定设置排污口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限期拆除，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拆除的，强制拆除，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责令停产整治。

未经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同意，在江河、湖泊新建、改建、扩建排污口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依据职权，依照前款规定采取措施、给

予处罚。

第八十五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处以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环境保护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一）向水体排放油类、酸液、碱液的；

（二）向水体排放剧毒废液，或者将含有汞、镉、砷、铬、铅、氰化物、黄磷等的可溶性剧毒废渣向水体排放、倾倒或者直接埋入地下的；

（三）在水体清洗装贮过油类、有毒污染物的车辆或者容器的；

（四）向水体排放、倾倒工业废渣、城镇垃圾或者其他废弃物，或者在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岸坡堆放、存贮固体废弃物或者其他污染物的；

（五）向水体排放、倾倒放射性固体废物或者含有高放射性、中放射性物质的废水的；

（六）违反国家有关规定或者标准，向水体排放含低放射性物质的废水、热废水或者含病原体的污水的；

（七）未采取防渗漏等措施，或者未建设地下水水质监测井进行监测的；

（八）加油站等的地下油罐未使用双层罐或者采取建造防渗池等其他有效措施，或者未进行防渗漏监测的；

（九）未按照规定采取防护性措施，或者利用无防渗漏措施的沟渠、坑塘等输送或者存贮含有毒污染物的废水、含病原体的污水或者其他废弃物的。

有前款第三项、第四项、第六项、第七项、第八项行为之一的，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五项、第九项行为之一的，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关闭。

第八十六条 违反本法规定，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列入禁止生产、销售、进口、使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设备名录中的设备，或者采用列入禁止采用的严重污染水环境的工艺名录中的工艺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提出意见，报请本级人民政府责令停业、关闭。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建设不符合国家产业政策的小型造纸、制革、印染、染料、炼焦、炼硫、炼砷、炼汞、炼油、电镀、农药、石棉、水泥、玻璃、钢铁、火电以及其他严重污染水环境的生产项目的，由所在地的市、县人民政府责令关闭。

第八十八条 城镇污水集中处理设施的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处置单位，处理处置后的污泥不符合国家标准，或者对污泥去向等未进行记录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第八十九条 船舶未配置相应的防污染设备和器材，或者未持有合法有效的防止水域环境污染的证书与文书的，由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限期改正，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船舶临时停航。

船舶进行涉及污染物排放的作业，未遵守操作规程或者未在相应的记录簿上如实记载的，由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第九十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违法行为，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造成水污染的，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采取治理措施的，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船舶承担：

（一）向水体倾倒船舶垃圾或者排放船舶的残油、废油的；

（二）未经作业地海事管理机构批准，船舶进行散装液体污染危害性货物的过驳作业的；

（三）船舶及有关作业单位从事有污染风险的作业活动，未按照规定采取污染防治措施的；

（四）以冲滩方式进行船舶拆解的；

（五）进入中华人民共和国内河的国际航线船舶，排放不符合规定的船舶压载水的。

第九十一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拆除或者关闭：

（一）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内新建、改建、扩建与供水设施和保护水源无关的建设项目的；

（二）在饮用水水源二级保护区内新建、改建、扩建排放污染物的建设项目的；

（三）在饮用水水源准保护区内新建、扩建对水体污染严重的建设项目，或者改建建设项目增加排污量的。

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内从事网箱养殖或者组织进行旅游、垂钓或者其他可能污染饮用水水体的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个人在饮用水水源一级保护区内游泳、垂钓或者从事其他可能污染饮用水水体的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可以处五百元以下的罚款。

第九十二条 饮用水供水单位供水水质不符合国家规定标准的，由所在地市、县级人民政府供水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整顿；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九十三条 企业事业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一）不按照规定制定水污染事故的应急方案的；

（二）水污染事故发生后，未及时启动水污染事故的应急方案，采取有关应急措施的。

第九十四条 企业事业单位违反本法规定，造成水污染事故的，除依法承担赔偿责任外，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以罚款，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消除污染；未按照要求采取治理措施或者不具备治理能力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对造成重大或者特大水污染事故的，还可以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关闭；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处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的收入百分之五十以下的罚款；有《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第六十三条规定的违法排放水污染物等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的拘留；情节较轻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的拘留。

对造成一般或者较大水污染事故的，按照水污染事故造成的直接损失的百分之二十计算罚款；对造成重大或者特大水污染事故的，按照水污染事故造成的直接损失的百分之三十计算罚款。

造成渔业污染事故或者渔业船舶造成水污染事故的，由渔业主管部门进行处罚；其他船舶造成水污染事故的，由海事管理机构进行处罚。

第九十五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法排放水污染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应当组织复查，发现其继续违法排放水污染物或者拒绝、

阻挠复查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按日连续处罚。

第九十六条 因水污染受到损害的当事人，有权要求排污方排除危害和赔偿损失。

由于不可抗力造成水污染损害的，排污方不承担赔偿责任；法律另有规定的除外。

水污染损害是由受害人故意造成的，排污方不承担赔偿责任。水污染损害是由受害人重大过失造成的，可以减轻排污方的赔偿责任。

水污染损害是由第三人造成的，排污方承担赔偿责任后，有权向第三人追偿。

第九十七条 因水污染引起的损害赔偿责任和赔偿金额的纠纷，可以根据当事人的请求，由环境保护主管部门或者海事管理机构、渔业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调解处理；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九十八条 因水污染引起的损害赔偿诉讼，由排污方就法律规定的免责事由及其行为与损害结果之间不存在因果关系承担举证责任。

第九十九条 因水污染受到损害的当事人人数众多的，可以依法由当事人推选代表人进行共同诉讼。

环境保护主管部门和有关社会团体可以依法支持因水污染受到损害的当事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国家鼓励法律服务机构和律师为水污染损害诉讼中的受害人提供法律援助。

第一百条 因水污染引起的损害赔偿责任和赔偿金额的纠纷，当事人可以委托环境监测机构提供监测数据。环境监测机构应当接受委托，如实提供有关监测数据。

第一百零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章 附 则

第一百零二条 本法中下列用语的含义：

（一）水污染，是指水体因某种物质的介入，而导致其化学、物理、生物或者放射性等方面特性的改变，从而影响水的有效利用，危害人体健康或者破坏生态环境，造成水质恶化的现象。

（二）水污染物，是指直接或者间接向水体排放的，能导致水体污染的物质。

（三）有毒污染物，是指那些直接或者间接被生物摄入体内后，可能导致该生物或者其后代发病、行为反常、遗传异变、生理机能失常、机体变形或者死亡的污染物。

（四）污泥，是指污水处理过程中产生的半固态或者固态物质。

（五）渔业水体，是指划定的鱼虾类的产卵场、索饵场、越冬场、洄游通道和鱼虾贝藻类的养殖场的水体。

第一百零三条 本法自 2008 年 6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2016 年 11 月 7 日修正版)

1995 年 10 月 30 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通过　2004 年 12 月 29 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三次会议修订　根据 2013 年 6 月 29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 2015 年 4 月 24 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 2016 年 11 月 7 日主席令第 57 号《全国人大常委会关于修改 < 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 等十二部法律的决定》修改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保障人体健康，维护生态安全，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

固体废物污染海洋环境的防治和放射性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不适用本法。

第三条　国家对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实行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和危害性、充分合理利用固体废物和无害化处置固体废物的原则，促进清洁生产和循环经济发展。

国家采取有利于固体废物综合利用活动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对固体废物实行充分回收和合理利用。

国家鼓励、支持采取有利于保护环境的集中处置固体废物的措施，促进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产业发展。

第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并采取有利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组织编制城乡建设、土地利用、区

域开发、产业发展等规划，应当统筹考虑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和危害性、促进固体废物的综合利用和无害化处置。

第五条 国家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实行污染者依法负责的原则。

产品的生产者、销售者、进口者、使用者对其产生的固体废物依法承担污染防治责任。

第六条 国家鼓励、支持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研究、技术开发、推广先进的防治技术和普及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知识。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的宣传教育，倡导有利于环境保护的生产方式和生活方式。

第七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购买、使用再生产品和可重复利用产品。

第八条 各级人民政府对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以及相关的综合利用活动中作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九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环境的义务，并有权对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的单位和个人进行检举和控告。

第十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全国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生活垃圾清扫、收集、贮存、运输和处置的监督管理工作。

第二章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

第十一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行政主管部门根据国家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制定国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

第十二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建立固体废物污染环境监测制度，制定统一的

监测规范，并会同有关部门组织监测网络。

大、中城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发布固体废物的种类、产生量、处置状况等信息。

第十三条 建设产生固体废物的项目以及建设贮存、利用、处置固体废物的项目，必须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并遵守国家有关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

第十四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需要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必须经原审批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验收合格后，该建设项目方可投入生产或者使用。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的验收应当与对主体工程的验收同时进行。

第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监督管理部门，有权依据各自的职责对管辖范围内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有关的单位进行现场检查。被检查的单位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检查机关应当为被检查的单位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

检查机关进行现场检查时，可以采取现场监测、采集样品、查阅或者复制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相关的资料等措施。检查人员进行现场检查，应当出示证件。

第三章 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六条 产生固体废物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措施，防止或者减少固体废物对环境的污染。

第十七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个人，必须采取防扬散、防流失、防渗漏或者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不得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固体废物。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向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及其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和岸坡等法律、法规规定禁止倾倒、堆放废弃物的地点倾倒、堆放固体废物。

第十八条 产品和包装物的设计、制造，应当遵守国家有关清洁生产的规定。国务院标准化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经济和技术条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状况以及产品的技术要求，组织制定有关标准，防止过度包装造成环境污染。

生产、销售、进口依法被列入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的企业，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对该产品和包装物进行回收。

第十九条 国家鼓励科研、生产单位研究、生产易回收利用、易处置或者在环境中可降解的薄膜覆盖物和商品包装物。

使用农用薄膜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回收利用等措施，防止或者减少农用薄膜对环境的污染。

第二十条 从事畜禽规模养殖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收集、贮存、利用或者处置养殖过程中产生的畜禽粪便，防止污染环境。

禁止在人口集中地区、机场周围、交通干线附近以及当地人民政府划定的区域露天焚烧秸秆。

第二十一条 对收集、贮存、运输、处置固体废物的设施、设备和场所，应当加强管理和维护，保证其正常运行和使用。

第二十二条 在国务院和国务院有关主管部门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划定的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饮用水水源保护区、基本农田保护区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禁止建设工业固体废物集中贮存、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

第二十三条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的，应当向固体废物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商经接受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后，方可批准转移该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未经批准的，不得转移。

第二十四条 禁止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

第二十五条 禁止进口不能用作原料或者不能以无害化方式利用的固体废物；对可以用作原料的固体废物实行限制进口和非限制进口分类管理。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制定、调整并公布禁止进口、限制进口和非限制进口的固体废物目录。

禁止进口列入禁止进口目录的固体废物。进口列入限制进口目录的固体废物，应当经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审查许可。

进口的固体废物必须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并经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检验合格。

进口固体废物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海关总署、国务院质量监督检验检疫部门制定。

第二十六条 进口者对海关将其所进口的货物纳入固体废物管理范围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第二节 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

第二十七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和其他有关部门对工业固体废物对环境的污染作出界定，制定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技术政策，组织推广先进的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生产工艺和设备。

第二十八条 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研究、开发和推广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量和危害性的生产工艺和设备，公布限期淘汰产生严重污染环境的工业固体废物的落后生产工艺、落后设备的名录。

生产者、销售者、进口者、使用者必须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分别停止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列入前款规定的名录中的设备。生产工艺的采用者必须在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停止采用列入前款规定的名录中的工艺。

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不得转让给他人使用。

第二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制定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规划，推广能够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量和危害性的先进生产工艺和设备，推动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

第三十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建立、健全污染环境防治责任制度，采取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措施。

第三十一条 企业事业单位应当合理选择和利用原材料、能源和其他资源，采用先进的生产工艺和设备，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量，降低工业固体废物的危害性。

第三十二条 国家实行工业固体废物申报登记制度。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必须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提供工业固体废物的种类、产生量、流向、贮存、处置

等有关资料。

前款规定的申报事项有重大改变的，应当及时申报。

第三十三条 企业事业单位应当根据经济、技术条件对其产生的工业固体废物加以利用；对暂时不利用或者不能利用的，必须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建设贮存设施、场所，安全分类存放，或者采取无害化处置措施。

建设工业固体废物贮存、处置的设施、场所，必须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

第三十四条 禁止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场所；确有必要关闭、闲置或者拆除的，必须经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核准，并采取措施，防止污染环境。

第三十五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需要终止的，应当事先对工业固体废物的贮存、处置的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并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作出妥善处置，防止污染环境。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发生变更的，变更后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的规定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或者采取措施保证该设施、场所安全运行。变更前当事人对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的污染防治责任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对本法施行前已经终止的单位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的费用，由有关人民政府承担；但是，该单位享有的土地使用权依法转让的，应当由土地使用权受让人承担处置费用。当事人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第三十六条 矿山企业应当采取科学的开采方法和选矿工艺，减少尾矿、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的产生量和贮存量。

尾矿、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矿山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规定进行封场，防止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三十七条 拆解、利用、处置废弃电器产品和废弃机动车船，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措施，防止污染环境。

第三节 生活垃圾污染环境的防治

第三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安排建设城乡生活垃圾收集、运输、处置设施，

提高生活垃圾的利用率和无害化处置率，促进生活垃圾收集、处置的产业化发展，逐步建立和完善生活垃圾污染环境防治的社会服务体系。

第三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对城市生活垃圾进行清扫、收集、运输和处置，可以通过招标等方式选择具备条件的单位从事生活垃圾的清扫、收集、运输和处置。

第四十条 对城市生活垃圾应当按照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在指定的地点放置，不得随意倾倒、抛撒或者堆放。

第四十一条 清扫、收集、运输、处置城市生活垃圾，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环境卫生管理的规定，防止污染环境。

第四十二条 对城市生活垃圾应当及时清运，逐步做到分类收集和运输，并积极开展合理利用和实施无害化处置。

第四十三条 城市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改进燃料结构，发展城市煤气、天然气、液化气和其他清洁能源。

城市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组织净菜进城，减少城市生活垃圾。

城市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统筹规划，合理安排收购网点，促进生活垃圾的回收利用工作。

第四十四条 建设生活垃圾处置的设施、场所，必须符合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规定的环境保护和环境卫生标准。

禁止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置的设施、场所；确有必要关闭、闲置或者拆除的，必须经所在地的市、县级人民政府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商所在地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后核准，并采取措施，防止污染环境。

第四十五条 从生活垃圾中回收的物质必须按照国家规定的用途或者标准使用，不得用于生产可能危害人体健康的产品。

第四十六条 工程施工单位应当及时清运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并按照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进行利用或者处置。

第四十七条 从事公共交通运输的经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清扫、收集运输过程中产生的生活垃圾。

第四十八条 从事城市新区开发、旧区改建和住宅小区开发建设的单位，以及机场、码头、车站、公园、商店等公共设施、场所的经营管理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卫生的规定，配套建设生活垃圾收集设施。

第四十九条 农村生活垃圾污染环境防治的具体办法，由地方性法规规定。

第四章 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的特别规定

第五十条 危险废物污染环境的防治，适用本章规定；本章未作规定的，适用本法其他有关规定。

第五十一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国家危险废物名录，规定统一的危险废物鉴别标准、鉴别方法和识别标志。

第五十二条 对危险废物的容器和包装物以及收集、贮存、运输、处置危险废物的设施、场所，必须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

第五十三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危险废物管理计划，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报危险废物的种类、产生量、流向、贮存、处置等有关资料。

前款所称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包括减少危险废物产生量和危害性的措施以及危险废物贮存、利用、处置措施。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报产生危险废物的单位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

本条规定的申报事项或者危险废物管理计划内容有重大改变的，应当及时申报。

第五十四条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组织编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报国务院批准后实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据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组织建设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

第五十五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处置危险废物，不得擅自倾倒、堆放；不处置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处置或者处置不符合国家有关规定的，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指定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代为处置，处置费用由产生危险废物的单位承担。

第五十六条 以填埋方式处置危险废物不符合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应当缴纳危险废物排污费。危险废物排污费征收的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危险废物排污费用于污染环境的防治，不得挪作他用。

第五十七条 从事收集、贮存、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必须向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经营许可证；从事利用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必须向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经营许可证。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禁止无经营许可证或者不按照经营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禁止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经营许可证的单位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第五十八条 收集、贮存危险废物，必须按照危险废物特性分类进行。禁止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性质不相容而未经安全性处置的危险废物。

贮存危险废物必须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并不得超过一年；确需延长期限的，必须报经原批准经营许可证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批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禁止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

第五十九条 转移危险废物的，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危险废物转移联单。跨省、自治区、直辖市转移危险废物的，应当向危险废物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申请。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商经接受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同意后，方可批准转移该危险废物。未经批准的，不得转移。

转移危险废物途经移出地、接受地以外行政区域的，危险废物移出地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通知沿途经过的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

第六十条 运输危险废物，必须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并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

禁止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

第六十一条 收集、贮存、运输、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时，必须经过消除污染的处理，方可使用。

第六十二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单位，应当制定意外事故的防范措施和应急预案，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进行检查。

第六十三条 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性事件，造成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的单位，必须立即采取措施消除或者减轻对环境的污染危害，及时通报可能受到污染危害的单位和居民，并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和有关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第六十四条 在发生或者有证据证明可能发生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威胁居民生命财产安全时，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监督管理部门必须立即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报告，由人民政府采取防止或者减轻危害的有效措施。有关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责令停止导致或者可能导致环境污染事故的作业。

第六十五条 重点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退役费用应当预提，列入投资概算或者经营成本。具体提取和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

第六十六条 禁止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

第五章 法律责任

第六十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监督管理部门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不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

（二）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不予查处的；

（三）有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的。

第六十八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以罚款：

（一）不按照国家规定申报登记工业固体废物，或者在申报登记时弄虚作假的；

（二）对暂时不利用或者不能利用的工业固体废物未建设贮存的设施、场所安全分类存放，或者未采取无害化处置措施的；

（三）将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转让给他人使用的；

（四）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场所的；

（五）在自然保护区、风景名胜区、饮用水水源保护区、基本农田保护区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建设工业固体废物集中贮存、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的；

（六）擅自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的；

（七）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工业固体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造成其他环境污染的；

（八）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工业固体废物的。

有前款第一项、第八项行为之一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第七项行为之一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六十九条 违反本法规定，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主体工程即投入生产或者使用的，由审批该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可以并处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条 违反本法规定，拒绝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监督管理部门现场检查的，由执行现场检查的部门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或者在检查时弄虚作假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一条 从事畜禽规模养殖未按照国家有关规定收集、贮存、处置畜禽粪便，造成环境污染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二条 违反本法规定，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淘汰的设备，或者采用淘汰的生产工艺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经济综合宏观调控部门提出意见，报请同级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决定停业或者关闭。

第七十三条 尾矿、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未按照国家有关

环境保护规定进行封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可以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七十四条 违反本法有关城市生活垃圾污染环境防治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以罚款：

（一）随意倾倒、抛撒或者堆放生活垃圾的；

（二）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置设施、场所的；

（三）工程施工单位不及时清运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造成环境污染的；

（四）工程施工单位不按照环境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对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进行利用或者处置的；

（五）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生活垃圾的。

单位有前款第一项、第三项、第五项行为之一的，处五千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二项、第四项行为之一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个人有前款第一项、第五项行为之一的，处二百元以下的罚款。

第七十五条 违反本法有关危险废物污染环境防治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以罚款：

（一）不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的；

（二）不按照国家规定申报登记危险废物，或者在申报登记时弄虚作假的；

（三）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

（四）不按照国家规定缴纳危险废物排污费的；

（五）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经营许可证的单位从事经营活动的；

（六）不按照国家规定填写危险废物转移联单或者未经批准擅自转移危险废物的；

（七）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的；

（八）未经安全性处置，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具有不相容性质的危险废物的；

（九）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的；

（十）未经消除污染的处理将收集、贮存、运输、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的；

（十一）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危险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造成其他环境污染的；

（十二）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危险废物的；

（十三）未制定危险废物意外事故防范措施和应急预案的。

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七项、第八项、第九项、第十项、第十一项、第十二项、第十三项行为之一的，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三项、第五项、第六项行为之一的，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四项行为的，限期缴纳，逾期不缴纳的，处应缴纳危险废物排污费金额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七十六条 违反本法规定，危险废物产生者不处置其产生的危险废物又不承担依法应当承担的处置费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代为处置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七十七条 无经营许可证或者不按照经营许可证规定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违法所得三倍以下的罚款。

不按照经营许可证规定从事前款活动的，还可以由发证机关吊销经营许可证。

第七十八条 违反本法规定，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的，进口属于禁止进口的固体废物或者未经许可擅自进口属于限制进口的固体废物用作原料的，由海关责令退运该固体废物，可以并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进口者不明的，由承运人承担退运该固体废物的责任，或者承担该固体废物的处置费用。

逃避海关监管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运输进境，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九条 违反本法规定，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的，由海关责令退运该危险废物，可以并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条 对已经非法入境的固体废物，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依法向海关提出处理意见，海关应当依照本法第七十八条的规定作出处罚决定；已经造成环境污

染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进口者消除污染。

第八十一条 违反本法规定，造成固体废物严重污染环境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决定限期治理；逾期未完成治理任务的，由本级人民政府决定停业或者关闭。

第八十二条 违反本法规定，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损失的，按照直接损失的百分之三十计算罚款，但是最高不超过一百万元，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重大事故的，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决定停业或者关闭。

第八十三条 违反本法规定，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造成重大环境污染事故，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四条 受到固体废物污染损害的单位和个人，有权要求依法赔偿损失。

赔偿责任和赔偿金额的纠纷，可以根据当事人的请求，由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监督管理部门调解处理；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国家鼓励法律服务机构对固体废物污染环境诉讼中的受害人提供法律援助。

第八十五条 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的，应当排除危害，依法赔偿损失，并采取措施恢复环境原状。

第八十六条 因固体废物污染环境引起的损害赔偿诉讼，由加害人就法律规定的免责事由及其行为与损害结果之间不存在因果关系承担举证责任。

第八十七条 固体废物污染环境的损害赔偿责任和赔偿金额的纠纷，当事人可以委托环境监测机构提供监测数据。环境监测机构应当接受委托，如实提供有关监测数据。

第六章 附则

第八十八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固体废物，是指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

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

（二）工业固体废物，是指在工业生产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

（三）生活垃圾，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固体废物。

（四）危险废物，是指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或者根据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和鉴别方法认定的具有危险特性的固体废物。

（五）贮存，是指将固体废物临时置于特定设施或者场所中的活动。

（六）处置，是指将固体废物焚烧和用其他改变固体废物的物理、化学、生物特性的方法，达到减少已产生的固体废物数量、缩小固体废物体积、减少或者消除其危险成份的活动，或者将固体废物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规定要求的填埋场的活动。

（七）利用，是指从固体废物中提取物质作为原材料或者燃料的活动。

第八十九条 液态废物的污染防治，适用本法；但是，排入水体的废水的污染防治适用有关法律，不适用本法。

第九十条 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有关的国际条约与本法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第九十一条 本法自 2005 年 4 月 1 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
土壤污染防治法

주중대한민국대사관

中华人民共和国土壤污染防治法

2018年8月3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五次会议通过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护和改善生态环境，防治土壤污染，保障公众健康，推动土壤资源永续利用，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及管辖的其他海域从事土壤污染防治及相关活动，适用本法。

本法所称土壤污染，是指因人为因素导致某种物质进入陆地表层土壤，引起土壤化学、物理、生物等方面特性的改变，影响土壤功能和有效利用，危害公众健康或者破坏生态环境的现象。

第三条　土壤污染防治应当坚持预防为主、保护优先、分类管理、风险管控、污染担责、公众参与的原则。

第四条　任何组织和个人都有保护土壤、防止土壤污染的义务。

土地使用权人从事土地开发利用活动，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从事生产经营活动，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减少土壤污染，对所造成的土壤污染依法承担责任。

第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对本行政区域土壤污染防治和安全利用负责。

国家实行土壤污染防治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将土壤污染防治目标完成情况作为考核评价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负责人、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及其负责人的内容。

第六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土壤污染防治工作的领导，组织、协调、督促有关部门依法履行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

第七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对全国土壤污染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林业草原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土壤污染防治工作实施监督管理。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土壤污染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地方

人民政府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林业草原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土壤污染防治工作实施监督管理。

第八条 国家建立土壤环境信息共享机制。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水利、卫生健康、林业草原等主管部门建立土壤环境基础数据库，构建全国土壤环境信息平台，实行数据动态更新和信息共享。

第九条 国家支持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监测等污染防治科学技术研究开发、成果转化和推广应用，鼓励土壤污染防治产业发展，加强土壤污染防治专业技术人才培养，促进土壤污染防治科学技术进步。

国家支持土壤污染防治国际交流与合作。

第十条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基层群众性自治组织和新闻媒体应当加强土壤污染防治宣传教育和科学普及，增强公众土壤污染防治意识，引导公众依法参与土壤污染防治工作。

第二章 规划、标准、普查和监测

第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土壤污染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环境保护规划。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发展改革、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林业草原等主管部门，根据环境保护规划要求、土地用途、土壤污染状况普查和监测结果等，编制土壤污染防治规划，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实施。

第十二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土壤污染状况、公众健康风险、生态风险和科学技术水平，并按照土地用途，制定国家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加强土壤污染防治标准体系建设。

省级人民政府对国家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中未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地方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对国家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中已作规定的项目，可以制定严于国家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地方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地方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应当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是强制性标准。

国家支持对土壤环境背景值和环境基准的研究。

第十三条 制定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应当组织专家进行审查和论证，并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和公众等方面的意见。
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执行情况应当定期评估，并根据评估结果对标准适时修订。
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在其网站上公布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供公众免费查阅、下载。

第十四条 国务院统一领导全国土壤污染状况普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林业草原等主管部门，每十年至少组织开展一次全国土壤污染状况普查。

国务院有关部门、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业、本行政区域实际情况组织开展土壤污染状况详查。

第十五条 国家实行土壤环境监测制度。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制定土壤环境监测规范，会同国务院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水利、卫生健康、林业草原等主管部门组织监测网络，统一规划国家土壤环境监测站（点）的设置。

第十六条 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对下列农用地地块进行重点监测：

（一）产出的农产品污染物含量超标的；

（二）作为或者曾作为污水灌溉区的；

（三）用于或者曾用于规模化养殖，固体废物堆放、填埋的；

（四）曾作为工矿用地或者发生过重大、特大污染事故的；

（五）有毒有害物质生产、贮存、利用、处置设施周边的；

（六）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第十七条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自然资源主管部门对下列建设用地地块进行重点监测：

（一）曾用于生产、使用、贮存、回收、处置有毒有害物质的；（二）曾用于固体废物堆放、填埋的；

（三）曾发生过重大、特大污染事故的；

（四）国务院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规定的其他情形。

第三章　预防和保护

第十八条　各类涉及土地利用的规划和可能造成土壤污染的建设项目，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环境影响评价文件应当包括对土壤可能造成的不良影响及应当采取的相应预防措施等内容。

第十九条　生产、使用、贮存、运输、回收、处置、排放有毒有害物质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有毒有害物质渗漏、流失、扬散，避免土壤受到污染。

第二十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卫生健康等主管部门，根据对公众健康、生态环境的危害和影响程度，对土壤中有毒有害物质进行筛查评估，公布重点控制的土壤有毒有害物质名录，并适时更新。

第二十一条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根据有毒有害物质排放等情况，制定本行政区域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名录，向社会公开并适时更新。

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应当履行下列义务：

（一）严格控制有毒有害物质排放，并按年度向生态环境主管部门报告排放情况；

（二）建立土壤污染隐患排查制度，保证持续有效防止有毒有害物质渗漏、流失、扬散；

（三）制定、实施自行监测方案，并将监测数据报生态环境主管部门。

前款规定的义务应当在排污许可证中载明。

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应当对监测数据的真实性和准确性负责。生态环境主管部门发现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监测数据异常，应当及时进行调查。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定期对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周边土

壤进行监测。

第二十二条 企业事业单位拆除设施、设备或者建筑物、构筑物的，应当采取相应的土壤污染防治措施。

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拆除设施、设备或者建筑物、构筑物的，应当制定包括应急措施在内的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备案并实施。

第二十三条 各级人民政府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应当依法加强对矿产资源开发区域土壤污染防治的监督管理，按照相关标准和总量控制的要求，严格控制可能造成土壤污染的重点污染物排放。

尾矿库运营、管理单位应当按照规定，加强尾矿库的安全管理，采取措施防止土壤污染。危库、险库、病库以及其他需要重点监管的尾矿库的运营、管理单位应当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监测和定期评估。

第二十四条 国家鼓励在建筑、通信、电力、交通、水利等领域的信息、网络、防雷、接地等建设工程中采用新技术、新材料，防止土壤污染。

禁止在土壤中使用重金属含量超标的降阻产品。

第二十五条 建设和运行污水集中处理设施、固体废物处置设施，应当依照法律法规和相关标准的要求，采取措施防止土壤污染。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定期对污水集中处理设施、固体废物处置设施周边土壤进行监测；对不符合法律法规和相关标准要求的，应当根据监测结果，要求污水集中处理设施、固体废物处置设施运营单位采取相应改进措施。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统筹规划、建设城乡生活污水和生活垃圾处理、处置设施，并保障其正常运行，防止土壤污染。

第二十六条 国务院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制定规划，完善相关标准和措施，加强农用地农药、化肥使用指导和使用总量控制，加强农用薄膜使用控制。

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加强农药、肥料登记，组织开展农药、肥料对土壤环境影响的安全性评价。

制定农药、兽药、肥料、饲料、农用薄膜等农业投入品及其包装物标准和农田灌溉用水水质标准，应当适应土壤污染防治的要求。

第二十七条 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开展农用地土壤污染防治宣传和技术培训活动，扶持农业生产专业化服务，指导农业生产者合理使用农药、兽药、肥料、饲料、农用薄膜等农业投入品，控制农药、兽药、化肥等的使用量。

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鼓励农业生产者采取有利于防止土壤污染的种养结合、轮作休耕等农业耕作措施；支持采取土壤改良、土壤肥力提升等有利于土壤养护和培育的措施；支持畜禽粪便处理、利用设施的建设。

第二十八条 禁止向农用地排放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污水、污泥，以及可能造成土壤污染的清淤底泥、尾矿、矿渣等。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对畜禽粪便、沼渣、沼液等收集、贮存、利用、处置的监督管理，防止土壤污染。

农田灌溉用水应当符合相应的水质标准，防止土壤、地下水和农产品污染。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农业农村、水利主管部门加强对农田灌溉用水水质的管理，对农田灌溉用水水质进行监测和监督检查。

第二十九条 国家鼓励和支持农业生产者采取下列措施：

（一）使用低毒、低残留农药以及先进喷施技术；

（二）使用符合标准的有机肥、高效肥；

（三）采用测土配方施肥技术、生物防治等病虫害绿色防控技术；

（四）使用生物可降解农用薄膜；

（五）综合利用秸秆、移出高富集污染物秸秆；

（六）按照规定对酸性土壤等进行改良。

第三十条 禁止生产、销售、使用国家明令禁止的农业投入品。

农业投入品生产者、销售者和使用者应当及时回收农药、肥料等农业投入品的包装废弃物和农用薄膜，并将农药包装废弃物交由专门的机构或者组织进行无害化处理。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农村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等主管部门制定。

国家采取措施，鼓励、支持单位和个人回收农业投入品包装废弃物和农用薄膜。

第三十一条 国家加强对未污染土壤的保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重点保护未污染的耕地、林地、草地和饮用水水源地。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国家公园等自然保护地的保护，维护其生态功能。

对未利用地应当予以保护，不得污染和破坏。

第三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按照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严格执行相关行业企业布局选址要求，禁止在居民区和学校、医院、疗养院、养老院等单位周边新建、改建、扩建可能造成土壤污染的建设项目。

第三十三条 国家加强对土壤资源的保护和合理利用。对开发建设过程中剥离的表土，应当单独收集和存放，符合条件的应当优先用于土地复垦、土壤改良、造地和绿化等。

禁止将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工业固体废物、生活垃圾或者污染土壤用于土地复垦。

第三十四条 因科学研究等特殊原因，需要进口土壤的，应当遵守国家出入境检验检疫的有关规定。

第四章 风险管控和修复

第一节 一般规定

第三十五条 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包括土壤污染状况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后期管理等活动。

第三十六条 实施土壤污染状况调查活动，应当编制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

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应当主要包括地块基本信息、污染物含量是否超过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等内容。污染物含量超过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还应当包括污染类型、污染来源以及地下水是否受到污染等内容。

第三十七条 实施土壤污染风险评估活动，应当编制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

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应当主要包括下列内容：

（一）主要污染物状况；

（二）土壤及地下水污染范围；

（三）农产品质量安全风险、公众健康风险或者生态风险；

（四）风险管控、修复的目标和基本要求等。

第三十八条 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应当因地制宜、科学合理，提高针对性和有效性。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不得对土壤和周边环境造成新的污染。

第三十九条 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前，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有权根据实际情况，要求土壤污染责任人、土地使用权人采取移除污染源、防止污染扩散等措施。

第四十条 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中产生的废水、废气和固体废物，应当按照规定进行处理、处置，并达到相关环境保护标准。

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拆除的设施、设备或者建筑物、构筑物属于危险废物的，应当依照法律法规和相关标准的要求进行处置。

修复施工期间，应当设立公告牌，公开相关情况和环境保护措施。

第四十一条 修复施工单位转运污染土壤的，应当制定转运计划，将运输时间、方式、线路和污染土壤数量、去向、最终处置措施等，提前报所在地和接收地生态环境主管部门。

转运的污染土壤属于危险废物的，修复施工单位应当依照法律法规和相关标准的要求进行处置。

第四十二条 实施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活动，应当编制效果评估报告。

效果评估报告应当主要包括是否达到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确定的风险管控、修复目标等内容。

风险管控、修复活动完成后，需要实施后期管理的，土壤污染责任人应当按照要求实施后期管理。

第四十三条 从事土壤污染状况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后期管理等活动的单位，应当具备相应的专业能力。

受委托从事前款活动的单位对其出具的调查报告、风险评估报告、风险管控效果评估报告、修复效果评估报告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负责，并按照约定对风险管控、修复、后期管理等活动结果负责。

第四十四条 发生突发事件可能造成土壤污染的，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相关企业事业单位以及其他生产经营者应当立即采取应急措施，防止土壤污染，并依照本法规定做好土壤污染状况监测、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等工作。

第四十五条 土壤污染责任人负有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的义务。土壤污染责任人无法认定的，土地使用权人应当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组织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

国家鼓励和支持有关当事人自愿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

第四十六条 因实施或者组织实施土壤污染状况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后期管理等活动所支出的费用，由土壤污染责任人承担。

第四十七条 土壤污染责任人变更的，由变更后承继其债权、债务的单位或者个人履行相关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义务并承担相关费用。

第四十八条 土壤污染责任人不明确或者存在争议的，农用地由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会同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认定，建设用地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自然资源主管部门认定。认定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第二节 农用地

第四十九条 国家建立农用地分类管理制度。按照土壤污染程度和相关标准，将农用地划分为优先保护类、安全利用类和严格管控类。

第五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将符合条件的优先保护类耕地划为永久基本农田，实行严格保护。

在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不得新建可能造成土壤污染的建设项目；已经建成的，应当限期关闭拆除。

第五十一条 未利用地、复垦土地等拟开垦为耕地的，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依法进行分类管理。

第五十二条 对土壤污染状况普查、详查和监测、现场检查表明有土壤污染风险的农用地地块，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

对土壤污染状况调查表明污染物含量超过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农用地地块，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会同生态环境、自然资源主管部门组织进行土壤污染风险评估，并按照农用地分类管理制度管理。

第五十三条 对安全利用类农用地地块，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结合主要作物品种和种植习惯等情况，制定并实施安全利用方案。

安全利用方案应当包括下列内容：

（一）农艺调控、替代种植；

（二）定期开展土壤和农产品协同监测与评价；

（三）对农民、农民专业合作社及其他农业生产经营主体进行技术指导和培训；

（四）其他风险管控措施。

第五十四条 对严格管控类农用地地块，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应当采取下列风险管控措施：

（一）提出划定特定农产品禁止生产区域的建议，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二）按照规定开展土壤和农产品协同监测与评价；

（三）对农民、农民专业合作社及其他农业生产经营主体进行技术指导和培训；

（四）其他风险管控措施。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鼓励对严格管控类农用地采取调整种植结构、退耕还林还草、退耕还湿、轮作休耕、轮牧休牧等风险管控措施，并给予相应的政策支持。

第五十五条 安全利用类和严格管控类农用地地块的土壤污染影响或者可能影响地下水、饮用水水源安全的，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农业农村、林业草原等主管部门制定防治污染的方案，并采取相应的措施。

第五十六条 对安全利用类和严格管控类农用地地块，土壤污染责任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以及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的要求，采取相应的风险管控措施，并定期向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报告。

第五十七条 对产出的农产品污染物含量超标，需要实施修复的农用地地块，土壤污染责任人应当编制修复方案，报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备案并实施。修复方案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修复活动应当优先采取不影响农业生产、不降低土壤生产功能的生物修复措施，阻断或者减少污染物进入农作物食用部分，确保农产品质量安全。

风险管控、修复活动完成后，土壤污染责任人应当另行委托有关单位对风险管控效果、修复效果进行评估，并将效果评估报告报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备案。

农村集体经济组织及其成员、农民专业合作社及其他农业生产经营主体等负有协助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的义务。

第三节 建设用地

第五十八条 国家实行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制度。

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由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自然资源等主管部门制定，按照规定向社会公开，并根据风险管控、修复情况适时更新。

第五十九条 对土壤污染状况普查、详查和监测、现场检查表明有土壤污染风险的建设用地地块，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要求土地使用权人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

用途变更为住宅、公共管理与公共服务用地的，变更前应当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

前两款规定的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应当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自然资源主管部门组织评审。

第六十条 对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评审表明污染物含量超过土壤污染风险管控标准的建设用地地块，土壤污染责任人、土地使用权人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进行土壤污染风险评估，并将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报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

第六十一条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自然资源等主管部门按照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的规定，对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组织评审，及时将需要实施风险管控、修

复的地块纳入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并定期向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报告。

列入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的地块，不得作为住宅、公共管理与公共服务用地。

第六十二条 对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中的地块，土壤污染责任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以及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的要求，采取相应的风险管控措施，并定期向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报告。风险管控措施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第六十三条 对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中的地块，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采取下列风险管控措施：

（一）提出划定隔离区域的建议，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二）进行土壤及地下水污染状况监测；

（三）其他风险管控措施。

第六十四条 对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中需要实施修复的地块，土壤污染责任人应当结合土地利用总体规划和城乡规划编制修复方案，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并实施。修复方案应当包括地下水污染防治的内容。

第六十五条 风险管控、修复活动完成后，土壤污染责任人应当另行委托有关单位对风险管控效果、修复效果进行评估，并将效果评估报告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第六十六条 对达到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确定的风险管控、修复目标的建设用地地块，土壤污染责任人、土地使用权人可以申请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移出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

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自然资源等主管部门对风险管控效果评估报告、修复效果评估报告组织评审，及时将达到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确定的风险管控、修复目标且可以安全利用的地块移出建设用地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名录，按照规定向社会公开，并定期向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报告。

未达到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确定的风险管控、修复目标的建设用地地块，禁止开工建设任何与风险管控、修复无关的项目。

第六十七条 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生产经营用地的用途变更或者在其土地使用权收回、转让前，应当由土地使用权人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

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应当作为不动产登记资料送交地方人民政府不动产登记机构，并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第六十八条 土地使用权已经被地方人民政府收回，土壤污染责任人为原土地使用权人的，由地方人民政府组织实施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

第五章 保障和监督

第六十九条 国家采取有利于土壤污染防治的财政、税收、价格、金融等经济政策和措施。

第七十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土壤污染的防治，安排必要的资金用于下列事项：

（一）土壤污染防治的科学技术研究开发、示范工程和项目；

（二）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组织实施的土壤污染状况普查、监测、调查和土壤污染责任人认定、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等活动；

（三）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涉及土壤污染的突发事件的应急处置；

（四）各级人民政府规定的涉及土壤污染防治的其他事项。

使用资金应当加强绩效管理和审计监督，确保资金使用效益。

第七十一条 国家加大土壤污染防治资金投入力度，建立土壤污染防治基金制度。设立中央土壤污染防治专项资金和省级土壤污染防治基金，主要用于农用地土壤污染防治和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无法认定的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以及政府规定的其他事项。

对本法实施之前产生的，并且土壤污染责任人无法认定的污染地块，土地使用权人实际承担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的，可以申请土壤污染防治基金，集中用于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

土壤污染防治基金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农业农村、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林业草原等主管部门制定。

第七十二条 国家鼓励金融机构加大对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项目的信贷投放。国家鼓励金融机构在办理土地权利抵押业务时开展土壤污染状况调查。

第七十三条 从事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的单位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税收优惠。

第七十四条 国家鼓励并提倡社会各界为防治土壤污染捐赠财产，并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税收优惠。

第七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土壤污染防治情况纳入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年度报告，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第七十六条 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对土壤污染问题突出、防治工作不力、群众反映强烈的地区，约谈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主要负责人，要求其采取措施及时整改。约谈整改情况应当向社会公开。

第七十七条 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环境执法机构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有权对从事可能造成土壤污染活动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现场检查、取样，要求被检查者提供有关资料、就有关问题作出说明。

被检查者应当配合检查工作，如实反映情况，提供必要的资料。

实施现场检查的部门、机构及其工作人员应当为被检查者保守商业秘密。

第七十八条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法律法规规定排放有毒有害物质，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土壤污染的，或者有关证据可能灭失或者被隐匿的，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查封、扣押有关设施、设备、物品。

第七十九条 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监督尾矿库运营、管理单位履行防治土壤污染的法定义务，防止其发生可能污染土壤的事故；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加强对尾矿库土壤污染防治情况的监督检查和定期评估，发现风险隐患的，及时督促尾矿库运营、管理单位采取相应措施。

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依法加强对向沙漠、滩涂、盐碱地、沼泽地等未利用地非法排放有毒有害物质等行为的监督检查。

第八十条 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从事土壤污染状况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修复、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后期管理等活动的单位和个人的执业情况，纳入信用系统建立信用记录，将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并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和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布。

第八十一条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依法公开土壤污染状况和防治信息。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统一发布全国土壤环境信息；省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

门负责统一发布本行政区域土壤环境信息。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涉及主要食用农产品生产区域的重大土壤环境信息，及时通报同级农业农村、卫生健康和食品安全主管部门。

公民、法人和其他组织享有依法获取土壤污染状况和防治信息、参与和监督土壤污染防治的权利。

第八十二条 土壤污染状况普查报告、监测数据、调查报告和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风险管控效果评估报告、修复效果评估报告等，应当及时上传全国土壤环境信息平台。

第八十三条 新闻媒体对违反土壤污染防治法律法规的行为享有舆论监督的权利，受监督的单位和个人不得打击报复。

第八十四条 任何组织和个人对污染土壤的行为，均有向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报告或者举报的权利。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土壤污染防治举报方式向社会公布，方便公众举报。

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处理并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对实名举报并查证属实的，给予奖励。

举报人举报所在单位的，该单位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第六章 法律责任

第八十五条 地方各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未依照本法规定履行职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依照本法规定应当作出行政处罚决定而未作出的，上级主管部门可以直接作出行政处罚决定。

第八十六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拒不改正的，责令停产整治：

（一）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未制定、实施自行监测方案，或者未将监测数据报生态环境主管部门的；

（二）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篡改、伪造监测数据的；

（三）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未按年度报告有毒有害物质排放情况，或者未建立土壤污染隐患排查制度的；

（四）拆除设施、设备或者建筑物、构筑物，企业事业单位未采取相应的土壤污染防治措施或者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未制定、实施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的；

（五）尾矿库运营、管理单位未按照规定采取措施防止土壤污染的；

（六）尾矿库运营、管理单位未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监测的；

（七）建设和运行污水集中处理设施、固体废物处置设施，未依照法律法规和相关标准的要求采取措施防止土壤污染的。

有前款规定行为之一的，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二项、第四项、第五项、第七项规定行为之一，造成严重后果的，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

第八十七条 违反本法规定，向农用地排放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污水、污泥，以及可能造成土壤污染的清淤底泥、尾矿、矿渣等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并可以将案件移送公安机关，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的拘留；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八十八条 违反本法规定，农业投入品生产者、销售者、使用者未按照规定及时回收肥料等农业投入品的包装废弃物或者农用薄膜，或者未按照规定及时回收农药包装废弃物交由专门的机构或者组织进行无害化处理的，由地方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农业投入品使用者为个人的，可以处二百元以上二千元以下的罚款。

第八十九条 违反本法规定，将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工业固体废物、生活垃圾或者污染土壤用于土地复垦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第九十条 违反本法规定，受委托从事土壤污染状况调查和土壤污染风险评估、风险管控效果评估、修复效果评估活动的单位，出具虚假调查报告、风险评估报告、风险管控效果评估报告、修复效果评估报告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禁止从事上述业务，并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前款规定的单位出具虚假报告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十年内禁止从事前款规

定的业务；构成犯罪的，终身禁止从事前款规定的业务。

本条第一款规定的单位和委托人恶意串通，出具虚假报告，造成他人人身或者财产损害的，还应当与委托人承担连带责任。

第九十一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一）未单独收集、存放开发建设过程中剥离的表土的；

（二）实施风险管控、修复活动对土壤、周边环境造成新的污染的；

（三）转运污染土壤，未将运输时间、方式、线路和污染土壤数量、去向、最终处置措施等提前报所在地和接收地生态环境主管部门的；

（四）未达到土壤污染风险评估报告确定的风险管控、修复目标的建设用地地块，开工建设与风险管控、修复无关的项目的。

第九十二条 违反本法规定，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未按照规定实施后期管理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

第九十三条 违反本法规定，被检查者拒不配合检查，或者在接受检查时弄虚作假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第九十四条 违反本法规定，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有下列行为之一的，由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二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并委托他人代为履行，所需费用由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承担；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状况调查的；

（二）未按照规定进行土壤污染风险评估的；

（三）未按照规定采取风险管控措施的；

（四）未按照规定实施修复的；

（五）风险管控、修复活动完成后，未另行委托有关单位对风险管控效果、修复效果进行评估的。

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有前款第三项、第四项规定行为之一，情节严重的，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土壤污染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将案件移送公安机关，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日以上十五日以下的拘留。

第九十五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

（一）土壤污染重点监管单位未按照规定将土壤污染防治工作方案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备案的；

（二）土壤污染责任人或者土地使用权人未按照规定将修复方案、效果评估报告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农业农村、林业草原主管部门备案的；

（三）土地使用权人未按照规定将土壤污染状况调查报告报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的。

第九十六条 污染土壤造成他人人身或者财产损害的，应当依法承担侵权责任。

土壤污染责任人无法认定，土地使用权人未依照本法规定履行土壤污染风险管控和修复义务，造成他人人身或者财产损害的，应当依法承担侵权责任。

土壤污染引起的民事纠纷，当事人可以向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等主管部门申请调解处理，也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九十七条 污染土壤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有关机关和组织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九十八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九十九条　本法自 2019 年 1 月 1 日起施行。

환경 법령집 (Ⅲ)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방지법

감수자 : 주중대한민국 대사관 정복영 환경관
편집 및 번역 : 하연주 , 김지원
주 소 : 中国北京市朝阳区第三使馆区东方东路 20 号 (邮政编码 100600),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86-8531-0837
이메일 : pigpig@korea.kr

주중대한민국대사관